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최종시험조사지침서

1990. 4

조사원 19명
기 : 4명

경제기획원

목 차

I. 조사일정	5
II. 조사원 주의사항	9
III. 조사대상	13
IV. 준비조사	20
V. 실지조사(본조사)	25
VI. 조사항목별 기재방법 및 작성기준	26
— 인구에 관한 사항	26
① 성 명	26
② 가구주와의 관계	26
③ 성 별	28
④ 나 이	29
⑤ 출생지	31
⑥ 교육정도	32
⑦ 통근통학여부	33
⑧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33
⑨ 출발도착시간	33
⑩ 이용교통수단	33
⑪ 혼인상태	35

⑫ 만 1 년 전 거주지	36
⑬ 만 5 년 전 거주지	36
⑭ 경제활동상태	38
⑮ 산 업	43
⑯ 종사상의 지위	43
⑰ 직 업	45
⑱ 혼인연령	48
⑲ 생존자녀수	49
⑳ 사망자녀수	49
㉑ 총출생자녀수	49
一 주거에 관한 사항 (모든가구)	50
① 거처의 종류	50
② 가구 구분	53
③ 점유형태 ㉓ 임차료	54
④ 사용방수	55
⑤ 식수의 종류	55
⑥ 취사연료	56
⑦ 난방시설	56
⑧ 문화시설 및 가재	56
⑨ 전용시설	57
⑩~⑬ 시설형태	58
㉔ 한달평균 소득규모	59

－ 주택에 관한 사항 (주택의 주거구).....	61
⑭ 외벽재료	61
⑮ 지붕재료	62
⑯~⑰ 연건평, 대지면적	63
⑱~㉑ 총 방수와 거주 가구수	63
⑳ 건축년도	64
㉑ 편익시설수	64
㉒ 거주가능 가구수	65
VII. OMR 조사표 작성 및 관리방법	66

I. 조 사 일 정

조 사 원 교 육



3월 28일 (수)

1. 조사지침서 교육

조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훈련이 끝나면 집에서 다음날 실지조사에 대비하여 조사지침서의 내용은 물론 조사표 작성요령을 충분히 복습하여야 한다.

2. 조사용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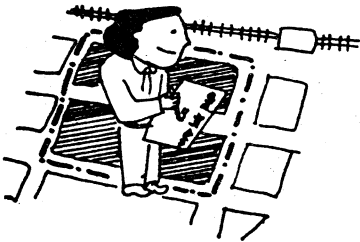
- 사무용품 (연필, 지우개)
- 조사구 요도
- 가구명부용지

※ 조사표에는 전수·표본 2종류가 있으며 각 조사구별로 지정된 조사표를 사용한다.

3. 조사표류관리의 철저

- 오염이나 훼손방지
- 조사표류 절약
- 보관철저

조사구 경계확인 및 가구명부 작성



3월 29일 (목)

* 준 비 조 사 *
* 다음 요령을 준수하여 준비조사에 임한다. *

1. 조사구 경계확인

동·읍·면 담당자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조사구 요도를 수령한 후 자기가 담당할 조사구의 외곽 경계를 확인한다.

2. 조사구 요도 보완작성

조사구 요도에 거쳐 표시를 하고 거쳐번호를 방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거쳐번호 가입방법은 19쪽 참조)

준비조사 대비 기입은 주된 것이 중요함

가 구 명 부 작 성

2. 가구명부작성

완성된 조사구요도에 따라 조사구내의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가구명부를 2부 작성한다.

3. 일반조사표 배부

가구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가구에 기입식 일반조사표를 배부하고 기입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일반조사표를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재방문 시간을 약속한다.

3월 30 (금)

~ 3월 31 (토)

실 지 조 사



4월 1일 (일)

~ 4월 10 (화)

 준비조사에서 파악한 결과를 동읍면 지도원에게 보
 고하고 필요한 양의 일반조사표를 수령하여 실지
 조사에 착수한다.

1. 일반조사표 수령 및 가구명부 제출

- 준비조사에서 파악한 가구수만큼의 일반조사표를 수령

2. 실지조사 실시

- 가구명부에 표시된 거쳐번호순서와 약속된 재방문 일정에 따라 가구를 방문하여 적합한 응답자를 선정하여, 일반조사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잘못 기재된 항목이나 기재가 누락된 항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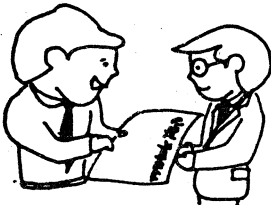
- 내검시 조사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직원 또는 지도원이 현지를 재방문하여 정확한 내용을 보완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집계표

2. 집계표작성

- OMR조사표에 대한 내검작업이 완료되면 각 동별로 인구 및 가구수에 대한 집계표를 작성한다.
- 동 집계표는 내검요원 및 동직원에 의해 작성, 확인 한다.

조 사 표 류 제 출 및 간 담 회



1. 조사표류제출

- 조사표, 가구명부 및 집계표 등의 점검이 끝나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최종 점검을 받는다.
- 제출하여야 할 조사표류
 - ① 조사표
 - ② 조사지침서
 - ③ 가구명부
 - ④ 조사구요도
 - ⑤ 조사업무 수행시 발생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2. 간담회 개최 : 4월 10일 PM 2:00

조사가 끝난후 조사업무 수행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발표

에 대해 추가 질문하여 기입식 일반조사표 작성을 완료

- 마땅한 응답자가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경과하여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지도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인계

OMR 조사표에의 이기

1. 조사가 완료된 기입식 일반조사표는 매일 오후 6시까지 동사무소의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조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가구를 재방문하여 보완하고 OMR 조사표에 이기한다. 이때 전문이기요원에 의해 부호가 기입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2. 이기작업이 완료된 OMR 조사표는 지도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수정하도록 한 후, 조사구별로 OMR 조사표 화일에 가구번호 순서대로 보관한다.

OMR 조사표 내검 및 집계표 작성 요계표

1. OMR 조사표 내검 (내용검사)

- 동사무소의 지도공무원은 선발된 내검요원과 함께, 기입식 조사표와 OMR 조사표를 대조하여 이기된 내용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보완한다.

II. 조 사 원 주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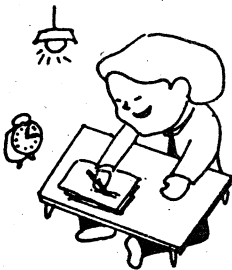
조사원은 각 가구를 방문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주의사항

개 인 의 비 밀 보 장



탁 상 조 사 금 지



구 분	실 천 내 용
①가구의 누락·중복방지	• 담당 조사구 경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주의
②조사업무에만 전념	• 조사기간 중에는 본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조사하여서는 안됨
③대리조사 불가	• 조사업무를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대리 조사케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이 조사해야 함.
④조사업무 수행이 어려울때	• 특별한 사고(질병, 기타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즉시 지도공무원에게 보고
⑤조사지침서숙지	•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항상 지침서를 참고
⑥개인의 비밀보장	• 조사결과 취득한 가구나 개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밀로 한다.(누설하게 되면 통계법에 의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형)
⑦조사진행사항 일일보고	• 항상 지도공무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
⑧탁상조사 또는 조사표 배부금지	• 기존의 기록(주민등록, 통리)·반적부등)을 이용하여 탁상 조사하는 사례 엄금

2. 가구 방문시 주의사항

방문시간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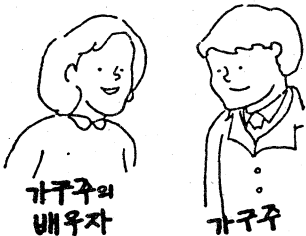
조사원증패용및복장단정



구분	실천내용
①방문시간 선택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은 피한다.
②조사원증 패용	• 조사업무 수행중 조사원증을 항상 왼쪽 가슴에 패용, 응답자가 신분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함.
③복장단정	• 검은 안경을 쓰거나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④질문요령	• 누구나 알기 쉽고 공손하게 질문하며 되도록 조사표의 질문요령에 의함.

3. 조사표 회수후 부실내용에 대한 면접조사를 할때 응답자 선정시 유의사항

적합한응답자



구분	실천내용
적합한 응답자	• “가구주” 및 “가구의 배우자” 또는 그 가구의 내용을 잘 알아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을 선정(어린이나 가정부에게 질문금지) • 특히 동거인(가정부, 종업원, 하숙인등)에 대한 조사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여야 함.

4. 응답거부시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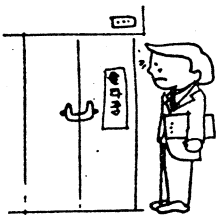
비밀보장



구분	실천내용
①조사목적 설명	•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②비밀보장	• 조사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며 단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
③계속된 응답 거부	• 위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도공무원에게 보고

5. 대상가구 재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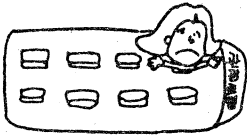
대상가구재방문



구분	실천내용
①적격 응답자의 부재중	• 가구원 출타 또는 마땅한 응답자가 없을 때
②혼사(婚事), 상사(喪事) 등	• 대상가구에 혼인 또는 상(喪)을 당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매우 바쁠 때
③조사내용의 착오	• 조사표 검토중 기입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6. 외국인 조사 : 제21

외 국 인 조 사



구 분	실 천 내 용
조사대상외국인	• 체류목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화교, 외국 선교사(신부, 목사, 수녀), 평화봉사단원, 한국주재 외국상사 직원(외국 통신 특파원) 한국기업체내의 외국인 직원, 외국 유학생, 연수생 등은 모두 조사

Ⅲ. 조 사 대 상

◆ 조사기준일 : 1990 년 4 월 1 일 0 시

- *****
- * ○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담당 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 * 모든 사람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한다.
 - * ○ 외국인은 모두 조사대상이 되나 단, 다음 사람은 제외한다(외국의 외교관,
 - *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와 있
 - * 는 사람은 제외)
 - * *****

1. 집을 떠난 가구원의 조사장소



자기집에서 조사해야 할 사람

- 잠시 친척집에 방문차 가있는 사람(국내외 불문)
- 본래 이 가구에서 살고 있었으나 잠시 형제·자매집에 가 있는 부모등 가족



- 국내외에 여행중인 가족
- 국내외에 출장중인 가족(단, 학업이나 직업때문에 외지에서 상주하는 가족은 제외)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인 가족
(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은 제외)

기초의료
시설과 관련된 다른 내용



- 선박, 항공기 등의 탑승 승무원인 가족 (기숙사에 들어 있는 가족 제외)



-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 (교도소)의 미결수



- 예비군, 민방위, 방위소집 중인 가족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영외거주 직업군인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여

부를 알 수 없는 1개월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전하.

원칙적으로 상주 개념
필수시 전주 개념

취직, 회사 (공동생활)은 원칙적으로
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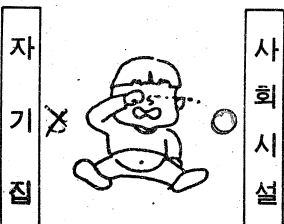
타 지 에 서 조 사

외지에 취업·취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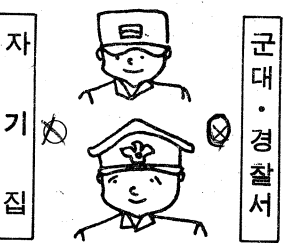
- 취업, 취학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외지에서 하숙, 자취중인 가족

사회시설에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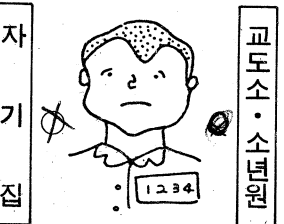
- 교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군인 또는 전투경찰 입대



- 군 또는 전투경찰, 의무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가족

교도소, 소년원의 기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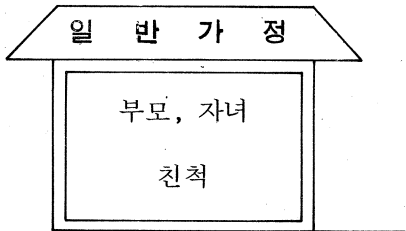
- 교도소, 소년원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중 형이 확정된 자

대항생 자 : 자기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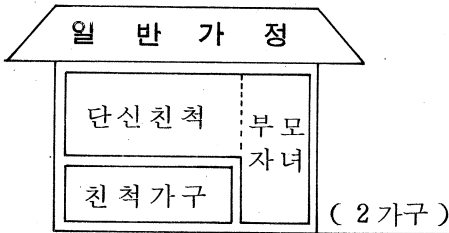
2. 가구구분

일 반 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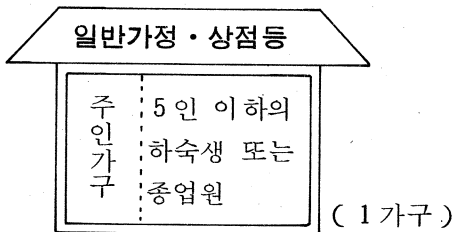
- 1인 또는 2인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주단위를 일반가구로 파악한다. ** 세대 : 1세대 1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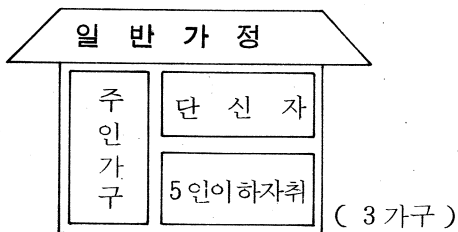
-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1가구로 조사



- 친척과 같이 살고 있으며, 이때 친척이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2가구로 조사한다.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로 조사한다.



- 주인가구와 한 거처에서 살고있으나 취침, 취사와 생계를 달리하는 단신자 또는 5인이하 자취생은 각각을 1가구로 조사한다.

다방, 음식점, 상점	
주 인 가 구	6인 이상 종업원 또는 하숙생

(2 가구)

6인 ~ 4인

- 다방, 음식점, 상점등의 영업 장소에 주인가구와 별도 숙식하는 종업원이 6인이상인 경우와, 하숙생이 6명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조사한다. 이때 6인이상의 하숙생이나 종업원이 서로 혈연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가구, 혈연관계 없을 경우에는 집단가구로 분류한다.

기숙사(학교, 회사)		
관 리 가 구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2 가구)

- 기숙사, 고아원등 시설내에서 살고 있는 관리인(주인)가구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한다.

* 기숙사내의 학생은
집단가구로 조사

중 국 인 집 등	
외 국 인 가 구	한국인 종업원

(2 가구)

- 외국인 가구 또는 사업소에서 숙식을 하는 한국인종업원은 외국인가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5인까지는 일반가구, 6인이상은 집단가구로 조사)

학숙생 20명 이상

집 단 가 구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자권**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6인 이상 동일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하고 있는 사람들

사 회 시 설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입 소자

(1 가구)

- 고아원, 양로원, 영아원, 불구자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숙사 (학 교)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1 가구)

- 공장, 학교, 병원 등의 기숙사(명칭이 기숙사라도 독립적인 취사, 취침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가정, 상점 등	
주 인 가 구	6인 이상의 종업원 하숙생 등

(2 가구)

- 주인가구와 숙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동거인수가 6인이상인 사람들
- 자취를 하는 1단위가 6인이상인 사람들
- *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 대사찰,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 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막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Ⅳ. 준 비 조 사

1. 가구명부 작성

조사구 번호	전 수	일 반 조사표	O M R 조사표수
	표 본		

시 도	구시군	동읍면

① 거 처 번 호	② 가 구 번 호	③ 가 구 주 주 (대표자)성 명	④ 주 소		⑤가구의 종류			⑥거처의 종류						⑦ 빈 집	⑧ 농·어의 구 분			⑨ 부 재 여 부
					일 가	반 구	집단 가구	주 택							농	어	비	
			통 리	번 지				2 인 이 상	단 독	외국인(국적)	집 단 가 구	단 독 주 택	연 립 주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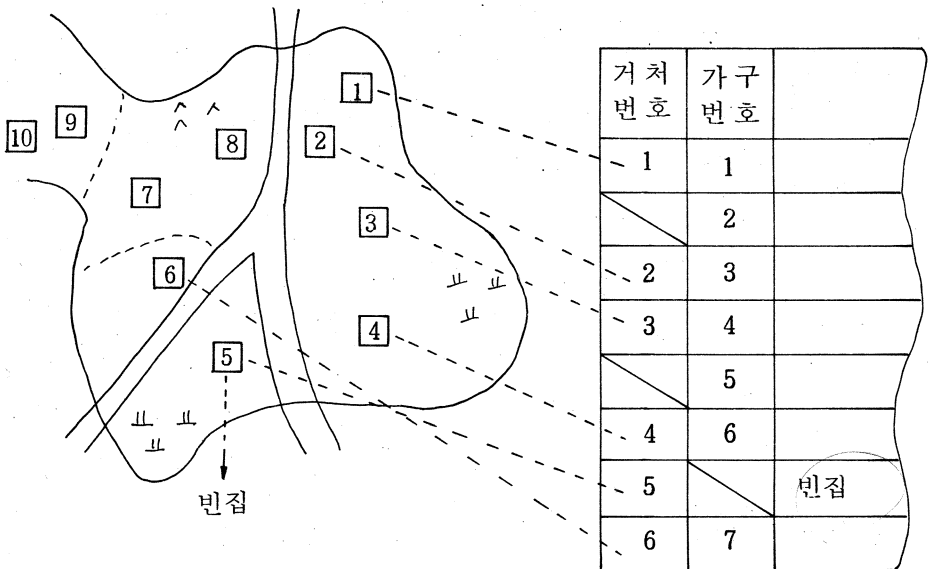
다가가 주택
다세대
다중

가. 가구의 파악이 끝나면 다시 거처일련번호에 따라 가구명부를 작성한다.

나. 가구명부의 기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조사구번호 :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 (2) 전수·표본 : 담당조사구가 전수 또는 표본조사구인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한다.
- (3) 일반조사표매수 : 실시조사에 소요된 일반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4) OMR 조사표매수 : 일반조사표에 의해 이미작성된 OMR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5) 조사구 소재지 : 조사구의 소재지명을 동읍면 단위까지 기입한다.
- (6) ①거처번호 : 거처번호를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예시 ① : 거처 및 가구번호 기입방법



(주의) : 빈집이라 하더라도 거처번호는 기입해야 한다.

(7) ②가구번호

(가) 한 거처내에 몇 가구가 살고 있나 확인하여 거처번호와 관계없이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예시①참조)

(나)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내에 있는 일반 가구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있는 보통조사구에 포함 조사한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담당자가 그러한 시설에 들어있는 보통조사구를 같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시설내에 있는 일반가구를 누락조사하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동읍면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빈집일 경우에는 가구번호란에 사선「\」을 긋는다.

(8) ③가구주(대표자)성명

(가) 가구주라함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대표하고, 그 가구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자를 말하며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이상 함께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9) ④주소

거처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통반,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단 동일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긋는다.

(10) ⑤가구의 종류

해당 가구에 ○표시하고 외국인 가구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구의 국적을 기입한다.

(11) ⑥거처의 종류

(가) 본 지침서의 주택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 한다.

(나) 빈집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거처번호
란의 거처총수와 이 란의 합계는 일치 하여야 한다.

(12) ⑦빈집

(가) 조사구역내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으로서(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전부 포함한다.

(나) 과거에 살다가 비워 논 집인 경우, 대폭적인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 빈집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13) ⑧농·어가의 구분

(가) 다음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한다.

(나) 농가나 어가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비농가에 ○표시한다.

(다) 한 가구가 농업활동과 어업활동을 다같이 하는 경우 농가와 어가
란에 둘다 ○표시를 한다.

농 가 와 어 가 의 정 의

가. 농 가

가구원중에서 다음과 같은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1) 경지 300 평이상을 경작 또는 경영하는 가구

(2)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각각 100 평, 과수나 묘목을 각각 200 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 (3) 소, 말등 대가축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경마, 달구지용 소등 운반용 제외)
- (4) 돼지, 산양, 면양등 중가축 3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5) 토끼등 소가축 40마리 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 3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6) 꿀벌 5군(群) 이상을 양봉하는 가구
- (7) 잠종(누에씨) 12g 이상을 소잠하는 가구
- (8) 연간 총수입중 농업 부대서비스업 또는 복합경영한 농업수입이 여타 산업 수입보다 많은 가구

나. 어 가

어가라함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자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2. 일반조사표 배부

가구명부작성이 완료되면 매 가구마다 일반조사표 배부하여 책임있는 응답자가 일반조사표를 직접 기입토록 하며, 실지조사 방문시 회수하여 기재 누락 사항이나, 착오기재사항만을 면접 조사한다.

3. 조사구 요도 작성

담당조사구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고 경계선 및 담당구역내의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가구명부작성 요령에 의거 부여하고 요도작성요령에 의거 거처표시를 한다.

V. 실지조사(본조사)

1. 조사일자

4월 1일부터 가구를 방문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2. 일반조사표의 회수 및 내용확인

준비조사기간중 배부한 일반조사표를 회수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된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응답자 선정

기재누락 또는 부실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가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단, 동거인의 경우는 반드시 직접 면담하여야 한다.

4. 누락 또는 전입 전출가구 처리

본 조사당시 누락 또는 전입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가구명부에 추가기재하고 전출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의 해당 비고란에 전출일시를 기입하고 붉은선을 긋는다. 단, 전입된 가구는 이사 전 상주지에서 조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일반조사표의 기입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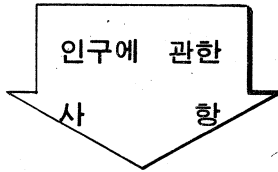
가. 일반조사표는 연필 또는 볼펜 등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 일반조사표는 한 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 기입한다. 다만, 6명이상의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2장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다. 집단가구는 계속하여 작성한다.

라. 각 조사항목의 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Ⅶ. 조사항목별 기재방법 및 작성기준



① 성 명	②가구주와의관계
-------	----------

① 성 명	그러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 맨 첫번째 란 1 가구주 성명을 먼저 써 주시고 다음 란에 나머지 가구원을 차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가 구 주 와 의 관 계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② ※ 「장남」, 「장남의 장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주

(1) 조사대상 기준에 따라 정확히 기재되었나를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 한다.

특히 유아, 동거인등 조사가 누락되기 쉬운 사람의 경우 재확인 한다.

(2)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대표하고 그 가구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가구주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빠지기 쉬운 사람	잘못 포함되기 쉬운 사람
1. 갓난애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아) 2. 가정부, 하숙인, 노인, 선박, 항공 기 및 철도탑승 승무원, 잠시 여행중인 가족, 방위병으로 집에 서 출·퇴근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	1. 친정에 잠시 다니러 온 딸 2.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가족 3.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4. 타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5. 병역의무자로서 입대한 군인 (지원 입대한 여군 포함)

- (3)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예 : 자취, 종업원 등)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하여 기입되어야 한다.
- (4) 집단가구는 집단가구원 중에서 대표를 선정 가구주로 하여야 한다.
- (5)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울 음	틀 림
장남, 차녀, 삼녀	딸
장남, 차남, 삼남	아 들
장남의 장남	손 자
차남의 삼녀	손 녀
장남의 처	며 느 리
삼남의 처	며 느 리

사례연습

사례 1	“ 박길동 ” 의 가족은 배우자, 타지에서 학교다니는 아들, 군에 있는 아들과 아직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딸이 하나 있다. 이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은 몇명인가?
해 설	3명 (가구주, 처, 딸)
사례 2	가장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때 그 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할 것인가?
해 설	그렇다.
사례 3	동거하고 있는 수명의 종업원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해 설	동거인이 5명이하일 경우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 주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기입하고 숙식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일반가구로 분류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기입하며, 6명이상일때는 동거인만의 집단가구로 분류하여 별도 조사표에 조사하고 연장자를 대표로 기입한다.

③ 성 별

성 별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 ③ 입니까?	① 남 ② 여
--------	----------------------------	------------------------------

(1) ①②중 해당 항목에 ○표시가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특히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남녀별 구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나 이

나	이분의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④-1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살
이	이분은 몇년도에 태어 났으며 무슨 띠 입니까?	년도 띠
	④-2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월 일
	④-3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양력 ②음력
	④-4 ※ 이란은 위의 만나이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 나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 살

(1) 정확한 만나이를 찾아내기 위하여 4가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 먼저 집에서 세는 나이를 기재한다. 그냥 나이를 기재할 경우 나이, 호적상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집에서 세는 나이를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 (3) 다음에 출생년도를 기재하고 모르는 경우 띠를 기재토록 한다. 따라서 출생년도, 띠중 어느 하나만 기재되어도 무방하니까 정확하지 않은 출생년도와 띠를 일부러 부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년도와 띠를 모를 경우에는 비워두어야 한다.
- (4) 그다음 집에서 쇠는 생일을 묻고 음력인가 양력인가를 표시한다.
- (5) 세는 나이와 연도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일치되지 않을 경우 질문을 통해 수정 보완 토록한다.
- (6) 만나이를 환산할때 최선을 다해서 4가지 사항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2가지 이상 일치하는 것을 택하고, 모두 일치되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를 띠, 나이, 연도순으로 정하여 만나이를 환산한다. 연령환산표는 일반조사표에 기재되어 있다.

사례연습

사례 1	“최병현”이라는 사람은 1990년 4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44살이고 띠가 개띠이며 출생연도가 46년생,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1월 12일일때 “최병현”의 나이는 몇 살인가?
해 설	42세
사례 2	“강복석”이라는 사람은 1990년 4월 1일 현재 세는 나이가 44살이고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3월 5일일때 “강복석”의 나이는 만 몇살인가?
해 설	43살

⑤ 출 생 지

출 생 지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 이분의 어머니가 평소 살고 계셨던 곳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출생당시 그곳의 행정구역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당시의 행정구역명을 기재하고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이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시도(국)구시군
-------------	---	--

(1) 모든 사람이 기재되어야 한다.

(2) 본적지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기입한다.

다만, 산모가 출산을 병원, 친정등에서 하였을 때에는 산모의 상주지를 출생지로 본다.

(3)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출생지의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4) 출생지가 현재의 구시군과 다른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을 몰어 기입하고 출생지가 외국인 경우는 국명을 기입한다.

(5)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당시의 북한지역 시도와 구시군명을 기입하되, 시도명 앞에 북한이라고 기입한다.

사례연습

사 례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살고 1977년에는 서울 관악구 노량진 1동에 살았던 “이갑순” 산모는 그 당시 친정인 수원에서 “강을동”이라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때 “을동”군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해 설	“강을동”군의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 산모의 상주지는 서울 관악구임. 그러나 관악구 노량진 1동은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동작구 노량진 1동으로 바뀌었으므로 “강을동”군의 출생지는 동작구가 된다.

⑥ 교 육 정 도

교 육 정 도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⑥ ※대학원의 경우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현재 1학기이상 휴학상태인 경우는 중퇴에 기재합니다.	① 안다녔음 (안다니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 (교) ⑦ 대 학 원 }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	---	--

(1) 만 5세미만의 어린이는 ⑧란에 전부 사전「/」을 긋는다.

(2) 학교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기관을 말한다.

(타자, 경리, 부기학원 및 재수생을 위한 학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한다.

사례연습

사례 1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정규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에 의하여 운영되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고등공민, 전수중 고등학교 및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검정고시등)에 합격한 사람의 학력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해 설	두 경우 모두 당해과정 이수 및 합격내용대로 학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력 및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안했다라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고시 합격은 학력을 인정하여 기입한다)

⑦통근·통학여부	⑧직장또는학교(원)주소	⑨출발·도착시간	⑩이용교통수단
----------	--------------	----------	---------

통근·통학여부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등으로 통근 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 ②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① 한 다. ② 안한다.
직장또는학교(원)주소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 통학을 하는 경우 다른 동읍면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모를 경우 직장 또는 학교(원)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이름 또는 특징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시도구 시 군동 읍 면 직장·학교(원)주요건물이름

출발·도착시간 ⑨	평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시는 시각은 몇시 몇분입니까?	집에서 출발한 시각 ① 오전 ... 시 ... 분 ② 오후 ... 시 ... 분 도착시각시 ... 분
이용교통수단 ⑩	평소 집에서 출발할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2 개이상의 교통수단을 <u>갈아 타</u> 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에 모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기타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절차)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교통수단

(1) 만 12세 이상의 사람에게 우선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통근(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⑦란 ①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⑩⑪⑫란을 묻는다.

따라서 ⑧란 ② “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⑩⑪⑫란에 사전「\」을 긋는다.

(2) 여기에서 학교(원)이란 정규학교 뿐만아니라 이·미용,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⑧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는 직장 또는 학교(원)가 위치하고 있는 동읍면을 말하는 것으로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가 ② “다른 읍면”에 있을 때에는 시도, 구시군, 동읍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물어 모두 기입한다.

(가) 택시 운전사인 경우는 차고지를 근무지로 한다.

(나) 열차,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해당사무실을 근무지로 한다.

(대)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는 ⑨란 ② “안한다”에 해당된다.

(래) 근무처가 일정하지 아니한 행상인들은 지난 1개월간 주로 경제활동을 한 지역을 조사한다.

(4) ④란은 주로 아침 출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중 ¹²주된것 하나만 ○표시한다.

(5) 통근 통학 소요시간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과 또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을 기재한다.

사례연습

사례 1	특정회사,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배우, 음악가, 연예인들의 통근지는 어느 곳으로 볼 것인가?
해 설	전속인 경우 전속된 직장 주소를, 전속이 없는 경우 최근 제일 많이 출연하는 곳을 통근지로 본다.
사례 2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한 사람은 통근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해 설	주재하고 있는 장소를 통근지로 본다.

⑪혼인상태

혼상 인태 ⑪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	-----------------------	----------------------------------

○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에게만 질문하고 만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사전 「/」을 갖는다.

○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① 미 혼 : 이제까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유배우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③ 사 별 : 결혼했으나 배우자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 않고 혼자 있는 경우로써 6.25 때 배우자가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로 간주한다.

④ 이 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사례연습

사 례	“갑”이라는 사람은 호적상 “을”이라는 배우자가 있고 “병”이라는 여자와도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을”여, “병”여의 유배우 여부?
해 설	“을”여는 물론 “병”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사실상 결혼관계에 있으므로 유배우로 본다.

⑫만 1년전 거주지

⑬만 5년전 거주지

만 1년전 거주지	지금으로부터 1년전('89.4.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⑬다른 구시군 일 경우에는 그곳의 행정구역을 기재 ⑫하여 주시고 외국일 경우 그 나라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일 경우 그 나라이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 도(국) 구 시 군
-----------	---	--

만 5 년 전 거주지	⑬ 지금으로부터 5년전('85.4.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곳의 행정구역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외국일 경우 그 나라 이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 (국) 구시 군
-------------------	--	---

- (1) ⑫란은 만 1세 이상, ⑬란은 만 5세 이상에서 묻는다.
- (2) ③ “다른 구시군”에 해당된 사람은 시도, 구시군 또는 나라 이름(국명)을 물어 기입한다.
- (3) 집을 떠나 군에 입대한 기간은 그가 속했던 가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4) 취업, 취학 등으로 집을 떠나 있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는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때부터 상주한 것으로 조사해야 한다.
- (5) 구시군의 경계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사례연습

사례 1	“박갑석”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1987년 3월 1일 군에 입대하였다가 1990년 2월 1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는데 본가는 이미 1988년 12월에 서울종로구로 이사를 하였다. 이때 “박갑석”의 1년전 거주지는 어느 곳인가?
해설	군복무기간은 “박갑석”이 속했던 가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1989년 4월 1일 이전에 본가가 서울 종로구

	로 이사하였으므로 1년전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로 기재한다.
사례 2	“김을석”은 1988년 6월~1989년 7월까지 사우디에서 건설노무자로 취업한 적이 있다. 이때 “김을석”의 1년전 거주지는 어느 곳인가?
해설	취업, 취학등은 집을 떠나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부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김을석”은 1989년 4월 1일 당시 사우디에 있었으므로 1년전 거주지는 사우디(국)으로 간주한다.

⑬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상태	이 분은 평소에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②, ③, ④에 기재된 틈틈이 일했다는 것은 수입을 위해 조금이라도 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이나 농사일을 도운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수입있는 일을 하신 분은 ⑮산업부터 기재하시고 수입있는 일을 전혀 안하신 분은 ⑮산업부터 ⑰직업까지 사선(\)을 하시고 다음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알렸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했다. (농사, 다른 직업)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었다. [수입있는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었다. ⑦ 집안일을 돌보았다. ⑧ 학교(원)에 다녔다. ⑨ 놀고 있었다. ⑩ 기 타 (농사, 다른 직업)
----------	--	--

(1) 이란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만 15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다(없다)를 일반조사표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 한다.

(2) ⑬란의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는 다음과 같이 일한 사람이 해당된다.

(가) 농사를 짓거나 상점, 공장등을 경영한 사람

(나) 다른 사람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일한 사람

(다)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봉급을 받은 사람

(라) 일정한 직업 또는 직장이 없더라도 지난 1개월간에 주로 수입(돈벌이)을 위해 일을 한 사람(행상, 막노동 등)

(마) 임금 또는 봉급을 받지 않으나 가족이 하는 사업의 일을 도와 수입을 올린 사람

(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일주일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자기 또는 가족의 병

② 일기불순

③ 휴가, 연가, 예비군훈련

④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⑤ 사업체사정(기계고장, 원료미확보등)

(사) 영외거주 군인 및 방위소집중인 자는 여기에 포함하고 ⑮란 “주된 사업내용”에 군인 및 방위소집이라 기입하며 ⑯~⑰란에는 사선「\」을 긋고 ⑪란부터 다시 묻는다.

⑦ “집안 일을 돌보았다”

평소에 주로 자기 가정일을 돌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부, 정원사, 자가용운전사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①의 “돈 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에 해당된다.

⑧ “학교(원)에 다녔다”

정규학교 뿐만아니라 재수생을 위한 학원, 기술 습득을 위한 각종 학원, 직업훈련원등 비정규학교에 다닌 사람도 포함한다.

⑨ “놀고 있었다”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지난 일주일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이 취업전선에 나섰으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⑩ 기 타

만 15세 이상의 사람이면서 전항 4가지 항목중에서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아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사람, 불구로 돈벌이를 하지 못한 사람, 재산수입, 이자수입, 배당금, 송금, 연금 등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된다.

- ① 가정주부가 가사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남의 논밭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은 경우
- ② 학생이 틈틈이 일하고 돈을 받거나 신문팔이 등으로 돈을 번 경우
- ③ 연로자가 불구자가 가끔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
단,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등이 자기집에서 하는 농사, 상점등에서 조금씩 일한 경우에는 일한 것으로 포함한다.

사례연습

사례 1	근무처가 결정되어 있으나 조사기간 중에는 아직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해 설	조사기간중에 아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지라도 ⑬란의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⑩기타에 ○표시한다.
사례 2	사업개시를 위하여 자본 및 자재를 조달하거나 기타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의 구분?
해 설	사업개시의 출발점은 본연의 업무를 개시하는 때부터이며 이 때부터 일한 것으로 본다.
사례 3	조사기간중 수도 또는 원동기의 고장(사업체내 사정)으로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경제활동상태?
해 설	일시 휴직으로 잠시 이직하고 있는 상태는 ⑬란의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했다 해당된다. 여기에서 일시 휴직은 취업자로서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잠시 이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자기 또는 가족의 병이나 부상으로 일시 쉬었을 때 2. 휴가, 연가, 훈련, 근무소집 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 3. 노동쟁의 파업등으로 일시 쉬었을 때

	4. 일기불순, 기계 고장 등으로 잠시 조업을 중단하여 쉬었을 때.
사례 4 해 설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으로서 제방고치기 등 부락공동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된 노동을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경제활동 여부는 정부로부터 노임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사례 5 해 설	예금의 이자, 고리대금업자 또는 주식의 배당금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6 해 설	접대부와 위안부의 하는 일도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접대부의 접대행위는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안부의 행위는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접대부의 행위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위안부는 밀수행위, 도박등은 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산 업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⑮ ※원쪽란의 산업직업기재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내용을 기재시는 취급하고 있는 상품명이나 영업형태 또는 생산품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된사업내용 직장·사업체이름
종사상 의 지 위	어떠한 형태로 돈벌이 또는 생업에 참여 하셨습니까? ⑯ ※원쪽란의 산업직업기재 예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을 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근로자

가. 주된 사업내용

예 : 포목소매상, 식당, 책상을 만든다. (예시참조)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 회사, 공장이름을 쓴다. (현대건설주식회사, (주)금

성사 등) 상호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기입한다. (논, 밭, 시장, 농장, 목장, 지하상가 등)

- (2) ⑰란 “종사상의 지위”는 ⑩란의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항목이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주를 말한다.

② 고용원 없는 경영자

고용원이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경영주를 말하며, 일정하게 어느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그날 그날 막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③ 무급가족 종사자

직접 임금의 형태로 보수는 받지 않으나 가구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평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임금·봉급근로자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직장근로자, 가사사용인 등을 말한다.

직장 근로자라 함은 공무원,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등), 과 같이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순히 거마비만 받는 비상근 임원은 제외한다.

가사사용인이라 함은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가정을 돌봐주고 급여를 받는 사람(가정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 가정을 돌보는 가정 주부는 제외한다.

사례연습

사례 1	자기 자본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학교 교장이며 관리인이다. 종사상의 지위는?
해 설	자기자본을 출자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재단이사장 또는 학교 교장으로 종사하였다면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
사례 2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A는 회사차를, B는 개인 택시를, C는 영업용 택시를, D는 사장의 승용차를 운전하되 회사봉급을 받고, E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주인인 개인한테서 봉급을 받을때 종사상의 지위는?
해 설	A는 임금·봉급근로자, B는 고용원 없는 자영자, C, D, E는 임금·봉급 근로자

⑰ 직 업

직 업	이분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⑰ ※왼쪽란의 산업, 직업기재 예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말은 일의 종류 부서 및 직책년도
------------	--	--------------------------------

- (1) ⑰란은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급료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일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 (2) 부서 및 직책은 ⑯란과의 ④ 임금·봉급근로자에게만 묻고, ⑯란 ①~③ 해당자는 사선「\」을 긋는다. 부서 및 직책은 직업의 종류를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 등을 기입하고 직책에는
부장, 국장, 상무, 전무, 사장, 과장, 계장, 공장장, 반장 등을 기입한다.

예 : (부서 및 직책) (부서 및 직책)

개발부개발과장

경리과경리계장

- (3) 말은 일의 종류는 ⑯란 해당자의 전부가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한일은누
가 읽어보더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번의 질문으로 정확한 응답
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어서 기입하여야 한다.

(예시 : 양품점에서 물건을 판다. 경리사무를 본다. 타자를 친다. 논에서 벼
를 베었다.)

주의할 것은 공무원, 회사원, 공원, 사무원등 막연한 직업을 기입해서는 아
니된다.

- (4) 종사상의 지위란에서 ①~③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서 및 직책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부서와 직책을 기입한다.

예시 사업내용,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내용 기입예

⑮ 사업내용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내용
(주된사업내용) 기관차 부품 인 스프링을 생산 (직장사업체이름) 평화공업주식회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선반을 조작한다 ----- 부서 및 직책 선반부 기능직5등급
(주된사업내용) 아동복 제조 (직장사업체이름) 한일섬유주식회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주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일을 분담해 주고 제품을 검사한다 ----- 부서 및 직책 봉제부 반장

⑮ 산업내용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내 용
(주된사업내용) 야채축성 재배 (직장사업체이름) 베 닐 하우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온실에서 야채를 축성재배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주된사업내용) 미 장 일 (직장사업체이름) 집 집을 돌면서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시멘트 미장일을 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주된사업내용) 쿠 역 업 (직장사업체이름) 한 정 물 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회차의 정병을 주조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사장실 대문이사
(주된사업내용) 석회물 원단을 생산 (직장사업체이름) 동 방 기 업 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회사 회물차 운전을 하였음 ----- 부서 및 직책 충무부 운전기사
(주된사업내용) 벼 동 사 (직장사업체이름) 논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봉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나의 논에서 벼를 베었음 ----- 부서 및 직책

⑮ 혼 인 연 령

혼 인 연 령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살때 하였습니까?	살
	⑮ 결혼한 날짜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결혼은 몇년도에 하셨습니까?	 년도

- (1) 만 15세 이상 기혼자(유배우, 사별, 이혼)에게만 묻되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시기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의 자와 만 15세 이상의 자라도 미혼에 해당되는 자는 「\」을 긋는다.
- (2) 혼인연령은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연령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때의 연령에 해당되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다가 식을 올린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생활을 처음 시작한 연령을 조사하여야 한다.
- (3) 재혼한 사람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의 결혼연령을 조사하여야 한다.
- (4) “생일전후”란 결혼식 혹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한 날이 본인 생일과 비교할때 생일전인 경우 “① 생일전”에 ○표하고 후일 때는 “② 생일후”에 ○표를 한다.

①9생존자녀수	②0사망자녀수	②1총 자출생 수
---------	---------	-----------------

생 존 자 녀 수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①9분은 모두 몇분입니까?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중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분도 포함됩니다.	남	
		여	
		계	
사 망 자 녀 수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부인께서 낳으 신 ②0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몇분이 나 됩니까?	남	
		여	
		계	
총 자 출 생 수	지금까지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는 모두 몇분 ②1입니까?	남	
		여	
		계	

- 만 15세 이상의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부인에게만 질문하며 남자와 미혼여자는 사전「\」을 긋는다.
- 기혼부인이 사실상 낳은 자녀수를 기입한다.
-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현 남편과 전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⑨ 건물시설에 의해 다가구나 다중주택으로

모든 가구의
주거에 관한
사항

가. 각 가구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거처의 종류

- ① 귀택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상가의 2층에 집은 짓는*
 - ⑥ 여관방 등 숙박업소의 객실
 -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 ⑧ 임시막사
 - ⑨ 사무실 겸 용(오피스텔)
 - ⑩ 기타 (음막, 판자집 등) *영업용 거처내의*

○ ① ~ ⑩ 항목
어느 하나의
항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 주택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첫째 :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둘째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가지고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일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임대

정형화 해라

24.32

2.12.3.12 2.12.4 2.12.5
정형화 1.12.3.12 2.12.4 2.12.5

정형화

Read 2.12.3.12 2.12.4 2.12.5

단,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등 건물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방이라 함은 바닥 또는 마루에서 천정까지 달하는 벽으로 싸여 있고 적어도 1.8m(6척)이상의 높이와 3.3㎡(1평)이상의 넓이를 가진 주택내의 한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통로, 배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차고, 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현대식 주택의 주방겸 식당은 방으로 간주한다.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이 있다.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처

- ① 기숙사, 수녀원, 수도원, 사찰
- ② 합숙소, 여관, 호텔
- ③ 수용소
- ④ 임시막사

①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②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상의 영구건물로써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상가아파트도 여기에 해당한다.)

③ 연립주택 :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주택으로써 다만 건물의 높이가 3층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3층의 빌라, 맨션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1.12.3.12 2.12.4 2.12.5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써 건물 전체의 연건평이 100 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은 건물내에 있는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단독주택과 다르다.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주택이외의 거처

⑤ 여관방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를 말한다.

단, 주인가구가 여관등 숙박업소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 부문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④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해당되며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여관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⑥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및 대사찰등과 같이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⑦ 임시막사 :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를 말한다.

⑧ 사무실 겸용 주택 : 오피스텔을 말한다.

⑨ 기 타 : 천막집, 판자집, 움막, 암자등과 같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② 가 구 구 분

② 귀택은 이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가구입니다.)

① 주가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③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④까지 사진(/)을 그어 주십시오

○ 이 란은 ③란 이후의 각 란의 질문에 적합한 조사대상 가구를 찾기 위한 설문이다.

① 주가구: ① 한 주택에 한 가구가 사는 경우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가구로 본다.

②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물론 주인가구가 주가구가 되나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만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중 한가구를 선정하여 주가구로 한다.

② 동거가구: 주가구 이외의 가구를 말한다.

③ 집단가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6인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집단가구라 한다.

③ 점유형태 ㉓ 임차료

귀택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을 겸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귀택은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까?

세들어 산다면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① 주거 전용	② 영업 겸용	① 자기집 ② 전 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사글세) ⑤ 무 상	전세 및 보증금		
			천 만	백 만	십만원
			월 세		
			백 만	십 만	만 원

※ 사글세의 경우에는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이 란은 주가구와 동거가구에만 질문한다.

① 자 기 집 : 법률상 소유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② 전 세 :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증부월세 :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④ 월세(사글세):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매월 보증금에서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사 용 방 수

④ 귀댁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과 식당방도 방으로 봅니다.)

(APT)

- | | | |
|------|------|--------|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 ④ 4개 | ⑤ 5개 | ⑥ 6개이상 |

-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 등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천정의 높이가 1.8 m (6척) 이상, 넓이가 3.3 m^2 (1평)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현대식 주택의 주방겸 식당도 방으로 본다.
-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으로 보며 단순히 물건만을 쌓아두고 있을 때는 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⑤ 식수의 종류

⑤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 | | |
|--------|---------|
| ① 상수도 | ② 간이수도 |
| ③ 자가수도 | ④ 수동펌프 |
| ⑤ 우 물 | ⑥ 기타() |

거처내에 식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가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식수를 조사한다.

⑥ 취사연료

⑥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 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연탄 | ② 유류 | ③ 가스 |
| ④ 전기 | ⑤ 임산연료 | ⑥ 기타() |

○ 취사용 연료를 두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에 ○표시 한다.

⑦ 난방시설

주택의 질을 판단

⑦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 |
|------------------|-----------|
| ① 재래식아궁이 | ② 연탄아궁이 |
| ③ 연탄보일러 (세바퀴보일러) | ④ 단독기름보일러 |
| ⑤ 단독가스보일러 | ⑥ 중앙난방보일러 |
| ⑦ 기타() | |

주택의 난방시설을 기재하시되 거주용 부속건물(사랑채등)이 있어 난방시설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난방시설을 기재한다.

⑧ 문화시설 및 가재

⑧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 | | |
|--------|-----------|---------------|
| ① 텔레비전 | ② 냉장고 | ③ 세탁기 |
| ④ 전화 | ⑤ 전축(오디오) | ⑥ 녹화재생기(브이티알) |
| ⑦ 에어컨 | ⑧ 개인용 컴퓨터 | ⑨ 자가용 승용차 |

- 현재 갖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를 모두 ○표 한다.
-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탈수만을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전화기에는 교환전화도 포함한다.
-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⑨ 전 용 시 설

<다중> 다중
<다거> 다거

⑨ 귀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 ① 전용으로 사용 ② 공동으로 사용
2. 화장실 시설 : ① 전용으로 사용 ② 공동으로 사용
3. 출입구 시설 : ① 전용으로 사용 ② 공동으로 사용

- 이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에게 전용의 부엌, 화장실 출입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해당란에 ○표 한다.
- 부엌과 화장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있다」에,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② 공동사용 및 없음」에 ○표 한다.
- 출입구시설의 전용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① 다른가구(주인가구 또는 다른 동거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여 출입할 수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도 직접 출입할 수 있으나 출입문이 임시적인 경우 예를 들면, 부엌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전용 출입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 출입문으로 본다.
 - ② 2층집의 경우 2층에 하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외부에서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층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실 내층계는 전용 출입문으로 보지 않는다.

⑩~⑬ 시설 형태

⑩~⑬ 전용 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 | |
|----------|--------|---------|
| ⑩부엌시설 : | ① 재래식 | ② 입식 |
| | ③ 없음 | |
| ⑪화장실시설 : | ① 재래식 | ② 수세식 |
| ⑫목욕시설 : | ① 온수시설 | ② 비온수시설 |
| | ③ 없음 | |
| ⑬상수도시설 : | ① 있음 | ② 없음 |

(1) 부엌시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입식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장치한 부엌을 말하며 재래식은 구가옥이나 시골 등에서 사용하는 부엌을 말한다.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고 수세식을 제외한 변소시설을 재래식이라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에는 온수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4) 상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하는 수도를 말한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의 취수된 물을 정수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수하고 수도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소득 :
 < 농림어업
 기타사업

②④ 한달 평균소득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 (1989.11.1 ~ 1990.10.31) 동안의 총소득액을 한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① 20 만원 미만 | ② 20 만원이상 ~ 30 만원미만 |
| ③ 30 만원이상 ~ 40 만원미만 | ④ 40 만원이상 ~ 70 만원미만 |
| ⑤ 70 만원이상 ~ 100 만원미만 | ⑥ 100 만원이상 ~ 150 만원미만 |
| ⑦ 150 만원이상 ~ 200 만원미만 | ⑧ 200 만원이상 ~ 300 만원미만 |
| ⑨ 300 만원이상 | |

- 지난 1년간의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소득을 기준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된다.
- 가구원 전체총소득이란 가족개념을 기준하므로 영업사용인 또는 동거인과 같이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은 제외한다.
- 세금, 연금, 저축액 등이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하며 현물소득 수증 보조금,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사업이 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소득액을 기재한다.
- 연금 수령액의 경우는 생활비로 충당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본다.
- 임대소득이 현물일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 복권당첨금 등 비경상적인 소득은 생활비에 충당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본다.
- 재산(토지, 가옥, 그림, 골동품, 고서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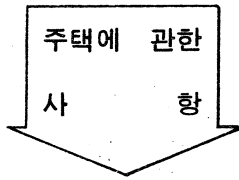
재산.이자소득, 이자소득

가구소득

경상소득 :

자가 평가

- 자가소유자의 경우는 자기 집중 세를 내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월세로 놓을 경우의 시장가격을 소득과 지출(생활비) 모두에 포함한다.
- 지난 1년동안 발생한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은 생활비에 충당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수입금중 저축, 빌려준 돈, 재산구입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신규취업자의 취업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보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에서만 기재해 주십시오. (모든 가구의 주거에 관한 사항중 ① 거처의 종류에서 ①~⑤에 해당되면서 ② 가구구분란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⑭ 외 벽 재 료

⑭ 이 주택의 자용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 | |
|----------|----------|
| ① 나무 | ② 적벽돌, 돌 |
| ③ 시멘트제품 | ④ 철근콘크리트 |
| ⑤ 흙, 흙벽돌 | ⑥ 기타() |

(1) 나 무

기둥이 나무로 되어있는 집을 말한다. 일본집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적벽돌

구운벽돌(적색, 흙색), 오지벽돌(적색, 흙색), 돌로 쌓거나 치장한 집을 말한다.

(3) 시멘트 제품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굽지 않은것)등으로 벽을 쌓거나 타일 등으로 치장한 집을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

벽이 적벽돌, 타일, 시멘트블록 여부 불문하고 기둥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집을 말한다.

(5) 흙, 흙벽돌

토담집을 말한다.

(6) 기 타

상기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는 집을 말한다.

⑮ 지 붕 재 료

⑮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스라브(스라브기와)

④ 함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1) 응답내용대로 기입하지 말고
조사원이 확인하여 기입하되
거주용 부속건물(사랑채 등)
이 있어 주건물의 지붕재료
와 다를때는 주 건물의 지
붕재료를 기입한다.

(2) 기 와

시멘트 또는 구운 기와로 덮힌 집을 기입한다.

단, 스라브위에 기와로 덮은 집은 스라브에(○)표시한다.

(3) 슬레이트

각종 형태의 석면-시멘트제품의 지붕재료로 덮힌 집을 말한다.

(4) 스라브(스라브기와)

평스라브나 경스라브에 기와를 덮은 것을 포함한다.

(5) 함 석

(6) 짚, 갈대

초가집 등이 포함한다.

(7) 기 타

① “기와”~⑤ “짚, 갈대”에 해당되지 않을때 해당된다.

주거부분

⑩~⑪ 연건평 및 대지면적

⑩~⑪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재하시고 대지면적은 담장 안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평 또는 m^2 중 한쪽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⑩연 건 평 ⑪ 대 지 면 적
 m^2 평 m^2 평
 m^2 m^2

- (1) 건평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조사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창고 등은 제외하며 지하실은 총건평에 포함시킨다.
- (2) 대지면적에는 텃밭을 제외한 담내의 전면적을 조사한다. 따라서 담내의 정원 등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킨다.

(3)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의 경우 건평과 대지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조사한다.

다세대주택 : 1세대 기준

⑩~⑪ 총 방수 및 거주가구수

⑩~⑪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과 식당방도 방으로 봅니다)

⑩ 총 방 수개
 ⑪ 거주가구수가구

- (1) 방이란 침실, 거실, 서재, 식당방, 응접실과 같이 사면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총방수란 이러한 방의 총수를 말한다.

- (2) 다만,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탕, 변소, 다락방, 그리고 점포, 사무실 등은 방수에서 제외한다.
- (3) 거주가구수라함은 주가구 또는 주인가구를 포함해서 주택에 들어있는 동거가구를 합산하여 조사한다.

㉔ 건축년도

㉔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 | | |
|-----------------|-----------------|
| ① 1950년 이전 | ② 1950년 ~ 1959년 |
| ③ 1960년 ~ 1969년 | ④ 1970년 ~ 1979년 |
| ⑤ 1980년 ~ 1985년 | ⑥ 1986년 |
| ⑦ 1987년 | ⑧ 1988년 |
| ⑨ 1989년 | ⑩ 1990년 |

- (1)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질문하여 일괄 기입한다.
- (2) 1950년 이후는 매 10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건축시기가 1986년 이후일때는 건축시기를 각 년도별로 기재한다.
- (3) 신축시기를 기입하여야 하나 개축 또는 증축 부문이 건물의 $\frac{1}{2}$ 이상일 경우에는 개축 또는 증축시기를 건축시기로 본다.
- (4) 수차년도에 걸쳐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신축시기를 기입한다.

㉕ 편의시설수

㉕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개가 있습니까?

- | | |
|-------|--------|
| ① 부엌 |개 |
| ② 화장실 |개 |
| ③ 출입구 |개 |

- 다음은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집에 설비된 편의시설이 각각 몇개인지를 조사 기입한다.

㉔ 거주가능 가구수

㉔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
도록 건축되어 있습니
까?
..... 가구

○ 이 란은 모든 가구의 주거에 관한 사
항중 ① 거처의 종류에서 「1」 단독주
택」과 ② 가구구분에서 「1」 주가구(대
표가구)」에 ○표시된 가구에게만 질문
한다.

- 먼저 이 주택은 몇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가를 조사
하여 기입한다.

VII. OMR 조사표작성 및 관리방법

1. 작성방법

- 1) OMR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2B연필로 기입해야 한다.
- 2) OMR 조사표에서  내에는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는 란이며,  은 마크「—」를 하는 란이다.
- 3)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표본조사표 매수」, 「조사표 매수일련번호」, 「총가구원수」 등의 조사표분류란과 「①성명」, 「산업」, 「직업」 등의 이기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기재한다.
- 4) 마크란()에 마크할 마크「—」는 아래와 같이 가장 좋은 마크의 “예”처럼 마크테두리 내에서 굵고 진하게 마크한다.
 - 가장 좋은 마크의 예: 

* 마크의 기본원칙

1. 마크의 굵기는 0.3 mm 이상, 1.0 mm 이하로 한다.
 2. 마크의 가로방향의 길이는 마크테두리의 중심선보다 좌우로 1.5 mm 이상, 총길이 3 mm 이상의 Mark 를 한다.
 3. 농도는 가급적 진하게 Mark 한다.
- 불량한 마크의 예

- 가늘거나 희미한 경우: 
- 짧은 경우:  ,  , 

－ 마크테두리에서 2 mm이상 벗어난 경우 :  

－ 마크테두리 밖에 표시된 경우 : 

－ 잉크, 볼펜 등으로 마크되어 있는 경우 : 

－ 가득차게 마크한 경우 : 

5) 일반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이 OMR 조사표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일반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이 OMR 조사표에 이기할때 단위별 이기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 마크테두리 부분 () 밖에 있는 라번호에 일체 기입하지 않아야 하고, 낙서나 이상한 표기가 없어야 한다.

8) 조사표의 전면의 우측상단 및 오른쪽에 마크된 주위에는 유념하여 낙서나 이상한 표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잘못 마크한 경우 수정하고자 할 때는 컴퓨터용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일반조사표의 정확한 내용을 다시 이기하되 지우개 가루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

1) 조사표는 환경조건 (특히 온도, 습도) 이 급격히 변화하기 쉬운 장소 (예컨대,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 또는 난방장치의 부근) 에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2) OMR조사표가 물기나 습기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3) 조사표의 가장자리 즉 조사표의 사각부분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조사표에 구멍뚫림(홀찌게스 사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 5) 클립이나 홀찌게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6) 조사표에 셀룰로이드 테이프, 라벨, 풀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7) 먼지, 기름, 물방울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 8) 보관시 자석등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
- 9) 조사표 취급시 가급적 타임마크 쪽은 삼가하고, 조사표의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조사표를 다룬다.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최종시험조사

지도지침서

1990.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I . 實 施 概 要

1. 目 的

1985 년 센서스 이후 5 년간 인구·주택의 변동사항파악

-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그에 관련된 제특성
- 주택의 수, 종류, 형태, 구조 및 기본설비의 내용

2. 法 的 根 據

통계법 제 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111-11-01 호 (인구총조사) 및 111-11-02 호 (주택총조사)

3. 調 査 基 準 時 點 : 1990 년 11 월 1 일 0 시 현재

4. 調 査 對 象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내에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나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除外되는 人口〉

- ① 해외 취업·취학중인 사람
- ② 외국 외교관, 수행원, 공무체류중인 사람과 그 가족
- ③ 국제연합 소속기관의 외국직원·수행원 및 그 가족
- ④ 국내주둔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除外되는 居處〉

- ① 국군, 전경, 해경대의 병영막사
- ②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경찰서보호실등 시설내의 막사
- ③ 외국군대의 병영막사

- ④ 제외대상 외국인의 거처, 사무실 및 건물

5. 調査時期

- 준비조사 : 1990.10.29 - 10.31 (3일간)
- 본 조사 : 1990.11. 1 - 11.10 (10일간)

6. 調査方法

- 조사과정

- ① 준비조사기간중 조사원이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고 가구명부에 회수일자 표기
- ② 배부된 조사표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
- ③ 본 조사기간중 조사원에 의해 회수시기별로 조사표 회수
- ④ 회수된 조사표 내용을 현장에서 조사원이 검토한 후 책임있는 응답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 ⑤ 완성된 조사표 내용을 토대로 OMR 조사표에 이기
- ⑥ 이가된 내용을 내검요원이 재점검

- 동내검, 시내검, 도내검 구분 실시

- 동내검시 별도의 부호를 기입해야 하는 항목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1년전거주지, 5년전거주지, 통근·통학지)은 전문화된 이기요원이 기입
- 직업·산업은 중앙에서 전문화된 요원에 의해 부호를 기입

- 45개 항목 중 33개 항목은 전수조사, 12개 항목은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

7. 調査項目 : 45 개 항목

- 인구에 관한 항목 : 21 개 항목
- 주거에 관한 항목 : 24 개 항목
- 全數項目 (인구에 관한 항목 : 11 개, 주거에 관한 항목 22 개)
 - (1) 성 명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별 (4) 나 이
 - (5) 출생지 (6) 교육정도 (7) 통근·통학여부
 - (8)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9) 출발·도착시각 (10) 이용교통수단
 - (11) 혼인상태 (12) 거처의 종류 (13) 가구구분 (14) 점유형태
 - (15) 사용방수 (16) 식수의 종류 (17) 취사연료 (18) 난방시설
 - (19) 문화시설 및 가재 (20) 전용편의시설 (21) 외벽재료
 - (22) 지붕재료 (23) 연건평 (24) 대지면적 (25) 총방수
 - (26) 거주가구수 (27) 건축년도 (28) 부엌시설 (29) 화장실시설
 - (30) 목욕시설 (31) 상수도시설 (32) 편의시설수 (33) 거주가능가구수
- 標本項目 (인구에 관한 항목 10 개, 주거에 관한 항목 2 개)
 - (1) 1년전거주지 (2) 5년전거주지 (3) 경제활동상태 (4) 산 업
 - (5) 종사상의 지위 (6) 직 업 (7) 혼인연령 (8) 생존자녀수
 - (9) 사망자녀수 (10) 총출생 자녀수 (11) 임차료 (12) 한달평균 가구
소득규모

8. 동원인력 : 약 115,000 명

- 조사인력 : 약 114,000 명
 - 전수조사원 : 약 88,000 명
 - 표본 " : 약 19,000 명
- 107,000 명

- 지도원 : 약 7,000 명

- 지도인력

- 시도 및 산하기관 : 약 50,000 명

9. 홍 보

- 대국민 집중홍보기간 : '90.10. 1 - 11.10

- 중점홍보방법

- TV와 신문등 대중매체 적극활용
- 각종 게시판 홍보 및 특수 방송매체

10. 소요예산 : 21,146 백만원

- 조사원 및 지도원 수당 : 16,834 백만원 (80 %)
- 조사표 인쇄비 및 홍보비 : 3,006 " (14 %)
- 자료처리 및 기타 : 1,306 " (6 %)

11. 집계 및 공표

- 잠정보고 : '91. 3 월중에 지역별 인구·가구 및 주택수를 집계
- 2%속보보고 : '91.4 월중에 남녀별 연령별 인구를 집계
- 최종집계결과보고 : '91.12-'92.12 사이에 전수항목별 인구이동편 총산력
편 경제활동편등 단계별로 집계공표

Ⅱ . 추진과정 및 세부내용

1. 調査員 및 指導員의 採用과 敎育

1) 調査員 및 指導員의 採用

가) 採用 方法

(1) 公募方法에 의한 採用

-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 조사대상지역내 주요게시판

(2) 推薦에 의한 方法

- 조사지역내 구·시·군 공무원의
- 통·반장의 추천
- 관내 대학의 추천

나) 資格 要件

- (1) 18 세이상 50 세미만
- (2) 해당조사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3)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4)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식이 있는 사람

다) 適格對象者

- (1)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가족
- (2) 퇴직공무원 (경찰, 세무공무원제외)
- (3)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30 대 - 40 대의 여자통반장
- (4) 가정주부 또는 가사종사여성
- (5) 현지거주 여자 대학생

(6) 현지거주 남자 대학생

(7) 남자 통·반장

(8) 기타 통계조사 유경험자

라) 調査員 1人當 調査 業務量

(1) 전수조사구담당 : 2개 조사구 (평균 120가구)

(2) 표본조사구담당 : 1개 조사구 (평균 60가구)

마) 採用人員 : 859名

(1) 전수조사원 : 663명
(2) 표본조사원 : 144명 } 807명

(3) 지도원 : 52명

바) 採用期間 : 1990. 3.28 - 4.10 (14日間)

(1) 교육 : 1일
(2) 준비조사 : 3일
(3) 본조사 : 10일 } 14일

2) 調査員 教育

가) 基本方向

(1) 훈련내용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표준교육용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이용

(2) 조사원의 성실 근무 유도를 위한 정신교육내용 삽입

(3) 조사표 작성 연습시간 강화

(4) 우수교환 양성을 위한 교재로서 지도원 지침서를 제작

(5) 조사원 교육의 강사는 원칙적으로 시도 및 산하기관 공무원이 담당

나) 段階別 教育 方法

(1) 中央教官 要員

- 統計局內 職員中에서 選拔된 中央 教官 要員에 대한 教育

(2) 區市・洞 職員 教育

- 구・시의 통계담당계장 및 직원, 통장 및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조사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도청 회의실을 이용
- 중앙교관에 의해 실시

(3) 調査員 및 指導員 教育

- 중앙 직원 임석하에 시도 및 산하공무원이 강사가 되어 실시
- 교육시작부터 전수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원 및 표본조사원과 지도원 교육을 함께 실시
- 조사표작성 실습 및 표본조사 항목에 관한 교육을 전수 조사원과 표본 조사원을 구분하여 별도 장소에서 실시하되, 지도원을 표본조사원 교육에 참석
- 교육내용을 총조사의 중요성과 조사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 조사항목의 용어설명과 작성기준강의, 조사표작성 실습등 3가지 분야를 포괄

○ 표준 교육 시간

시 간	소요분	교 육 내 용
9:20 - 9:30	10 분	참석자 확인 및 서류 배포
9:30 - 9:50	20 분	개식 및 국민의례
10:00 - 10:05	5 분	조사원의 마음자세
10:05 - 10:10	5 분	조사개요 및 특징
10:10 - 10:15	5 분	조사원의 마음자세
10:15 - 10:40	25 분	조사대상 및 업무수행상 유의사항
10:40 - 10:50	10 분	조사표 기업 훈련
11:00 - 11:50	50 분	조사표 작성 방법 설명
13:00 - 13:50	50 분	보충설명 (전수조사원)
14:00 - 14:50	50 분	조사표 작성 및 평가와 기타
-		조사표류 작성 방법
13:00 - 13:50	50 분	표본항목 설명
14:00 - 14:50	50 분	표본항목 보충 설명
15:00 - 15:50	50 분	표본조사표 작성 및 평가
16:00 - 16:50	50 분	기타 조사표류 및 종합토의
총소요시간		
• 전수조사원	230 분	
• 표본조사원	330 분	

2. 實查 및 實查指導

1) 調査基準時點: 1990.4.1 0시 現在

2) 調査期間 및 實查指導期間

가) 준비조사기간: 1990.3.29 - 3.31 (3일간)

나) 본 조사 기간: 1990.4. 1 - 4.10 (10일간)

다) 실사지도기간: 1990.3.29 - 4.10 (13일간)

3) 基本 方向

가) 조사원에 의한 실사와 조사원 15명 단 1명의 지도원을 선정, 조사원 업무를 지도

나) 동, 구·시, 시·도 직원에 의한 조사원 및 지도원 활동상황 점검

다) 중앙의 기획요원과 실무자회의 참석 멤버에 의한 시험조사 전반에 걸친 점검

4) 調査員 및 指導員과 實查指導要員의 遂行 業務

가) 調査員의 遂行業務

(1) 準備調査

(가) 조사구 경계 확인

(나) 조사구 요구 작성

(다) 가구명부 작성

(라) 질문표 배부 및 부재가구수 파악

(마) 질문표 회수 및 회수시간 약속

(2) 本調査

(가) 질문표 회수

(나) 질문표 내용의 확인 및 부실기재사항 보완 질문

(다) 스티커 부착

(라) 부재가구에 대한 재확인

(마) 누락거처 및 가구 색출

(바) OMR조사표 작성 (이기요원 작성항목 제외)

나) 指導員의 遂行事項

(1) 準備調査

(가) 부재가구수 파악

(나) 조사구 경제 확인 지도

(다) 조사구 요도 작성 보완

(라) 누락가구 색출

(2) 本調査

(가) 회수질문표의 정리 및 부실내용 확인

(나) 부재가구의 질문표 작성

(다) 누락거처 및 누락가구 색출

(라) 전출 및 전입가구의 조사 여부 확인

(마) 조사진도가 부진한 조사원 지원

(바) 비협조가구에 대한 설득 및 보고

(사) OMR조사표 작성 확인

다) 市導 區市 및 洞 職員の 遂行事項

(1) 조사원의 직무수행 감독 및 신속한 대처방안

(2) 지도원의 활동사항 지원 및 문제점 해결

(3) 취약지역의 조사문제점 발굴

(4)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 수립 시행

(5) 조사계획의 현지조사상 문제점 발굴 및 대안 모색

(6) 대주민 홍보활동

라) 中央 職員의 遂行 事項

(1) 조사원, 지도원 및 시도와 산하공무원의 직무수행자세 점검 및 격려

(2) 조사계획상의 현지조사상 문제점 발굴 및 대안모색

(3) 주민홍보상의 문제점 및 효율적 대안 모색

5) 實查期間中の 調査員 管理

가) 管理 業務 內容

(1) 교육받은 조사원이 실제조사를 하고 있는지?

(2) 조사기간중 통계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

(3) 일정별 수행업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4) 조사표의 배부 및 회수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5) 조사표 회수시 부실기재 내용을 찾아 면접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6) 부재가구에 대해 지도원에게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

(7) 애경사, 와병등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사원이 발생되었는지?

(8)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조사하여 응답가구의 불만을 사는 일은 없는지?

(9) 가구방문시 응답가구와 불미스런 일은 없는지?

(10) 현장조사시 발생된 문제점을 조사원이 감추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11) 취약지 소재 가구 및 누락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조사는 적절히 하고 있는지?
- (12)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단체,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위한 언행이나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13) 조사결과 알게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지?
- (14) 기존의 기록에 의하여 탁상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지?
- (15) 책임있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지?
- (16)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를 지도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 (17) 조사원증을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지?

나) 管理 方法

- 1) 출퇴근 관리
- 2) 조사진도 파악 관리
- 3) 조사내용 및 조사표작성내용의 정확성 파악 관리
- 4) 현장조사상태 확인 (조사활동상태 또는 스티커부착상태)
- 5) 근무시간중의 조사원 및 지도원 거주 가구 또는 영업장 확인

다) 管理 責任

- 1) 지도원
- 2) 동읍면 및 구시군 직원
- 6) 調査員 및 指導員 意見 收斂

가) 目 的

(1) 조사원과 지도원 측면에서 현장조사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2)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나) 意見 收斂 方法：設問紙에 의한 意見 收斂

다) 主要 質問 分野

(1) 조사원 교육

(2) 조사구의 경계확인 및 담당업무량의 적정유무

(3) 부재가구의 조사상태

(4) 현장조사의 애로점

(5) 조사표

(6) 각종 조사관련 서식 및 용품

(7) 기타 사항

라) 意見 收斂 對象者：조사원, 지도원

마) 의견 수렴 일시：1990.4.10 오후 2시

바) 장 소：시청회의실

사) 설문지 양식：별첨

3. OMR 調査票 作成 및 內檢

1) 基本 方向

가) 일반항목은 조사원이 이기

나) 특정항목은 전문이기요원이 이기

※ 專門移記要員에 의한 符號移記의 必要性

제 2 차 및 3 차 시험조사 자료처리 결과 약 26 %에 가까운 부정확

한 이기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관계, 출생지를 질문표의 한 글내용을 별도의 부호책을 보고 이기해야 하는 항목에서 착오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전문이기요원을 양성하여 조사원에 의한 이기작업이 어려운 특정항목에 대한 이기작업을 함으로써 이기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

2) 對象 項目

가) 전수항목 :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나) 표본항목 : 1년전거주지, 5년전거주지

3) 業務 推進 過程

가) 조사원은 매일매일 동사무소에 출근하여 전 날 회수된 조사표를 지도원에게 제출

나) 제출한 매수만큼의 OMR 조사표를 동직원으로부터 수령받아 OMR 조사표를 작성

다) 작성된 OMR 조사표는 지도원 및 동 직원에게 제출

라) 동 직원 및 지도원은 작성된 OMR 조사표의 내용을 질문표와 대조하면서 기입내용을 점검

마)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익일 출근시 조사원에게 통보하여 수정보완토록 조치

바) 다만 OMR 조사표 작성시 전수조사항목인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출생지 ③ 통근(학)지 항목과 표본조사항목인 ① 1년전거주지 ② 5년전거주지 항목은 조사원이 아닌 전문이기요원에 의해 조사 완료후 4일간 집중 이기

사) 조사완료후 전문내검요원에 의해 조사표 전반에 걸친 기재 누락사항과 관련항목간의 불일치내용에 대한 내용검사를 실시

4) 移記要員 選拔

- 일 정 : 1990.4.1 - 4.10
- 선발기준 : 조사원 및 지도원중에서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동장이 선발

- ① 이기업무에 전념할 수 전념할 수 있는 자
- ②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20-40 대 가사종사자인 여성
- ③ 여자대학생

5) 移記要員 敎育 및 實習

- 일 정 : 4.11 오전
- 장 소 : 각 동사무소 또는 시·도청 지정장소
- 참석대상자 : 통계담당실무자 및 동지도원 및 이기요원
- 준비 상황 : 이기요령서

6) 移記 作業

- 일 정 : 4.11 - 4.14
- 장 소 : 각 동사무소 및 시청회의실

7) 現地에서의 調査票 內容 檢査

가) 內容 檢査의 必要性

- ① 조사의 완전성제고 :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표 매수 확인을 통해 조사의 중복·누락을 확인 보완
- ② 조사내용의 정확성, 자료처리의 시의성 확보 : 기입누락, 관련항목간의 불합리성을 찾아 현장에서 보완함으로써 조사 내용의 정확성

확보 및 자료처리기간의 단축도모

나) 重點內檢事項

- ① 질문표 내용의 항목별 응답 범위 Check
- ② 질문표 내용의 2 항목이상 연관 Check
- ③ OMR 조사표 훼손상태 점검
- ④ 질문표 내용의 이기정확성 점검

다) 作業 方法

- ① 각 항목별 응답 범위안에서 정확히 응답되었는가의 여부와
 - ② 2 항목 이상 연관시켜 관련항목응답이 정확히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 ③ 정확히 응답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표와 대조하여 이기 Error가 있다면 질문표 내용을 중심으로 OMR 조사표를 수정하고,
 - ④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내검시에는 구시내검시에는 시·도 직원이 현장을 방문, 책임있는 응답자를 통해 질문표 내용을 재작성한 후 OMR 조사표를 수정한다.
- 이때 착오 발생원인과 개선사항을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段階別 內檢

(가) 洞內檢: 자체내검을 실시한 후 구·시에 제출

- ① 내검요원선발: 우수조사원과 지도원을 활용 (500 가구당 1명
: 178명)

- ② 내검요원훈련: 4.12

○ 현지 내검요령서 사전 배부

③ 내검기간 : 4.12 - 4.14 (3 일간)

④ 내검중 작성사항 : 내검상황표 작성

(나) 區・市・郡 內檢

① 내검요원선발 : 동 내검요원과* 전문이기요원 및 지도원중에서 우수 인력선발 (평균 600 가구당 1명 : 148명)

② 내검기간 : 4.16 - 4.26 (11 일간)

③ 내검사항 : 전반적인 사항

④ 내검중 작성사항 : 내검상황표 작성

(다) 市・道 內檢

① 내검요원선발 : 구・시 내검요원 및 지도원중에서 우수인력선발
(평균 850 가구당 1명 : 96명)

② 내검기간 : 4.27 - 5. 7 (11 일간)

③ 내검사항 :

┌	OMR 조사표 훼손상태
	조사표 매수 확인
	Key 분류란 점검, 포장 및 발송

④ 내검중 작성사항 : 내검상황표 작성

4. 一般調査票 및 OMR 調査票의 保管管理, 包裝

1) 一般調査票의 保管管理 및 包裝

- 가구번호 순으로 하여 조사구 단위로 편철
- 전수와 표본조사표는 분리하여 편철
-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명과 실제조사표의 행정구역명이 일치하게

편철

-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명, 조사구번호 및 기타 관련사항을 기재
- 조사구 순서대로 보관관리

2) OMR 調査票 保管 管理

- 환경조건이 (특히, 온도, 습도) 급격히 변화하기 쉬운 장소 (예컨대,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통풍이 심한 장소 또는 난방장치의 부근)를 피한다.
- 조사표가 수평으로 되게 하고, 똑같은 압력이 걸리게 보관
- 조사표 가장자리가 손상이 되거나, 주름이 접히는 조사표가 없도록 관리
- 조사표 안에는 구멍 뚫림 (홀찌게스 사용)이 있어서는 안됨
- 클립, 호치키스등을 사용해서는 안됨
- 조사표에 셀룰로이드 테이프, 라벨, 풀 등을 사용되서는 안됨
- 먼지, 기름, 물방울 등의 부착에 의한 오염물 조사표의 오손이 없도록 한다.

3) OMR 調査票 包裝

- OMR 調査票 케이스 包裝
 - 조사표 수를 정확히 Counting 하여 조사구 및 가구번호순으로 모아서 밀봉용 비닐용지에 넣어서 Case를 포장
 - OMR 조사표 Case에 시·도, 구·시 명칭 및 Code 번호를 기입
 - Case 번호를 기입
- OMR 調査票 運搬用 BOX 包裝
 - 행정구역 및 조사표 케이스 번호순으로 6개의 케이스를 한 단위로 하여 운반용 BOX에 포장

- 운반용 BOX번호를 기입

5. 調査票類 接受

1) 基本方針

- 각 시도별로 접수일정에 의하여 접수
- 접수시 모든 접수내용은 각 시도에서 작성된 정리대장을 기초로 하여 확인 검토 접수
- 질문표와 OMR 조사표를 분리하여 접수
- 질문표는 조사구번호순으로 접수
- OMR조사표는 Case 번호순으로 접수
- 전수와 표본으로 분리하여 접수

2) 調査票類의 種類

- 일반조사표 (전수, 표본)
- OMR 조사표 (전수, 표본)
- 가구명부
- 정리대장
- 조사구역도
- 질의·응답내용 기재사항
- 현지 내검 상황표

3) 關聯資途 接受 日程：1990.5.8 - 5.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5.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5.9

6. 弘 報

1) 基本方向

시험조사 대상지역이 2,000 가구 - 3,000 가구에 해당하는 소규모지역인 점을 감안, 게시물 홍보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정매체만을 이용

2) 重點弘報方法

가) 동사무소 입간판

나) 시험조사에 즈음한 인사말씀 (조사표 표지에 인쇄되어 있음)

다) 마을 앰프방송 및 아파트 구내 방송

라) 반상회 홍보 (시험조사지역에 한정)

마) 통반장회의

바) 프랙카드, 현수막

3) 弘報方法別 細部內部

가) 동사무소 입간판

(1) 크기 : 2 절지 크기

(2) 內容

실시기관	주관기관	최종	1990 인
		시험	구주
		조	택
		사	총
		실시	조사
도원	경제기획원		

실시기간 : 1990.3.29 - 1990.4.10(13일간)

(3) 製作方法 : 각 시도에서 매직펜으로 써서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부착

(4) 所要枚數 : 20 매

나) 마을앰프放送 및 아파트 構內放送

(1) 放送시기 및 방법 : 동사무소 放送시설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放送시설을 이용하여 조사기간중 수시로 放送

(2) 放送문안 내용

우리동에서는 경제기획원의 주관하에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의 최종시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조사원증을 달고 있는 조사원이 귀택에 일반조사표를 배부하고 이를 회수하게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배부된 조사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셔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그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있사오니 안심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반상회 弘報

(1) 3월중 반상회보를 이용하여 최종시험조사가 실시됨을 지역주제로 선정하여 게재

(2) 게재내용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에 적극협조합시다.

- 우리시에서는 경제기획원의 주관하에 ○○○동을 선정하여 이 지역 내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1990 년 인구 주택 총조사의 최종 시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정부에서 인구 주택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각종 계획등을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서 200 억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총조사 사업이 한치의 빈틈없이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시범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 우리 모두 정부사업이 시행착오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시험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합시다.

라. 統班長 會議

동사무소에서 통반장회의를 통해 이번 시험조사의 내용과 협조사항을 동장이 직접 전달

마. 프랙카드·현수막

(1) 제작수량 : 동당 1개, 시구당 1개 (총 40개)

(2) 제작내용 및 크기

8 m

1 m 35 cm

주관 : 경제기획원

실시 : ○○○시

1990 년 인 구 주택 총조사 최종시험조사 실시

실시기간 : '90.3.29 - '90.4.10 (13 일간)

(3) 소요예산 : 1,900,000 원 (47,500 원 × 40 개)

Ⅲ．附　　錄

〔1〕 人口移動 및 通勤・通學調查關聯 資料

〔2〕 住宅 項目 關聯 資料

〔3〕 人口住宅 總調查에 대한 弘報用 解說資料

〔4〕 主要人口指標

〔1〕人口移動 및 通勤・通學 調査 關聯資料

I. 交通 및 人口移動調查의 國家的 必要性

1. 우리나라 交通問題

- 최근의 급속한 自動車臺數의 增加와 더불어 交通問題는 大都市에서 中小都市로, 都市內에서 市外周邊 地域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疏通難, 乘車難, 駐車難등의 交通問題는 全國的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 오늘날 交通問題는 住宅問題와 더불어 福祉國家 建設에의 重要難題로 대두되고 있으나, 交通問題解決의 실마리라 할 基礎調查資料가 충분히 構築되어 있지 못한 實定이다.
- 高速道路, 國道역시 飽和狀態로 交通체증이 심해 國民生活에 큰 不便을 주는 것은 물론, 이대로 방치할 경우 經濟活動에 막대한 支障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2. 交通調查의 一般內容

- 交通調查는 需要, 供給, 運用의 세가지 側面에서 接近되며, 이중 交通需要調查 즉, 사람과 화물의 通行實態調查는 交通計劃이나 政策을 樹立하고 交通改善方案을 講究하는데 가장 基本的인 調查이다.
- 供給側面에서의 調查는 道路 및 鐵道施設等の 施設容量을 對象으로 하며, 運用側面의 調查는 車輛交通量調查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이와 같은 供給과 運用側面의 調查는 關係機關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實施되고 있으나 가장 中要한 交通需要調查는 大規模 通行實態調查의 境遇 莫大한 費用과 時間이 所要되기 때문에 部分的인 通行實態調查의 研究機關에 의하여 短篇的으로 이루어져 왔다.

3. 通勤·通學 通行實態調查의 必要性

- 都市交通需要의 分析에는 貨物보다는 사람通行實態調查가 더욱 重要視 되고 있으며 사람通行은 通行目的에 따라 通勤·通學, 歸家, 業務, 其他通行으로 分類되며, 다시 그 利用交通手段에 따라 手段通行이 分析된다.

- 最近의 調査에 의하면 通勤・通學 通行은 全體사람通行의 35% 程度를 차지하므로, 出發・到着地를 驛으로 한 通勤・通學者의 歸家通行까지 包含하면, 通勤・通學의 通行實態調査로 把握이 可能한 交通需要는 全體의 約 70% 程度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比較的 적은 費用으로 높은 效果를 얻을 수 있음을 意味한다.
- 이에 따라 外國에서도 通勤・通學의 通行實態調査 項目이 총조사 調査項目에 包含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年 총조사에 大都市圈에 대하여 實施한바 있고, 1987年 常住人口調査時 首都圈에 대하여 添附調査로 交通開發研究院이 關係機關의 協助로 遂行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通勤・通學의 通行實態調査의 國家的 必要性을 整理하면 크게 다음의 5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 (1) 交通政策 및 交通計劃樹立의 基礎資料確保
 - (2) 交通改善方案에의 活用(電鐵網構想, 市內・外 버스路線改編, 道路網擴充)
 - (3) 都市政策의 基礎資料活用(把握된 晝間人口에 의한 都市施設 供給水準決定, 食糧등 생필품 供給水準 決定等)
 - (4) 交通問題에 대한 政府의 關心도와 改善意志를 國民에게 弘報하는 效果
 - (5) 費用과 時間의 節約이라는 國家經濟的 利益
- 특히 (5)항의 國家經濟的 利益은 通行實態를 個別調査로 遂行할 境遇에는 막대한 費用과 時間이 所要될뿐 아니라, 地域範圍가 廣域일 境遇에는 거의 調査가 不可能하므로, 國家經濟의 總體的 利益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총조사에 通勤・通學調査項目의 包含時에도 적지 않은 追加費用이 發生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追後 資料의 使用料徵收方案이 講究되어 질 수 있다. 【 交通開發研究院, 常住人口調査와 關聯한 交通調査事業, 海外類似調査事業 P138, 參照 】

4. 人口移動 調査의 必要性

○ 60年代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이에 따른 産業化過程은 必然的으로 國內移動方向의 흐름 특히, 離農向市型 人口移動을 激化시켜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인한 都市化를 加速化하는 동시에 人口의 地域의 不均衡을 招來하였다. 統計中 가장 程度가 높고 廣範圍한 國家 基本統計으로써 폭넓은 可用領域을 지니고 있는 총조사에 適用하여 移動의 類型을 分析하기 위하여 各 市道 또는 都市·農村間의 移動量을 算出하고 移動의 方向을 深層分析 및 社會·人間學的 特性和 差別移動, 産業 및 雇傭에 관한 特性 比較 分析등 여러 側面에서 政府의 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로 玆받침될 수 있다.

○ 人口移動의 直接的 方法으로써 出生地에 의한 推計, 以前居住地에 의한 推計, 特定期間前의 居住地에 의한 推計方法이 있는데 이중 出生地에 의한 推計方法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使用되어온 方法으로 간단히 말해 出生地와 現居住地를 比較함으로써 移動人口를 가려내는 方法이며, 이때의 移動人口를 특히 "出生地 移動人口"(Life Time Migrants)라 한다. 이 方法이 특히 널리 使用되어온 理由는 出生地에 관한 質疑는 간단하고 또한 분명하며 쉽게 正確한 應答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總조사와 같은 廣大한 調査에서 調査對象者를 일일이 面接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사람이면 능히 代理應答이 可能한 事項이므로 이런점에서 總조사와 같은 廣大한 調査에 適合한 方法으로 간주된다.

○ 特定期間前의 居住地에 의한 推計方法에 의한 것은 "1年, 2年, 혹은 5年 등의 一定期間 以前에 어느곳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물어 便利하고 利用價値있는 資料를 마련 할 수 있다. 즉 一定期間 以前의 居住地와 現居住地를 比較함으로써 그期間 동안의 移動狀態를 알아내는 方法이다. 이 期間동안 死亡한 사람은 調査되지 않으므로 自然히 이 方法에 의한 推計된 人口移動 중에는 "移動人口로서 그동안 死亡한 사람"이 빠져 있다. 또한 이 期間中 일차 다른地域으로 이사했다가 이 期間이 끝나기 以前에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도

移動人口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期間中에 出生한 新生아들은 이 期間 以前居住가 있을 수 없으므로 移動狀態를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 出生地와 같은 補助項目을 使用함으로써 이런 缺陷을 補充 할 수 있다 이 方法과 "以前居住와 居住期間을 함께 調査하는 方法"은 매우 類似하나 본 方法에 있었던 出生地가 단순한 以前居住가 아니라 어떤 特定 期間以前에 살고 있던 곳이 되며 이期間 중의 제2, 제3의 移動은 無視된다.

이 두方法의 共通點은 이 特定期間(Migration Interval)과 居住期間(A Duration Interval)이 一致하는 경우 비슷한 資料를 算出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特定 期間을 5年으로 定했을때 만일 居住期間이 "5年 및 그以下"로 分類된 資料들이면 서로 상당히 근사한 資料가 될것이다. 이때 理論上 바로 위에서 말한 두 方法上的 差異點 만큼의 差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 方法을 總조사에서 使用한는 경우 이 特定期間을 어떻게 定해 주는나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널리 使用되는 期間은 "5年" 과 "1年"이다.

總조사를 每5年 週期로 實施하는 國家에서는 被調査者가 전회 總조사당시의 자기 居住地를 記憶할 수 있다. 短期間 즉 "1年"은 總조사隔年間の 人口移動 推計以外에 總조사 年齡分布로 부터 地域別 生命標를 作成할 것인가의 與否에 따라 考慮할 수 있는 또 한가지 方法이다.

따라서, 特定期間은 總移動數를

충분히 把握할 수 있을 만큼 짧아야 할 것이며, 또 期間이 충분히 길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移動人口를 把握하는데 어느 정도 忌避要素(Chance Variation)를 除去하고 意味있는 移動類型을 얻기 위해서는 比較的 安定性있는 移動件數가 累積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要件들과 均衡이 있고 또 記憶力 年齡階級과의 一致性, 死亡에 의한 影響등을 綜合할 때, 이 特性期間을 要件으로 하는 것이 가장 適合할 텐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特定期間이 1年前, 5年前 居住地 項目으로 믿어지는 바이다.

Ⅱ. 交通 및 人口移動 關聯 調査項目

1. 通行實態調査의 項目比較

- 원래 家口通行實態調査는 調査項目이 많으며 設問內容이 複雜하다. 반면에, 通勤·通學調査는 調査項目을 最小化, 單純化 시켰다고 볼 수 있다.
- 家口通行實態調査와 通勤·通學調査의 項目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區 分	家口通行 實態調査 (交通開發研究員)	通勤·通學調査 (總 調 査)
(1) 家口에 관한 事項	○ 家口員數 ○ 家口의 月平均所得 ○ 自動車 保有臺數	○ 家口員數 (他項目利用)
(2) 家口員에 관한 事項	○ 家口員의 性別, 年齡, 職業等 ○ 調査基準日의 通行與否 ○ 非通行時 그 思惟	○ 家口員의 性別, 年齡 職業(他項目利用) ○ 평소의 通勤·通學 與否
(3) 通行者에 관한 事項	○ 1日 通行回收와 그過程 ○ 通行目的, 出發到着時刻 出發·到着地, 通行手段	○ 平소의 通勤·通學 與否 ○ 出發時刻의 午前 出發時刻의 午後 到着時刻 到着地, 利用交通手段

2. 通勤・通學調查의 項目別 目的 및 必要性

項 目	調 查 內 用	目 的 및 必 要 性
通勤・通學與否	平常時 通勤・通學의 通行與否	○ 地域別 通勤・通學을 分析 - 地域別 通學人口의 把握으로 學校配置計劃에 利用可能 ○ 地域別 交通需要 發生分析 - 버스投入臺數決定 等 交通政策에 活用
職場 또는 學校	○ 현재 살고 있는 洞邑面 ○ 다른 洞邑面의 경우 市道, 區市郡, 洞邑面 名이나 職場 또는 學教(院)名	○ 地域內 通勤・通學의 通行比率 分析 ○ 通勤・通學의 出發地・到着時刻 分析 - 交通政策 및 計劃의 基礎資料 - 交通需要把握으로 버스路線 개편, 道路網擴充等 交通政策 立案資料로 活用 ○ 通勤・通學의 到着地 分析 - 交通以外에 都市政策이나 計劃에 活用可能
出發・到着時刻	○ 出發時刻의 午前 ○ 出發時刻의 午後 ○ 到着時刻(時, 分)	○ 尖頭時 集中率 分析 - 大衆交通供給水準(버스投入臺數等)의 決定 ○ 地域間 時刻距離 分析 - 地域間 所要時刻은 交通計劃이 基礎資料로 活用
利用 交通 手段	○ 市內 버스등 10個手段 ○ 利用手段의 全部表示	○ 交通手段 利用率 및 換乘實態 分析 - 交通政策의 基礎資料로 특히 大衆交通政策에 活用

3. 人口移動 項目別 目的 및 必要性

項 目	調 查 內 容	目 的 및 必 要 性
1年前居住地	1 年前 ('89. 4. 1) 當時의 居住地	○ 基本項目 比較 ○ 産業 職業別 比較 - 85 - 90年 사이 移動特性을 把握 - 地域別 1 年前 移動
5年前居住地	5 年前 ('85. 4. 1) 當時의 居住地	① 1985-1990年을 中心으로 前記한 各 時期間의 새 移動의 量 ② 人口 移動의 市·道別 및 市·郡別 方向 ③ 移動者의 性別·年齡分別 特性等 - 地域別 人口移動量의 變化 - 時期別 人口移動類型의 變化 - 이러한 變化의 移動者 特性과의 關聯等を 各 時期別 觀察 ④ 基本項目 및 職業産業別
出生地	出生 당시 어머니 常住地 把握	① "出生地"資料에 의한 推計 - 出生地와 現居住地를 比較함 으로써 人口移動 把握 - 年齡, 現居住地 및 出生地別 移動人口 - 必須 基本項目

Ⅲ. 調査項目

1. 人口移動의 要因과 그 對策

○ 人口移動은 크게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과 國際間的 勞動力移動을 들 수 있는데, 그 主要 理由는 새居住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보다 높은 賃金を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移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移動人口들은 非移住者들에 비해서 젊은 年齡層이며 (15歲에서 35歲), 教育水準이 높고, 보다 기꺼이 危險負擔을 甘受하려고 하며, 자신들의 獨立性을 확립하고자 하는 意慾, 人口移動에 의해 주어지는 機會들을 최대한 活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移住者들은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먼저의 移住者들과 같은 地域으로 移住者를 選擇하려는 傾向이 있으며, 都市나 外國으로 부터의 대중 전달매체는 역시 人口移動을 刺戟시키며, 時間과 費用을 減少시켜주는 근대적인 交通手段들도 한 要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移住者들은 非熟練 分野의 일자리라 할지라도 移住를 통해서 전보다는 많은 돈을 벌고 出産力도 農村地域의 大家族 特性에 따른 높은 出産力 수준으로 부터 都市 居住人들과 거의 같은 정도의 낮은 水準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都市化와 서울 및 首都圈 地域의 人口 集中 現象으로 인한 社會·經濟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는 農村地域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農村 生活을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農村開發計劃과 都市地域에서의 住宅 建築과 就業에 대한 制限, 産業體와 勞動者들을 小都市로 이동시키기 위한 오인책 등은 쓸 수 있다. 따라서, 人口移動은 國土均衡開發, 地域社會開發, 大都市의 人口分散등 綜合적인 人口 再分布政策과 밀접한 關係性을 지니는 資料로서 社會 開發의 重要機能의 하나로서, 先進社會의 질질한 人口分布 및 資源開發은 人口移動의 잠재적인 힘에 의하여 많은 影響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政策立案資料로 하여금 人口의 再分布計劃을 樹立할 수 있도록 人口移動의 方向, 移動量등에 대한 經濟·社會 또는 心理의인 측면을 分析할 수 있는 資料收集이 先行되어야하고 나아가서는 人口移動의 原因과 結果에 관한 社會·經濟的 또는 社會心理的인 일을 再認識하므로서 效果的인 人口分析策을 獨立하기 위한 基本資料가 提供되어야 할 측면에서 全國的 資料가 필요하다.

2. 人口移動 調查項目의 補完調整

人口移動 關聯 項目은 1, 2, 3次 시험調查를 거치는 동안 補完·調整하였으며, 交通關聯項目은 交通開發研究員에서 協助要請한 1990年 總調查의 交通調查項目과 김천시의 示範調查票를 根據로 補完·調整한 調查項目은 다음과 같다.

出 生 地	1 年 前 居 住 地	5 年 前 居 住 地
出生地는 어디입니까? 出生當時의 어머니 常住地를 基準으로 記載 하여 주십시오 ※ 출생지가 ㉔ 다른 區市郡일 경우에는 出生當時 그 곳의 行政區域名을 記載 하여 주십시오. ※ 북한의 경우에는 出生當時의 行政區域名을 記載 하고 外國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國名을 記載 하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 年前 (89. 4.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 1년전 거주지가 ㉔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1年前 그 곳의 行政區域名을 記載하여 주십시오 外國일 경우 그 나라 이름을 記載하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 年前 (84. 4.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 5年前 居住地가 ㉔ 다른 區市郡일 경우에는 5年前 그 곳의 行政區域名을 記載하여 주시고 外國일 경우 그 나라 이름을 記載하여 주십시오.
⑤	⑥	⑦
㉑ 현재 살고 있는 집 ㉒ 현재 살고 있는 區市郡 ㉓ 다른 區市郡 _____ 市道(國) _____ 구 시 군	㉑ 현재 살고 있는 집 ㉒ 현재 살고 있는 區市郡 ㉓ 다른 區市郡 _____ 市道(國) _____ 구 시 군	㉑ 현재 살고 있는 집 ㉒ 현재 살고 있는 區市郡 ㉓ 다른 區市郡 _____ 市道(國) _____ 구 시 군

參考事項으로서 人口移動과 出産力關係를 살펴보면 農村地域의 出産力은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면서, 都市 地域의 出産力보다 대체로 높다. 대체로, 農村地域에서 도시로 移動한 移住者의 出産力水準은 農村과 都市水準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移動 人口의 出産力이 본래부터 都市에 거주하던 사람들 만큼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153,157,342,501,542,674,694,702) 相對的으로 낮은 出産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說明이 提案되고 있다.

- 선택성 : 移住者들은 그들이 移住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본래 살던 農村이 다른 사람들보다 出産力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기 選擇性을 가진 集團이다. 이것은 移住者들이 기꺼이 이주하려고 생각한대거나 또 小規模의 家族을 원하는 것은 모두 傳統的이라기 보다는 좀더 近代의 傾向을 反映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적응성 : 移住後에 移住者들은 재빨리 새로운 環境에 적응하여 都市的인 生活 태도를 받아들이고 行動하게 되는데 이에는 都市에 居住하는 사람들의 생활 樣式中的 하나이며 都市 生活을 維持하기에 적절한 낮은 출산을 유지하는 태도등이 포함된다. (215,342,385,501)
- 단절성 : 人口移動 그 자체는 結論을 遲延시키고, 配偶者와의 別居를 強要한다든가 즉각적인 妊娠의 욕망을 減少시키고 再生産 體制의 機能을 瓦解시킬 수도 있는 점진적인 압박감을 만들어 냄으로서 出産力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도 모른다. (211,212,215,661,702)

3. 交通關聯 調查項目의 補完調整

通勤・通學 與否	職場 또는 學校(院) 住 所	出發・到着時刻	利用 交通 手段
평소 집에서 職場 또는 學校(院)등으로 通勤・通學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다니는 경우에도 通勤・通學에 포함됩니다. * (2)안한다에 해당되시는 분은 ⑩에서 ⑫까지 『\』을 그어 주십시오.	하고 있다면 職場 또는 學校(院)은 어느곳에 있습니까? * ⑫다른 洞邑面으로 通勤・通學을 하는 경우 다른 洞邑面住所를 정확히 기하시고 모를 경우 職場 또는 學校(원) 이름이나 유명한 건물 또는 特徵 있는 場所를 記載 하여 주십시오.	평소 집에서 出發하는 時刻과 職場 또는 學校(院)에 到着하는 時刻은 몇 時 몇 分입니까?	평소 집에서 출발할때에 利用하는 교통수단 은 무엇입니까? * 通勤・通學時에 2種以上の 交通手段을 갈아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모두 0 表 하여 주십시오. * (9)徒歩는 걸어서 通勤・通學하는 경우에만 表示 하여 주십시오.
⑨	⑩	⑪	⑫
① 한 다. ② 안한다.	① 현재 살고 있는 洞邑面 ② 다른 洞邑面 ——市 道 ——區市郡 ——洞邑面 職場 學校, ——主要 건물명	① 집에서 出發한 時刻 午前——時 ——分 午後——時 ——分 ② 職場 또는 學校(院)에 到着時刻 ——時 ——分	① 市内 버스 ② 座席 버스 ③ 市外 버스 ④ 通勤, 通學 其他 버스 ⑤ 電鐵, 地下鐵, 汽車 ⑥ 택 시 ⑦ 乘用車, 轎차 ⑧ 자전거 ⑨ 도 보 ⑩ 其他 交通手段

4. 交通關聯 調查資料의 活用分野

(資料의 特性)

- 通勤(學) 調查資料는 우리나라 全 地域 通行量을 把握할 수 있으므로 首都圈 交通問題는 물론, 地方據點都市를 中心으로 한 交通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資料이다.

(分析項目別 活用分野)

- 本 資料를 利用한 活用分野는 다음과 같다.

(1) 晝間人口 - 상업施設의 配置

- 食糧등 생필품 需要와 供給 (예: 서울시 1일 쌀消費量決定)
- 社會福祉 및 醫療施設 供給決定

(2) 時刻臺別 通勤·通學者數 - 出勤時差制

- 時刻臺別 버스運行臺數의 決定

(3) 交通手段別 分擔率 - 輸送分擔率에 따른 交通手段供給

- 基準決定 (例: 尖頭時나 非尖頭時 電鐵, 버스臺數)

(4) 還乘通行量 - 電鐵과의 連繫輸送 體系 樹立

- 座席버스 路線 增設
- 市外버스의 市內運行路線의 延長

(5) 衛星都市 交通問題 - 衛星都市의 大衆交通路線網 決定

- 衛星都市의 直行버스 投入
- (例: 부천시에서 여의도로 直行)

(6) 驛出勤地域 - 首都圈 直行버스 運行 檢討

- (例: 구로구 → 안산시 直行)

(7) 地域間 通行量 - 首都圈 廣域電鐵網과 市外直行버스 供給決定

(細部活用分野 豫示)

○ 本資料를 利用하여 가장 큰 效果를 얻을 수 있는 分野

(1) 서울시 市內버스 路線 改編

- 必要性 : 서울은 都心再開發, 大規模 住居團地 建設路 空間構造가 변화였으며, 이에 따라 通行實態도 크게 바뀌었으나 버스路線은 勁直되어 있다.

- 資料利用 : 따라서 本調査資料를 利用하여 버스路線을 合理化시키고 效率의 으로 調整할 수 있다.

(2) 새로운 交通手段의 開發

- 首都圈 直行버스 (區市郡 間 直行運行)

(例: 서울의 主要區에 小規模 버스터미널 設置)

(例: 구로구 → 안산시 通行量 1日 2,310名)

(3) 廣域電鐵網의 擴充計劃 (서울외곽순환선, 안산우회선, 수원-용인선)

(4) 道路網 整備 建設 計劃 (例: 파주, 고양-인천-화성-안산의 서해안 道路網 構築 形成必要)

〔 2 〕 住宅項目 關聯資料

I. 概要

人間生活에 있어서 居住場所란 꼭 必要하며 近間에 와서는 住宅을 居住하는 場所으로써 뿐만 아니라 財産增殖手段 내지 財力을 가늠하는 所有의 概念이 높은 現實이다

住宅總調査의 目的은 무엇보다 現在의 住宅數와 補給率 및 住居에 關한 諸般 生活實態를 보다 正確히 調査함에 있으므로, 그 結果를 國民에게 알리고 住居와 關聯된 國民生活 水準을 올바르게 把握하여 政策立案에도 소중한 資料가 되도록 勞力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住宅關聯 調査項目 調査時 指導員은 다음의 調査原則을 알아야 한다.

- ① 거처별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국민주거생활수준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③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하며 원천적으로 용어정의가 어려운 항목은 가급적 배제한다.
- ④ 과거 총조사 조사항목과 비교검토가 가능해야 한다.
- ⑤ UN 및 ESCAP 권고항목등 외국 센서스 항목과 비교검토가 가능해야 한다.
- ⑥ 결과치가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⑦ 국제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 ⑧ 시계열(time series)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II. 住宅關聯項目 內譯

※ 住居에 關한 事項(모든 家口)

- (1) 居處의 種類
- (2) 家口區分
- (3) 占有形態

*(23) 賃借料 (標本調査區의 모든 家口)

- (4) 使用房數
- (5) 食水의 種類
- (6) 炊事燃料
- (7) 煖房施設
- (8) 文化施設 및 家財
- (9) 專用施設
- (10) 부속施設
- (11) 化粧室施設
- (12) 沐浴施設
- (13) 上水道施設

* (24) 한달平均 所得規模 (標本調査區의 모든家口)

※ 住宅에 關한 事項 (住宅의 主家口)

- (14) 外壁材料
- (15) 지붕材料
- (16) 延建坪
- (17) 垜地面積
- (18) 總房數
- (19) 居住家口數
- (20) 建築年度
- (21) 便益施設數
- (22) 居住可能 家口數

Ⅲ. 各 項 目 的 調 査 基 準 및 用 語 定 義

가. 모든 家 口

(1) - (13)항목은 모든가구에 질문하며,

*(23), *(24)항목은 표본조사구의 모든가구에 질문한다.

(1) 居 處 的 種 類

◆ 住 宅

※ 住宅의 定義

한 家口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住居用 空間으로서 다음의 要件을 갖춘
單獨住宅, 아파트, 聯立住宅, 非 居住用 建物內의 住宅을 말한다.

첫째: 永久建物

둘째: 한箇 以上の 房과 부속

셋째: 獨立된 出入口

네째: 慣習上 所有 또는 賣買의 1單位

① 단독주택: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② 아파트: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상의 영구건물
토끼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적으로 살수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상가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③ 연립주택: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주택으로써 다만 건물의 높이
가 3층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3층의 빌라, 맨션등은 여기에 해
당된다.)

④ 다세대주택:

⑤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사업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
람이 살고 있는경우에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
면 이에 해당된다.

◆ 住宅以外の 居處

- ⑥ 여관방등 숙박업소의 객실: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단, 주인가구가 여관등 숙박업소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부분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해당되며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여관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및 대사찰등과 같이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 ⑧ 임시막사: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를 말한다.
- ⑨ 사무실 겸용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 ⑩ 기타: 천막집, 판자집, 움막, 암자등과 같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2) 家口區分

- ① 주가구: 주택에서 주인된 가구를 말하며, 한주택에 한가구가 사는 경우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가구로 본다. 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있을 경우에는 주인가구가 주가구이나 주인가구가 없이 2가구 이상이 세들어 살고있는 경우 그중 안방을 쓰고있는 가구가 주가가 된다.
- ② 동거가구: 주가구 이외의 가구를 말한다.
- ③ 집단가구: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등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6인이상이 함께 살고있는 경우 이를 집단가구라 한다.

(3) 占有形態

- ① 자기집: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한다.
- ② 전세: 전세로 세들어 살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월세(사글세):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매월 보증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사글세를 말한다
- ⑤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23) 賃借料 (標本調査區의 모든家口)

- 주택의 점유형태중 남의집에 전세, 보증부월세 및 월세를 들어 살고있을 경우 전세와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입한다.
- 사글세를 들어 살고있는 경우에는 한달분의 월세를 기입한다.

(4) 使用房數

-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 등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있고 천정의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가 3.3m² (1평)이상인 居住用空間을 말한다.
- 현대식 주택의 주방겸 식당도 방으로 본다.
-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이 실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하여 방으로 보며 단순히 물건만을 쌓아두고 있을때는 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5) 食水의 種類

- 거처내의 식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가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식수를 말한다.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④ 수동펌프 ⑤ 우물 ⑥ 기타

(6) 炊事燃料

- 음식을 조리할때 사용하는 연료를 말하며 두가지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를 말한다.

(7) 暖房施設

- 주택의 모든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시설을 말한다.
- 거주용 부속건물(사랑채 등)이 있어 주거물의 난방시설과 다를 때에는 주거물의 난방시설을 가리킨다.
- 중앙난방보일러란 아파트단지등 여러주택이 공동으로 난방을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 한가구의 난방시설이 두가지 이상일 때에는 주된 난방시설을 말한다.

(8) 文化施設 및 家財

-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더 나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나,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갖춘 시설 내지 가재도구를 말한다.
-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탈수만을 하는 탈수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교환전화도 전화기에 포함된다.
-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9) 專用施設

- 주택내에 살고있는 모든가구가 전용의 부엌, 화장실,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위한 항목이다.
- 부엌, 화장실 및 출입구를 각 가구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며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시설이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 출입구시설의 전용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른가구(주인가구 또는 다른 동거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여 출입할수도 있고, 또한 외부에서도 직접 출입할수 있으나 출입문이 임시적인 경우는 이를 전용출입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 출입구로 본다.
- 2층집의 경우 2층에 하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외부에서 다른가구의 주거부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입할수 있는 층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있는(실내계단 등을 통과하는) 출입구는 전용출입구로 보지 않는다.

(10) - (13) 施設形態

- 주택의 각가구 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유무와 그 설치상태를 말한다.

(10) 부엌施設: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입식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을 말하며 채래식은 싱크대가 없이 설겅이 등을 앉아서 하는 부엌을 말한다.

(11) 化粧室施設: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수세식 이라고 하고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 시설을 재래식 이라 한다.

(12) 沐浴施設: 목욕시설에는 온수시설의 유무를 알기위한 항목이다.

(13) 上水道施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 취수된 물을 정수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각 가정에 공급하고 수도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24) 한달平均 所得規模 (標本調査區의 모든家口)

- 지난 1년간의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 세금, 연금, 저축액등은 공제되기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소득, 이전소득,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등이 모두 포함된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2개사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소득을 포함한다.
- 연금수령액의 경우는 생활비로 충당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본다.
- 임대소득이 현물일 경우에는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 복권당첨금등 비 정상적인 소득은 생활비에 충당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본다.
- 재산(토지, 가옥, 그림, 골동품, 고서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자기집소유자의 경우는 자기집중 세를내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월세로 놓을 경우의 시장가격을 소득과 지출(생활비) 모두에 포함한다.
- 지난 1년동안 발생한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은 생활비에 충당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수입금중 저축, 빌려준 돈, 재산구입비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신규취업자의 취업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住宅의 主家口

(14) - (22)항목은 주택의주가구에 질문한다.

(14) 外壁材料: 주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는 건축재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① 나무: 기둥이 나무로 되어있는 집을 말한다.
- ② 적벽돌, 돌: 구운벽돌(적색, 흙색), 오지벽돌(적색, 흙색)이나 돌을 주로 사용해서 벽을 쌓아올린 집을 말한다.
- ③ 시멘트제품: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을 주로 사용해서 벽을 쌓아올린 집을 말한다.
- ④ 철근콘크리트: 벽이 적벽돌, 타일, 시멘트몰탈 여부를 불문하고 기둥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집을 말한다.
- ⑤ 흙, 흙벽돌: 흙이나 흙벽돌을 사용하여 쌓아올린 집을 말한다.
- ⑥ 기타: 이상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외벽재료를 말한다.

(15) 지붕材料: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건축재료를 기준으로 하며,
주건물의 지붕재료를 말한다.

① 기와: 기와 또는 시멘트기와를 주로 사용하여 지붕을 덮은집을 말한다.
단, 슬라브 위에 기와로 덮은 집은 슬라브지붕으로 간주한다.

② 슬레이트: 슬레이트를 주로 사용하여 지붕을 덮은집 이다.

③ 슬라브(슬라브기와): 평슬라브 또는 경슬라브를 불문하며, 슬라브위에
기와를 덮은집을 포함한다.

④ 함석: 지붕이 함석으로 된 집을 말한다.

⑤ 짚, 갈대: 초가집과 같이 짚, 갈대 등으로 이은집을 말한다.

⑥ 기타: 이상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지붕재료를 말한다.

(16) 延建坪, (17) 垆地面積

-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조사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차고등
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대지면적은 터밭을 제외한, 담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담내의 정원등도
포함된다. 농촌주택에서 가끔 발견되는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집은 등기상의
대지면적 또는 주거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의 경우, 건평과 대지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조사한다.

(18) 總房數, (19) 居住 家口數

- 방이란 침실, 거실, 서재, 식당방, 응접실과 같이 사면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다락방은 사람이 자는 경우에는 총방수에 포함

된다. 따라서 총방수란 주가구가 사용하든, 동거가구가 사용하든 주택내에 있는 방의 총수를 말한다.

- 다만,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탕, 화장실, 점포, 사무실 등은 총방수에서 제외한다.
- 거주 가구수라 함은 주가구 또는 주인가구를 포함해서 주택내에 살고있는 가구의 총수를 말한다.

(20) 建築年度

- 주택이 지어진 년도를 말한다.
- 아파트인 경우는 동일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같은동내에 모든가구의 건축 시기는 같다.
- 신축시기를 말하나 개축 또는 증축 부분이 건물의 1/2이상일 경우에는 개축 또는 증축시기를 건축시기로 본다.
- 수차년도에 걸쳐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신축시기를 말한다.

(21) 便益施設數

- 편의시설수는 동거가구가 사용하는것을 포함하여 부엌, 화장실, 출입구가 각각 몇개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 편의시설수의 조사는 단독주택내에 실제 거주가능한 가구수를 알기위해 유용하다.

(22) 居住可能家口數

- 거주가능가구수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수있도록 지어졌는지를 알기위한 항목이다.

〔3〕人口住宅 總調査에 대한 弘報用 解説資料

目 次

1. 人口住宅總調查란?	59
2. 왜 必要한가?	61
3. 調査對象은?	65
4. 무엇을 調査하나?	67
5. 이번 總調査의 特徵은?	69
6. 調査方法은?	72
7. 調査資料의 公表는?	74
8. 어디에 活用되나?	75
9. 個人の 秘密은 保障되나?	79

1. 人口住宅總調查란 ?

- 總調查란 ?

- 나라의 各種 政策이나 長・短期計劃 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 一定 時點을 定하여
 - 統一된 基準에 따라
 - 調査對象의 總數와 그 個別的 特性을
 - 일일이 調査하는
 - 全國的 規模의 統計調査를 일컫는 말입니다.

- 이번에 實施되는 人口住宅總調查는 1985年 이어 5年만에 實施되는 것으로서

- 統計作成의 責任機關인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 오는 11月1日 0時를 基準으로 實施되는데
- 우리나라의 행정권이 배치는 전 영역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이름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에 대해 총수는 물론 그 개별 특성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 실제조사는 10月29日부터 3日동안의 準備調査를 거쳐
- 11月1日부터 10日동안 全國적으로 일제히 實施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 調査는

- 不過 열흘동안의 짧은 期間內에
- 全國의 모든 人口와 住宅을 對象으로 實施되는 방대한 調査이므로
- 實際調査는 地方機關인 各 市·道와 그 傘下機關에서 遂行하게 됩니다.

2. 왜 必要한가?

- 한 가정을 幸福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自己家族의 식구수와 性格을 잘 把握하여 合理的인 生活設計를 마련한 다음 이를 確實히 履行하는 努力이 必要하듯이, 政府에서도 國民의 安定된 삶과 幸福한 生活을 보장하기 위해 各種 政策이나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推進하는데에는 國家의 構成員인 國民의 總數와 그 特性을 正確하게 把握한 資料가 꼭 必要합니다.
- 그런데 한 家庭의 식구수나 家族들의 性格은 바로 알수 있지만 나라의 構成員인 國民의 總數와 그 特性을 正確하게 알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 한 나라의 總人口와 그 特性을 把握할 수 있는 方法을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住民登錄簿上的의 人口를 그대로 集計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그러나 住民登錄簿의 人口는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制約點이 있어 人口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없습니다.
 - 住民登錄人口는 洞·邑·面의 實際居住人口를 正確하게 反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 주위에서는 農村地域 居住者가 住民登錄은 그대로 둔채 都市地域으로 옮겨가는 경우, 職場이나 學校 關係로 住民登錄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

는 사람들을 혼하게 發見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轉出入申告가 제때에 正確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轉出申告는 하였으나 轉入申告는 되지 않는 人口(約 40 萬名 정도로 推計) 때문에 人口數에서 實際居住人口와 住民登錄上の 人口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住民登錄人口는 人口의 여러가지 特性을 正確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年齡의 경우를 보면 住民登錄簿에는 戶籍上の 年齡이 記入되고 있는데 實際出生보다 늦게 申告되었거나 陰曆으로 申告가 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集計하게 되면 實際上の 年齡別 人口와는 자연히 큰 差異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陰曆으로 申告된 경우에는 2~3 年만에 한번씩 들어 있는 윤달이 區分되지 않고 있어 이해의 人口가 다른해의 人口에 비하여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 또한 學歷의 경우를 보더라도 住民登錄簿에는 처음 作成할 때의 學歷만이 記錄되고 있어 學生과 같이 學歷上の 變動이 있는 사람의 學歷이 틀려지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住民登錄簿에는 人口의 特性을 把握할 수 있는 項目이 극히 制限되어 있어 여러가지 細密한 分析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常住人口調査資料를 活用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 그러나 常住人口調査는 各 市道가 主管이 되어 行政目的上 必要로 하는 地域別 人口 및 家口數에 관한 資料만을 生産해 내고 있으며
- 또한 調査方法에 있어서도 一般 行政業務를 遂行하면서 同時に 人口調査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國家政策이나 長・短期計劃의 基礎資料로서의 活用이나 細部分析을 위한 研究資料로서의 使用이 어려운 實情입니다.

- 이러한 次元에서

- 人口總調査는,
막대한 豫算과 調査人力을 動員하여 科學的인 調査方法에 의해 地域別 人口와 家口數는 물론 그 個別的 特性까지도 면밀히 調査하여 常住人口調査나 住民登錄 資料만으로 把握하기 어려운 廣範圍한 內容을 正確하게 蒐集하기 위한 것이며
- 住宅總調査는,
우리 生活의 根據가 되는 住宅의 現況, 즉 住宅의 總

數와 種類 및 餘他 特性들을 正確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結局 人口住宅總調査는

政府가 國民의 福祉向上과 國力伸張을 위한 各種 政策을
樹立・執行하는데 必須基本資料인 國民의 總數와 그 個別
特性 그리고 이들의 將來 變化를 豫測하고 아울러 國民
들의 住民生活 狀態를 正確하고 廣範圍하게 把握하기 위
해 반드시 必要한 國家基本 統計調査입니다.

3 . 調查對象은 ?

- 人口總調查에서는

- 調查基準日인 11月1日 0時 現在
- 大韓民國의 行政權이 미치는 全 領域內에
- 常住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調查對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外國에서 就業하고 있거나 留學 中에 있는 사람과
 - 우리나라에 居住하고 있는 外國人중 外交官 및 外國 軍人과 그 家族들은 이 調查에서 除外됩니다.
- 당연한 얘기지만, 11月1日 0時 現在 人口를 調查하 므로
 - 11月1日 0時 以後에 태어난 사람과
 - 11月1日 0時 以前에 死亡한 사람은 包含시켜서는 안됩니다.

- 住宅總調查에서는,

- 사람들이 잠을 자고 食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지어 놓은 모든 建物を 調查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 調査對象이 되는 建物の 種類로는 單獨住宅, 아파트, 聯立住宅, 多世帶住宅, 非居住用 建物內的 住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천막집이나 움집과 같은 住宅以外的 居處가 있습니다.
- 다만, 사람이 居住하고 있는 建物이라 할지라도
 - 軍隊의 兵營 막사나 矯導所, 警察署 등 施設內的 막사와
 - 駐韓 外國大使館 또는 外國軍隊의 兵營內에 있는 住宅은 除外됩니다.

4. 무엇을 調査하나?

- 이번 總調査에서는

- 人口에 대해 모두 21個의 細部事項을,
- 住居에 관해서는 24個의 事項을 調査합니다.

- 人口에 관한 21個의 調査項目은

- ① 姓名 ② 家口主와의 關係 ③ 性別 ④ 年齡
- ⑤ 教育程度 ⑥ 婚姻狀態 ⑦ 出生地 ⑧ 1年前居住地
- ⑨ 5年前居住地 ⑩ 通勤(學) 與否
- ⑪ 職場 또는 學校住所 ⑫ 出發 到着 時刻
- ⑬ 利用交通手段 ⑭ 經濟活動狀態 ⑮ 職業
- ⑯ 從事上の 地位 ⑰ 産業 ⑱ 婚姻年齡 ⑲ 生存子女數
- ⑳ 死亡子女數 ㉑ 總出生兒數

- 住居에 관한 24個 調査項目은

- ① 居處의 種類 ② 主家口 與否 ③ 占有形態
- ④ 賃借料 ⑤ 使用房數 ⑥ 使用 食水 ⑦ 炊事燃料
- ⑧ 煖房施設 ⑨ 文化施設 및 家財
- ⑩ 專用 便益施設 有無 ⑪ 月平均 所得 規模
- ⑫ 外壁材料 ⑬ 지붕材料 ⑭ 延建坪 ⑮ 垜地面積
- ⑯ 總房數 ⑰ 居住家口數 ⑱ 建築時期 ⑲ 부속施設

⑳ 화장실施設 ㉑ 沐浴施設 ㉒ 上水道施設

㉓ 便益施設數 ㉔ 居住可能家口數

5. 이번 總調查의 特徵은 ?

- 이번 總調查는 10年週期の 定規 總調查인 점을 감안하여 過去의 總調查 項目을 모두 受容하되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가장 重要的 是題인 階層間 葛藤問題와 大都市 交通問題 그리고 住居의 不安定問題를 統計的 側面에서 積極 支援하기 위한 調查項目을 選定한 점입니다.
- 所得關聯項目으로는 家口의 月平均所得規模를 把握하게 되고
- 大都市 交通政策 및 研究資料는 물론 意域交通行政의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項目으로는 ① 通勤(學)與否 ② 通勤(學)地 ③ 出發到着 時刻 ④ 利用交通手段의 4가지 項目이 있고
- 住居의 安定問題와 관련된 項目은 住宅의 賃借類型과 賃借料 및 한 住宅에 여러家口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多家口 居住可能 住宅項目이 選定되었습니다.
- 이를 項目은
 - 지금까지 住宅이 居住機能보다는 財産增殖의 手段으로 認識되어 不動產 投機등 社會・經濟的 弊害가 많았기 때문에

- 政府에서는 이러한 점을 勘案하여 多家口居住住宅의 新築을 勸奨하고 있는등
 - 住宅政策을 居住機能 中心으로 轉換하고 있어 이에 必要한 基礎資料의 提供을 위한 것입니다.
- 두번째 특징은 調査結果를 보다 빨리 集計하기 爲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光感應判讀 技法을 導入한 점입니다.
- 지금까지 調査票內容을 打字式方法에 依해 컴퓨터에 入力해 왔으나
 - 컴퓨터에 入力하는 時間만도 1年이 所要되었으며
 - 打字過程에서 誤打 또는 打字 누락등의 事例가 發生되어 이를 고치는데도 많은 人力이 所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打字方式에 의한 入力하는 裝置인 光感應判讀機 2台를 導入하였습니다.
- 세번째 特徵은 應答者가 스스로 調査票를 作成하는 自記式 調査方法을 採擇하였는데
- 이는 女性の 經濟活動參加가 많아진데 따른 變遷이 夫婦等 晝間에 집을 비우는 家口가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 家庭을 對象으로 한 各種犯罪發生으로 인해 門을 열
어주지 않은 경향이 많아 調査員이 直接訪問하여 調
査하는 面接調査만으로는 正確한 調査를 할 수 없는
反面에
- 國民의 敎育程度와 意識水準의 向上으로 多數의 國民
들이 總調査의 調査票 作成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試驗調査의 結果를 考慮하여 決定한 것입니다.

6. 調査方法은 ?

- 이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人口와 住宅을 11月 1日 부터 11月 10日까지의 짧은 期間안에 빠짐없이 調査해야 하므로 무려 11만 4천명이나 되는 調査員을 動員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들 調査員의 業務를 고루 配分하고 擔當區域을 明確하게 해주기 위하여
 - 各 洞·邑·面別로 作成된 精密한 地圖를 토대로 全國을 約 20萬個의 調査區로 分割하였으며,
 - 이들 調査區의 90%에 該當하는 調査區(全數項目 調査區)에 居住하는 家口에 대해서는 33個의 調査項目을 質問하게 되며, 나머지 10%에 該當하는 調査區에 居住하는 家口에 대해서는 45個의 調査項目을 質問하게 됩니다.
 - 全數項目 調査區를 擔當하는 調査員은 2個 調査區(120 家口)를 擔當하며, 標本項目 調査區를 擔當하는 調査員은 1個 調査區(60 家口)를 擔當합니다.
- 그리고 調査를 보다 正確하게 하기 위하여
 - 10月 29日부터 10月 31日까지 자기가 맡아서 調査해

야할 調査區內的 家口數와 住宅數를 미리 把握하고 調査票를 各 家口에 配付하는데 이 期間을 準備調査 期間이라 하며 이와같은 準備調査가 完了되면

- 11月1일부터 11月10일까지 10日間 實際調査를 實施하게 되는데
- 이 期間에는 자기가 맡은 調査區內的 家口를 일일이 訪問하여 調査票를 回收하고 調査票內容을 檢討하여, 記入 누락과 錯誤記入等이 發見되면 이들 項目에 대한 補完을 爲해 面接調査를 하여 調査票를 完成하게 됩니다.
- 調査가 모두 完了되면 完成된 調査票를 洞·邑·面에 提出하게 되고
- 洞·邑·面에서는 이를 合 整理하여 區·市·郡과 市·道를 거쳐 經濟企劃院에 提出하게 됩니다.
- 經濟企劃院에서는 全國에서 蒐集된 調査票를 즉시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集計하게 됩니다.

7. 調査資料의 公表는 ?

- 이번 總 調査는 1人當 45個項目, 全國的으로는 約 10億의 項目이 되어 이를 集計하는데도 많은 時間에 所要합니다. 이에 따라 調査결과보다 빨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政府는 光感應判讀機와 最新型 컴퓨터까지 導入하여 資料處理時間을 最大限 短縮할 計劃입니다.
- 本 調査資料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迅速히 提供하기 위하여 最終報告書 發刊에 앞서 暫定報告書와 速報報告書を 發刊할 豫定인 바,
 - 暫定報告書는 地域別 人口數 및 家口數, 性別人口와 地域別 住宅數등 基本資料만을 收錄하여 '91年3月까지,
 - 그리고 速報報告書는 全體 調査票의 2%程度를 標本으로 抽出하여 地域別 男女別・年斷別人口와 通勤學, 人口移動 및 住居實態등 主要項目에 관한 資料를 收錄 '91年4月까지 發刊할 豫定입니다.
- 全數 調査項目을 集計한 報告書는 '92年3월에 發刊할 豫定이며 標本調査項目에 대한 最終報告書는 '92年6월 까지 人口移動・出產力分野, '92年12月까지 經濟活動 分野로 區分하여 發刊할 豫定입니다.

8. 어디에 活用되나?

- 人口 住宅 總調査 資料는,
 - 政府가 國家 및 地域社會의 經濟·社會·保健·教育·人力開發·住宅 등 各 分野에 있어서의 政策立案과 綜合計劃樹立 및 이의 評價를 위해 活用할 뿐 아니라
 - 企業의 販賣計劃, 工場立地選定 등에도 利用되며,
 - 學術研究와 國際間的 比較資料로서도 貴重하게 利用되고 있습니다.
 - 또한 수 많은 標本調査의 母集團資料로 活用될 뿐 아니라 1990 年을 살고 있는 우리國民의 總數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歴史的 기록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優先 人口총조사의 年齡別 資料는 將來의 人口를 豫測하고 人口計劃을 樹立하는데 貴중한 資料로 利用되고 있습니다.
 - 지난 '62 年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成功的 遂行과 더불어 家族計劃事業을 大的으로 推進한 結果 人口增加率은 1%以下 水準으로 낮아졌으며,

- 지난 '85 年의 人口 센서스結果를 土臺로 推計한 바에 의하면, 10 年 後인 2000 年에 人口增加率은 0.75 %水準에 到達하게 되고, 人口는 約 4 千 7 百萬으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人口問題는 總 規模나 增加率의 問題에서 人口資質과 健康 그리고 老齡人口의 問題로 轉換되어야 할 實情에 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 나라의 人口規模와 特性의 變化는 長期間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므로 人口總調査를 통해 正確한 人口를 把握하여 事前에 緻密한 對應策을 樹立하고 持續的인 努力을 기울여 實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人口總調査에서 나타나게 되는 學齡別 人口數는 教育投資計劃에 緊要하게 活用됩니다.
- 人口總調査의 年齡別 人口를 土臺로 하면 國民學校入學年齡인 만 5 歲 人口와 中學校 入學年齡인 만 11 歲 人口 등 各級學校의 入學年齡 人口가 現在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豫測할 수 있습니다.
- 現在 우리나라는 아직도 學級當 學生數가 大都市의 경우 53 名 水準으로 過密現象을 보이고 있는 바 學級當 學生數를 줄이는데 所要되는 豫算과 各級 學校 敎員을

養成하는 教育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地域別 學齡人口의 變化를 正確히 豫測할 必要가 있습니다.

- 最近 交通問題 特히 大都市 交通問題는 住宅問題와 함께 가장 時急히 解決해야 할 重点課題인데 이번 人口 總調査에서는 交通對策을 爲한 基礎資料를 生産하게 됩니다.
 - 交通問題의 解決은 엄청난 豫算과 資金이 投入되는 만큼 이러한 예산과 資金의 浪費없이 效率的인 政策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우선 通勤・通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交通手段을 利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出發地와 到着地는 어디이며 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분야의 자료가 부분적으로 把握되는데 그쳤으나 이번 總調査에서는 이 분야의 資料를 全數調査할 豫定으로 있어 交通對策 樹立에 緊要하게 活用될 것입니다.
- 人口資料는 食糧需給計劃에도 緊要하게 活用됩니다.
 - 사람이 生存하는데 있어서 必須的으로 所要되는 食糧의 需要와 供給을 豫測하고 이에 관한 適切한 對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도 農水產 統計資料와 함께 人口資料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人口가 곧 食糧消費의 主

體가 되기 때문입니다.

- 人口總調查에서 얻어지는 各種 資料는 食糧의 所要量을 把握하고 農村人口의 減少趨勢와 家族構成狀態를 알려주고 있어 農業政策은 물론 食糧需給對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緊要한 資料로 쓰여 집니다.
- 人口住宅總調查 資料는 住宅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基本的인 資料로 活用됩니다.
- 이번 總調查에서 住宅의 種類別, 延建坪 및 便益施設을 調査함과 同時에 하나의 單獨住宅에서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建築되어진 多家口居住住宅을 把握하여 住宅政策을 樹立하는데 基礎的인 資料로 活用될 것입니다.

9. 個人的 秘密은 保障되나?

- 이 총조사에서 調査하는 모든 事項은 오직 나라살림 設計에 必要한 統計資料로만 使用되며 個人이나 個人이 從事하는 事業體 등에 關한 어떤 事項도 그 秘密이 반드시 保障되도록 法으로 엄격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 우 선
 - 調査員을 選拔할 때는 洞·邑·面 事務所에서 管內에 居住하고 있는분 중에서 身分이 確實하고 德望이 있는 분을 選任하도록 하고 있으며,
 - 調査員 敎育時에는 調査하는 過程에서 알게 되는 個人的 秘密을 保障하기 爲해 이에 關한 宣誓를 書面과 口頭로 하게 한 연후에 비로서 家庭을 訪問하도록 措置하고 있습니다.
- 또한 調査員의 身分을 確實히 하여 應答하시는 분이 安心하고 對答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家庭訪問時 調査員은 반드시 그 身分을 證明하는 마크를 가슴에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洞·邑·面에서 個人的 調査內容을 토대로 한 税金의 賦課 等 어떠한 行政處分도 할 수 없도록

- 調査票 原本을 經濟企劃院에 送付하되
- 調査票를 복사하는 등의 方法으로 個人에 關한 記錄을 一切 保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調査對象者의 이름은 아예 컴퓨터에 入力시키지 않고 調査項目은 모두 숫자 또는 符號化하여 入力함으로써 資料가 일단 컴퓨터에 入力되면 特定 個人에 關한 記錄은 알 수 없게 됩니다.
- 調査票 原本은 컴퓨터에 資料가 入力된 後에는 모두廢棄하게 되며 어떤 特定個人과 關聯된 모든 資料는 以後 完全히 消滅되어 버리게 됩니다.
- 끝으로 만약 調査員 또는 關係公務員이 個人에 關한 調査事項을 漏泄하였을 경우에는 統計法에 의해 1年 以下の 懲役に 該當되는 처벌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4〕主要人口指標

	1960	1970	1980	1990	2000	2020	1985 - 1990		
							世 界	先 進 國	開 途 國
總 人 口 (千名)	25,012	32,241	38,124	42,793	46,828	50,193	5292178	1205193	4086985
粗出生率 (千名當)	-	32.1	23.4	16.39	14.66	10.75	27.1	14.6	30.9
粗死亡率 (千名當)	-	9.4	6.7	5.80	6.31	10.02	9.9	9.8	9.9
移 民 率 (千名當)	-	-	1.0	0.9	0.8	0.7	-	-	-
人口增加率 (%)	2.97	2.27	1.57	0.97	0.75	0.0	1.72	0.48	2.10
年增加人口 (千名)	753	642	599	414	352	0	90,762	6,038	84,724
人口密度 (名/㎢)	254	328	385	431	472	506	39	21	52
合計出生力 (名)	6.0	4.2	2.8	1.70	1.70	1.70	3.44	1.90	3.92
平均壽命	55.3	63.2	65.8	71.2			61.5	73.4	59.7
男子(年)	53.0	59.8	62.7	67.3			60.0	69.8	58.6
女子(年)	57.8	66.7	69.1	75.4			63.0	77.2	61.0
人口構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2.3	42.1	34.0	25.9	21.6	16.5	32.4	21.4	35.6
15-64(%)	54.8	54.6	62.2	69.4	72.0	72.1	61.4	66.5	60.0
65+(%)	2.9	3.4	3.8	4.7	6.4	11.5	6.2	12.1	4.4
平均年齡 (歲)	-	23.6	26.0	29.4	32.6	39.2	24.2	33.7	22.0
都市化率 (%)	28.0	41.1	57.3	74.0	80.6	-	42.7	72.7	33.9

	出 生	死 亡	增加人口
年 增加人口	701,240	248,257	414,183
月 "	58,437	20,688	34,515
日 "	1,921	650	1,135
發生 間隔(秒)	44.97	127.03	76.14

3-20

1990年 人口 住宅 總調查
最終試驗調查結果

1990. 6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目 次

I. 實施 概要	1
II. 市道別 實施 結果	5
1. 서울특별시	5
2. 부산직할시	10
3. 대구직할시	14
4. 인천직할시	16
5. 광주직할시	22
6. 대전직할시	26
7. 경 기 도	29
8. 강 원 도	35
9. 충청북도	38
10. 충청남도	45
11. 전라북도	50
12. 전라남도	55
13. 경상북도	60
14. 경상남도	67
15. 제 주 도	73

I. 實施概要

1. 目的

- 가. 人口 住宅 總調查의 實施機關 擔當者인 市道統計擔當者와 傘下機關 公務員에 대한 實際 調查經驗 賦與
- 나. 調查項目 및 調查票設計에 관한 最終 現地適用 試驗機會로 活用
- 다. 그동안의 試驗調查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是正補完하기 위하여 樹立된 對應方法에 대한 現地效果 測定
- 라. 現地 調查過程에서의 重點施行項目(地方組織, 調查員採用·訓練, 地方公務員動員, 實查指導, 弘報)에 대한 市道の 對應能力 點檢

2. 試驗調查 項目 및 調查票

- 가. 試驗調查項目 : 45個(細部項目은 別添 調查票 參照)

- [全數調查項目 : 33個
 - 標本調查項目 : 12個

- 나. 調查票 樣式

- [一般調查票 : 別添 調查票 參照
 - OMR 調查票 : 別添 調查票 參照

3. 調查基準日 및 調查期間

- 가. 調查基準日時 : 1990. 4. 1 0 時 現在
- 나. 準備 調查 : 1990. 3. 29 - 3. 31 (3日間)
- 다. 本 調 查 : 1990. 4. 1 - 4. 10 (10日間)
- 라. 洞·區市·市道內檢 : 1990. 4. 11 - 5. 7 (21日間)
 - 洞 內 檢 : 4. 11 - 4. 14 (4日間)
 - 區市內檢 : 4. 16 - 4. 26 (10日間)
 - 市道內檢 : 4. 27 - 5. 7 (7日間)
- 마. 調查票 提出 : 1990. 5. 8 - 5. 9

4. 業務推進過程

- 가. 15個 市道에서 各各 1個 乃至 3個의 洞(15,000名 人口規模로서 加급적 多樣한 特性을 갖고 있는 洞)을 選定
- 나. 選定된 洞에서 10%의 標本調査區와 나머지 90%의 全數調査區를 選定
- 다. 公募, 推薦 等の 方法에 의해 優秀調査員 選拔指針에 의한 調査員을 採用
- 라. 標本調査區 擔當 調査員은 1個 調査區, 全數調査區 調査員은 2個 調査區를 擔當
- 마. 標本調査員은 5 時間, 全數調査員은 3 時間의 講義와 別途의 實習期間을 통한 教育을 實施(標本 및 全數 調査員 모두 1日間 教育 實施)
- 바. 準備調査 시작전 1주일 전부터 對國民弘報 實施
- 사. 調査員은 準備調査期間 中 擔當區域 確認과 調査區 要圖 및 家口名簿作成과 調査票 配付 等の 業務를 遂行하고 本調査 期間 中에는 ①調査票 回收 및 記載 內容 確認과 不實記載 補完을 위한 面接調査實施 ②作成된 調査票는 每日 每日 洞 事務所에 提出함과 동시에 洞 事務所에서 OMR調査票에 移記 ③調査完了 家口の 出入口에 스티커를 附着
- 아. 準備調査 및 本調査 期間中 調査員 15명당 1명의 指導員을 選定, 이들에 의해 不在家口の 調査票 作成 및 非協助 家口에 대한 調査支援 業務遂行
- 市道·區市郡 職員에 의한 調査員 및 洞事務所 業務推進過程 독려
 - 中央職員, 幹部에 의한 市道 및 傘下機關과 洞 事務所 業務推進過程 巡視 및 指導
- 자. 調査가 完了된 調査票는 1주일 동안에 걸쳐 洞事務所에서 專門移記要員과 內檢要員에 의해 OMR 調査票의 全 項目 作成
- 차. 區·市廳에서 洞全體 調査票에 대한 全般的인 內檢을 1주일 동안 實施
- 카. 市·道廳에서 5일 동안에 걸쳐 全體 調査票에 대한 枚數確認, GI Code確認 調査票 毀損狀態 등을 點檢한 후 박스에 包裝하여 發送

4. 試驗調查 對象地域

가. 市道別 對象規模

市 道	地 域 名	特 性	家 口 數	調 查 區 數 (標 本)	調 查 員 數 (標 本)	指 導 員 數
全 國	20個 洞		88,404	1470(144)	807(144)	52
서 울	計		10,735	180(16)	98(16)	6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시장지역	3,674	61(5)	33(5)	2
	송파구 잠실3동	APT지역	3,241	55(5)	30(5)	2
	영등포구 영등포3동	주택상가지역	3,820	64(6)	35(6)	2
	計		9,228	157(15)	86(15)	6
釜 山	남구 수영동	상가, 유흥가, APT	5,781	97(9)	53(9)	4
	동래구 연상3동	상가, 유흥가, 주택가	3,447	60(6)	33(6)	2
	計		9,228	157(15)	86(15)	6
大 邱	동구 신암3동	동대구역주변	5,452	91(9)	50(9)	3
仁 川	남구 주안7동	시장, 영세민	5,159	88(8)	48(8)	3
光 州	동구 학운동	관광지, 주택	2,885	35(3)	19(3)	1
大 田	동구 신암동	단독 주택지	1,639	27(3)	15(3)	1
京 畿	計		11,194	186(18)	102(18)	7
	송탄시 중상동	상가, APT	3,379	56(6)	31(6)	2
	부천시 역곡3동	시장, APT	7,815	130(12)	71(12)	5
江 原	춘천시 효자2동	APT,상가,공장	5,364	88(8)	48(8)	3
忠 北	충주시 교현1동	상가, 연립	5,349	89(9)	49(9)	3
忠 南	온양시 온양1동	상가, 유흥가	3,445	58(6)	32(6)	2
全 北	이리시 창안동	"	1,818	30(4)	17(4)	1
全 南	목포시 동명동	상가, 공장	5,197	90(10)	50(10)	3
慶 北	포항시 죽도2동	상가, APT	8,186	138(14)	76(14)	5
慶 南	計		10,241	171(17)	94(17)	6
	울산시 중구 태화동	농업, 상가	4,650	78(8)	43(8)	3
	" 남구 신정2동	상가, APT	5,591	93(9)	51(9)	3
濟 州	제주시 일도1동	상가	2,512	42(4)	23(4)	2

나. 地域 選定 基準

- 1) 商街, 住宅地域, 工場地域, 遊興街, 地域 等 가급적 다양한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
- 2) '89年 常住人口 調査時 人口가 激増하거나 激減한 地域
- 3) 現地 調査上 어려움이 많이 發生할 수 있는 地域을 優先 選定
- 4) 따라서 앞 페이지의 市道別 對象規模에 表記된 洞數에 따라 많은 洞을 選定해야 할 필요가 있을 境遇에는 家口數 및 調査區數와 調査員數의 범위안에서 必要한 洞을 選定
- 5) 그러나 일단 選定된 洞은 管内의 全 家口를 調査할 수 있도록 배려

Ⅱ. 시도별 실시결과

1. 서울특별시

가. 집계결과

○ 인 구

행정구역	총 계			한 국 인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창 천 동	11,749	5,881	5,860	11,704	5,847	5,860	45	34	11
영등포 3동	12,152	6,092	6,060	12,152	6,092	6,060	-	-	-
잠실7동	12,344	5,897	6,447	12,335	5,891	6,444	9	6	3
계	36,245	17,870	18,375	36,191	17,830	18,361	54	40	14

○ 가 구

행정구역	계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
창 천 동	3,395	3,331	43	21
영등포 3동	3,543	3,514	29	-
잠실7동	3,134	3,131	-	3
계	10,072	9,976	72	24

○ 주 택

행정구역	계	단독주택수	아파트수	연립주택수	다세대 주택수	비거주용건 물내의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수
창 천 동	1,542	1,363	-	50	-	118	11
영등포 3동	2,121	1,134	918	8	1	56	4
잠실7동	3,198	-	3,198	-	-	-	-
계	6,861	2,497	4,116	58	1	174	15

나. 단계별 업무내용 및 문제점

업 무 명	문 제 점	대 책
1. 대상동 선정 ○ 선정기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인구 모 10,000-15,000명 규모의 동 ○ 선정동 - 서대문구 창천동 - 영등포구 영등포3동 - 송파구 잠실7동	○ 구 및 시협의에 의한 지정으로 선정된 동의 능동적 업무수행 태세 결여	
2. 조사 실시 지침 ○ '90.3.19 접수 ○ '90.3.23 자체계획 수립 시달	○ 시간적 여유부족으로 중앙시행지침의 단순집행에 불과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3. 조사원 확보 ○ 조사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동단위로 확보 구청장이 임명(소요조사원 100명)	○ 유능한 조사원 확보 곤란 - 임금(수당)이 낮음 - 동에서 일시에 많은 조사원 확보에 애로	○ 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자원봉사자 형식의 조사원 확보 방안 강구 ○ 조사기간을 늘려 실질적 수당 인상
4. 조사원 교육 ○ 구 담당계장에 의한 동별, 전달 교육 실시 ○ 교육자료 : 요령서 및 관련 유인물	○ 전문교관이 아닌 담당계장의 전달교육으로 교육효과에 의문 ○ 요령서 및 유인물에 의한 교육으로 현실감각 없음	○ 교육전담자 육성 교육전담자 확보 별도교육 실시 ○ 시청각 및 현장교육 실시로 사례중심 교육 실시
5. 준비조사 ○ 조사구 경계확인 및 요도작성 ○ 가구명부 작성 및 대상가구 파악 ○ 부제가구 파악	○ 조사구 경계확인 및 요도작성에 동직원 협조 필요	

업 무 명	문 제 점	대 책
6. 본조사 ○자계식 및 타계식 병행 ○질문표 회수,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스티커 부착 ○OMR 조사표 작성	○1일 평균 12~15가구 조사와 OMR 조사표 이기로 조사원 업무과다 ○자계식에 의한 조사표회수를 저조 및 기재상태 부실 ○비협조가구 조사 곤란 ○스티커 부착에 따른 민원 야기	○조사기간 연장 또는 OMR 조사표 이기 전 담요원 지원 ○조사의 중요성 및 조사표작성방법 홍보로 주민의 자율협조 유도 - 매스컴을 통한 홍보 - 10월 반상회시 조사내용 및 조사표 작성요령 홍보 - 스티커 부착 방법 계검토
7. 실사지도 및 조사원 관리 ○상급기관에 의한 실사지도 - 구, 시 및 중앙 ○지도원 및 동직원에 의한 관리 - 출근상태, 진도 등	○중앙, 시, 구의 중첩 실사 지도로 업무지장 초래 ○실사지도요원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지도를 하지 못함	○중앙, 시, 구의 협의를 통한 시차적 지도 실시 ○실사지도 및 독려반 편성 및 지도요원 확보
8. 조사표 내용 검토 ○단계별 내용검토 실시 - 1단계 : 동자체 실시 - 2단계 : 구 실시 - 3단계 : 시 실시 ※ 내검 및 집계요원 지원	○전문내검 요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실있는 내검실시에 지장	○동 및 구자체 책임으로 내검 실시 - 내검 및 집계요원 충분히 지원 - 내검요령서 강화
9. OMR 조사표 이기 ○OMR 이기요원에 의한 이기 (전수 3항목, 표본 2항목) ○조사원에 의한 이기	○조사원에 의한 OMR 조사표 이기는 조사원의 업무 부담가중 초래 ○나이가 많은 조사원은 OMR 작성 경험 부족으로 정확한 이기에 애로	○모든 항목을 전문이기 요원을 선발하여 이기

업 무 명	문 제 점	대 책
10. 홍보 ○ 입간판 설치 ○ 프랑카드 게재 ○ 반상회보 발행	○ 시험조사인 관계로 국지적인 홍보에 그쳐 조사대상가구의 자발적인 협조유도에 애로	○ 본조사시에는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이고 입체적인 홍보시 많은 효과가 기대됨

다. 지역특성상 문제점

1) 아파트 지역(송파구 잠실 7동)

○ 현 황

아시안게임 등 선수촌 아파트로 중산층 이상 거주지(25~66평)

○ 문 제 점

- 현지 거주조사원 선발 곤란
- 통·반장 협조 얻기가 어려움
- 맞벌이 가구 등 낮동안 부재가구가 많음
-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표본조사 내용에 강한 불만
- 대지면적 항목은 조사가 어려움

○ 대 책

-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한 자계식 조사 협조 유도
- 재산세 과세대장 참고

2) 시장, 주택지역(서대문구 창천동)

○ 현 황

- 신촌시장을 낀 상가밀집 지역
- 연대앞 하숙촌 지역

○ 문 제 점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조사원 확보 곤란(통·반장 생업에 종사)
- 상가내 거주가구 파악에 어려움
- 주민 대다수가 상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방문시간 선정 에로
- 하숙생 면접조사 곤란 및 누락 우려

○ 대 책

- 총방수에 의한 하숙생 추적 조사
- 시장내 번영회를 통한 홍보

라. 기 타.

1) 조 사 표

- (9) 출발, 도착시각 조사항목중 "도착시각"을 "목적지 도착시각"으로 변경
- (23) 임차료란을 억단위까지 확대
- 아파트 및 연립지역은 (17) 대지면적 조사에 어려움

2) 내검요령서와 조사표의 상이에 따른 혼동

- 조사표의 주택관련 사항에는 10~13 항목을 주거구에서만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나 내검요령서에는 동거 가구에서도 조사토록 명시

2. 부산직할시

가.重點推進事項

(1) 調查員 採用

○ 適格要件者 中

[管内居住 男女大學卒業者
自生團體 會員中 婦女會員
前職公務員 또는 그 家族

○ 募集方法 : 統班長 및 洞職員 推薦

(2) 準備調查

○ 調查區 要圖 및 家口名簿 作成

準備調查 期間中 動員指導 및 教育

[見本 및 作成要約書 記載
調查員 別途教育(:90.3.30. 2個洞)

○ 洞職員 擔當個別 要圖作成 支給

(3) 實地調查

(가) 調查區 管理

○ 洞職員 擔當統 責任地域別 運營

職員 1名當 4~5個 調查區 實際 管理

○ 洞長, 事務長 管内 巡察, 調查員 隘路事項 現地 解決

(나) 不在家口 調查

○ 不在家口 많은 零細民 地域

管内居住 調查員 配置로 早朝, 夜間訪問 重點 調查

○ 長期不在 家口 및 最終까지 不在인 家口

洞長, 事務長이 直接 同居家口, 統班長, 親戚 等 追跡調查

○ 職場訪問

家口訪問調查 不可者는 勤務職場 訪問調查

(다) 非協助家口 調査

- 調査員 數次訪問 設得調査
- 說得不可家口 洞長이 說得 調査

(라) 調査員 活動 督勵

- 狀況板 製作 備置
 - 洞別 調査區 現況 및 日字別 推進現況
 - 調査員別 進度狀況

(마) 調査員 支援

- 産業 및 職業 分類表 作成配付 - 標本調査員 15名
- 區管内 學校 所在地 住所錄 作成配付 - 全調査員 92名

(4) 弘 報

가. 洞長人事文 製作 配付

- 家口別 調査票外 同時配付(10,500枚)
- 民願窓口に 備置, 來訪民願人 協助 當付

나. 有線放送 字幕活用(새마을 指導者 經營): 定期放送

다. 班常會 弘報 : '90. 3. 26

라. 民防衛 等 各種行事時 弘報

- '90. 3. 29 : 地域別 民防衛 召集教育
- '90. 4. 3 : '90 新規 編成 隊員 教育

나. 實施結果

項 目	問 題 點	今 後 對 策
1. 調查員 採用	○ 調查員教育中 大學生 一部 (6名)拋棄함에 따라서 婦女 會員으로 代替 ○ 統班長 調查員의 固定觀念으로 不在家口 處理 未熟 및 現地調查 疏忽 ○ 管内 非居住 調查員의 夜間 早朝訪問 調查 困難	○ 管内 居住 大學生 優先採用 (4學年 및 卒業者 優先採用) ○ 豫備 調查員 確保 ○ 統班長 調查員 採用 抑制 ○ 誠實한 家庭主婦 採用 ○ 再教育 및 內檢 徹底 ○ 管内 非居住 大學生 採用 禁止 ○ 晝間 不在家口가 많은 地域은 管内居住 調查員 投入
2. 教 育	○ 調查要領 未熟으로 住民에 대한 說得力 不足	○ 調查要領 및 面接方法 教育徹底 ○ 調查員 및 OMR카드 中心 教育 ○ 調查의 基本目的에 대한 充分한 周知 ○ 調查項目에 대한 事例 中心教育 ○ 應答 忌避 項目(總出生 子女數, 所得項目等)에 대한 調查背景 重點 說明
3. 調查區 要圖 및 家口 名簿	○ 現 3日間の 準備調查로는 要圖 및 家口 名簿 作成 困難	○ 準備調查期間延長 - 4日間 ○ 調查區 要圖 및 家口名簿 事前 準備 ○ 調查區 審查 承認後 부터 準備 ○ 要圖 및 家口名簿 審查日程 追加
4. 長期不在家口	○ 出他가 頻煩한 家口員의 調查 困難	○ 家口名簿 作成시 綿密 檢討 ○ 流動性이 많은 家口員에 대하여 洞長이 重點管理

項 目	問 題 點	今 後 對 策
5. 家口의 協助 事項	○ 應答者의 半以上(51%)이 非協助的임	○ 優秀調查員 確保, 綿密한 教育 ○ 對住民 弘報 徹底 ○ 調查結果 主要項目 및 地域別 資料製作하여 資料利用機關에 提供
6. 調查票	○ 年齡에 따라 記入하는 項目 에 錯誤가 많음 ○ 記入漏落(住宅의 建築年度, 學校 및 職場 住所)項目과, 錯誤 記載 項目이 많음 ○ 調查當日 OMR 移記로 調查 票 毀損 많음	○ 큰 活字, 色度區分 等 調查票 製作시 考慮 ○ 住宅에 關해서는 洞備置 財産 稅 課稅 臺帳 活用 ○ 産業, 職業에 대해서는 별도 分 류표 製作 配付 ○ 一般調查票 完全 內檢後 OMR 移記
7. 弘 報	○ 試驗調查 對象地域의 小規 模로 弘報制約, 效果未治	○ 全地域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本 調查시 大衆弘報媒體 活用 等 弘報 強化

3. 대구직할시

가. 調査結果 - 評價 分析 資料 活用 假集計

구 분	'90최종시험조사	'89상주인구조사	차 이	비 고
가 구	5,479	5,452	27	
인 구	21,167	21,870	-703	

나. 잘된점

주 요 업 무	추 진 내 용
○ 試驗調査洞 상황실 운영 [洞 사랑의 工夫房 利用 : 30名受容 勤務者 : 3명 狀況板 : 1식 一般電話 : 1대] ○ 特別 弘報 實施 ○ 市 評價報告會 開催 ['90.4.20 東區廳 主管 시·구·동 關係 公務員	○ 日日 共同作業 및 關係 公務員과 指導員 調査員의 討論으로 業務推進 및 改善容易 [調査員 日日 復命 問題點 및 隘路 事項 當日 補完 自體 內檢 場所 活用] ○ 弘報 效果舉揭 東大邱 國民學校 學生 2,600名 弘報 啓蒙 要員化 (公文으로 協助要請) ○ 아침 放送 實施 洞 行政 및 앰프 放送 施設 活用 07:00~07:30 重點施行 ○ 區廳長 調査案内傳單 製作 配布 : 5,500 매 班常會 指導 公務員 說明 統長 → 班長 → 家口別 ○ 試驗調査 分析結果를 關係公務員에 說明 業務能力 培養 [業務 推進 過程 說明 잘된 점, 改善 할 점 說明]

다. 改善 할 점

主 要 業 務	改 善 方 案
○ 指導員 選定 蹉跌 統長(3명)은 調查 票檢討 能力 未備 ○ 調查員 現地 調查 시 對象家口 接近 및 晝間出他 家口 調查 困難 ○ 自計式 調查結果 記載內容 未洽 ○ 調查票 用紙 損失 過多 ○ 調查員連絡箋 回收 效果 未洽	○ 統計調查 指導業務 有經驗 女大生 選定 活用 ○ 調查區 管內 區擔當職員 및 統班長 案內 要員化 ○ 特別 班常會 開催時 擔當 區洞 職員에게 記載方法과 調查要領 教育 ○ 調查員 訪問時 記載사항 補完 徹底 ○ 洞別 調查對象 家口數의 20% 程度 追加 配付 ○ 市場 인사말씀 製作하여 連絡箋과 同時 傳達

4. 인천직할시

가. 推進現況

(1) 關係者 敎育

○ 일 시 : '90. 3. 26 09:30 - 18:00

○ 참 석 : 시(2), 남구(2), 주안7동(3)

○ 교 관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원

(2) 調査員・指導員 採用

○ 채용기간 : '90. 3. 28 - 4. 10 (14일간)

○ 채용방법 : 통, 반장 및 대학(교)의 추천에 의거 희망자 접수
구청장이 임명

○ 채용결과

구분	계	신 분 별						조사구내 거주	
		통장	반장	주부	가사	학생	무직	거주	비거주
계	51	6	1	5	4	32	3	16	35
남	28	6				19	3	10	18
여	23		1	5	4	13		6	17

학 력 별				년 령 별			
중졸	고졸	대재	대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1	16	32	2	39	6	3	3
	8	18	2	22		3	3
1	8	14		17	6		

(3) 調査員・指導員 教育

- 일 시 : '90. 3. 28 (수) 09:30 - 15:00
- 장 소 : 주안 7동 회의실
- 참 석 : 조사원 (48), 지도원 (3)
- 교 관 : 주안 7동 사무장

(4) 弘 報

- 반상회시 홍보(별도 안내문을 제작 전가구에 기재)
- 프랑카드 (2개), 입간판 (1개) 설치
- 동 앰프 및 아파트 구내방송(수시)

(5) 調査結果 討論會 開催

- 일 시 : '90. 4. 10 (화) 13:00 - 18:00
- 장 소 : 주안 7동 회의실
- 참 석 : 구 통계계장(6), 구 실무자(6), 주안 7동(3)
- 토론내용 : 조사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나. 問題點 및 對策

문 제 점	대 체
○ 조사원 희망자 부족 11월의 본조사시에는 시전체 약 5천명 정도의 조사원·지도원이 필요하나 희망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원의 조사기간중 포기 시험조사기간중 51명의 조사원·지도원중 10명(20%)이 포기하였고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시간이 없었음. ○ 준비조사기간 부족 준비조사기간이 3.29-31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1개조사구에 최소한 2일은 소요됨. ○ 지도원 사전 채용 지도원을 조사원과 동일하게 채용, 교육하는 관계로 조사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조사원을 지도할 수 없으며 규모가 큰 동에서는 동직원 부족으로 조사원을 안내, 경계를 확인시킬 수 없고 유도작성도 어려운 실정임.	시에서 교육위원회와 협조하여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구별로 예비조사원을 10%정도 확보토록 하고 예비조사원도 조사원교육시 교육을 실시하여 동에서 요청시 배치 ※ 교육참석 여비 : 경제기획원에서 조치 요망 준비조사기간을 4일간으로 조정 요망 지도원을 동규모에 따라 조사원보다 5 - 10 일전에 채용하여 2 - 3 회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유도작성, 조사구경계 확인,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 수령,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문 제 점	대 책
○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파악곤란 조사항목중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조사원교육시 조사에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일반조사표를 배부할때 가능한 자계식으로 작성토록 하여 본인부계로 작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인근의 지형지물"을 "인근의 지형지물 또는 전화번호"로 문항 변경 요망
○ 조사원용 가방 보완 조사원용 가방이 들고 다니게만 제작되어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타계식 조사시에는 불편	어깨끈을 달아 메고도 다닐수 있도록 보완 요망
○ 부호이기 요령서 보완 구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시의 경우 OMR 조사표에 이기할때 구 부호를 누락하고 시 부호를 기재한 사례가 많음	일반시중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혼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호이기요령서 보완제작 요망
○ OMR 조사표 케이스가 작음 OMR 조사표 케이스가 조사표를 비닐봉투에 넣지않고 담았을때 꼭 맞게 제작되어 비닐봉투에 넣어 담을 경우, 뚜껑이 닫히지 않아 접힐 우려가 있음.	OMR 조사표를 비닐상자에 넣어 담을 수 있도록 OMR 조사표 케이스를 약간 크게 제작 요망
○ OMR 조사표 케이스 및 일반조사표 표지 측면에 조사구번호 기입란 보완 OMR 조사표가 들어 있는 OMR 조사표 케이스는 수평으로 놓아야 하는데 조사구번호가 위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기 및 내검시에 해당되는 조사구 케이스를 찾기가 불편(일반조사표 표지도 같음)	OMR 조사표케이스 및 일반조사표 표지 측면에 조사구번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문 제 점	대 비
○ OMR 조사표의 "나이"항목 축소 나이에 관한 조사항목이 4개인데 조사원 교육시 만나이 환산요령을 충분히 실시하고 OMR조사표에는 만나이 1개만 이기토록 하여 시간 절약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이기요원의 이기항목에 대한 조사표 설계 보완 조사항목중 질문이기요원이 이기하는 항목은 해당되는 부호를 별지로 되어 있는 책자를 보고 찾아서 기입해야 하는데 시도, 구시군, 읍면등을 차례로 찾으면서 OMR 조사표에 이기하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잘못 기재의 우려가 있음. ○ 일반조사표 ⑨항목 보완 일반조사표를 자계식으로 주민이 기재하면서 ⑨항목 "도착시각"을 퇴근시각 내지 방과 후 집에 도착하는 시각으로 착오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 표본조사표 보완 가구원 이름을 맨윗장에 기재토록 되어 있어 주민이 자계식으로 기재할때 혼돈할 우려가 있으니 맨윗장을 제외하고 가구원 이름란을 절취할때 여백을 두어 "↓" 및 가구원번호를 인쇄하여 혼돈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음.	OMR 조사표상에 만나이만 이기토록 개선 요망 전문이기요원 이기항목은 일반조사표 여백에 해당부호를 기재한 후 OMR 조사표에 이기할 수 있도록 조사표 설계 보완 요망 일반조사표의 ⑨번항목중 "도착시각"을 "직장 또는 학교 도착시각"으로 보완 요망 표본조사표 제작시 참조 요망

문 제 점	대 책
○ 전문이기작업기간과 내검기간분리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동시에 작업이 어렵고 조사표가 뒤섞일 우려도 있으며, 이기 및 내검요원의 통제관리도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동직원의 재검토 기간 필요 동에서 이기 및 내검이 끝나면 곧바로 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동직원의 재검토기간이 필요함	전문이기요원의 이기작업기간과 동내검기간 분리 요망 동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3 -5 일의 기간 계산 요망

5. 광주직할시

가. 調查區 選定形態別 內容

○ 標本調查區	10%	- 住宅地域 (69家口) - 아파트地域 (60家口) - 商業地域 (66家口)
○ 全數調查區	90%	- 住居地域 (1,065家口) - 商業地域 (232家口) - 아파트地域 (398家口) - 農業地域 (264家口)
○ 區廳別實務經驗 提高地域		- 東 區 - 45家口 - 西 區 - 45家口 - 北 區 - 45家口 - 光山區 - 60家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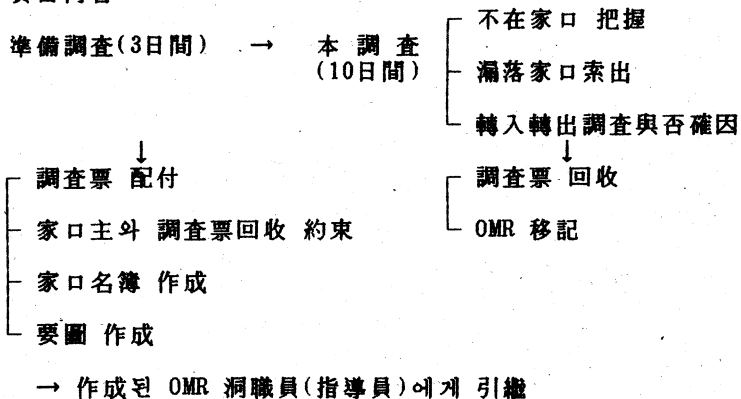
나. 現地調查實習 - 時間 210分

○ 調查員 5人 1組로 編成, 現地調查 實習

○ 現地實習組

[	調 查 員	4個組
	區廳實務者	1個組

○ 實習內容



다. 現地 試驗調查 過程에 따른 問題點 및 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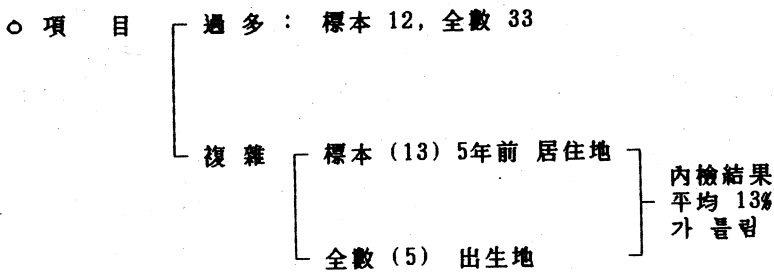
問 題 點	對 策
○ 調查員 教育 未洽	· 理論的 教育 : 調查概要 및 調查 方法 熟知 · 現地 實習 教育 - 現地에서 理論教 育을 基本으로 하여 實習을 實施
○ 調查票 管理 不實	· 봉투에 넣어 個人別 記載事項에 대한 秘密이 維持토록 保護
○ 豫算不足	· 調查員 手當 現實化(1일 15,000원) · 프랑카드는 大都市 道路幅에 맞추어 야함(1개 180,000원) · 各洞에 調查區 設定時 基本圖 複寫費 所要(각동 30,000원)
○ 準備調查期間不足(3日間)	· 調查區 境界 確認 · 調查區 要圖 作成 · 家口 名簿 作成 · 不在 家口數 把握 · 調查表 配付 및 回收 約束 等 (準備調查 期間中 業務量 過多 및 不在 家口 등 4日 程度 所要)

問 題 點	對 策
○ 印刷物 및 調查道具 · 油印物 · 調查員 가방 · OMR調查票 管理 ○ 指導員 增員 ○ 調查員,指導員 合同 勤務場所 狹小	· 油印物を 시도에 配付시 確認 點檢하여 目錄表 作成 同封하여 송부 · 調查員 가방은 2칸으로 나누어 雨天을 對備 자크를 달아 實用性있게 製作 · OMR調查票 管理는 일목요연하게 調查 區別로 管理할 수 있는 別途의 캐비넷에 備置 濕溫度에 徹底를 기하였음 · 試驗調查 對象地域 市道別 現況에 의하면 指導員 1인당 調查區 擔當數는 서울을 除外한 其他 市道보다 많음 · 高知能 所有者가 아닐 경우 指導員 1인당 조사원 관리 지도는 10~13인 範圍 以內야 적정함(600~800家口) · 洞事務所가 비좁아서 調查期間동안 適當한 場所를 賃貸하여 調查業務 수 행(賃貸料 200,000원)

다. 調查員 設問調查 結果

- 1) 調查過程을 본다면 基本圖 準備, 調查區 設定, 家口 名簿 作成, 要圖 作成, 調查員 選拔 등 業務의 過多
- 2) 正確한 統計를 生産하기 위해서는 調查準備, 調查過程이 簡潔해야 함

(예) 調查票상의 예를 든다면



- 3) 試驗調查에 있어 調查員이 6인 家族 以上일 경우 調查票 2枚 作成을 하여야 하나 5인家族 1枚로 作成하는 事例가 있음.
(調查區當 2 ~ 3枚 程度)
- 4) 住民들의 問項 質問에 대한 理解度에 있어 出·退勤 時刻記入에 있어 出勤은 職場到着時刻, 退勤은 歸家時刻 등으로 誤記事例가 많음
- 5) 調查員 選定을 夜間 또는 晝間大學生으로 전체인원(20인)을 選拔한 結果 現地調查나 OMR 作成에 있어 問項理解度 등에 있어 大學間의 差가 發生 調查員 選拔이 重要함.

6. 대전직할시

가. 最終試驗調查 實施結果

(1) 調查員 採用 現況

區 分	調 查 員		指 導 員		備 考
	男	女	男	女	
計	11	4	1		
全數	8	4	-		
標本	3	-	1		

(2) 調查實施結果

調 查 區 數	家 口 數		家口員數		居 處 的 種 類						
	一般 家口	集計 家口	計	男	女	住 宅 數					住宅 以外 居處數
計						計	單獨 住宅	APT	多世帶 住 宅	非居住用 建物內의 住 宅	
28 全數:25 標本 3	1575		6224	3111	3113	712	647			65	

빈 집	農漁家		備 考
	農 漁	漁 家	
4			

나. 最終試驗調查 意見收斂結果

區 分	內 容	向 後 對 策	備 考
1) 調查員教育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시·구 자체적으로 실시됨으로서 조사요령교육 전달 미흡	충실한 표본교안을 제작 활용(VTR 또는 소형영화를 제작 교육활용)	
2) 指導員不足	조사원15명에 대하여 지도원1인으로 효율적인 조사원 지도가 부족	조사원 15인당 1인의 지도원을 10인당 1인으로 조정	
3) 準備調查과 本調查期間 明確한 區分	준비조사기간과 본조사기간 구분으로 번잡한 방문에 대한 주민 거부 반응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대상가구를 설득	
4) 住民 作成 調查票 不正確	조사항목수가 많고 조사내용의 이해부족으로 주민작성 조사표의 부정확 및 조사표 훼손 낭비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여 조사표 작성	
5) 調查期間의 不足	85년에 비하여 조사항목수가 증가하였으나 조사기간은 동일하며 OMR 카드 작성에 따른 인력의 추가소요 ※ 85년 : 30개 항목 ※ 90년 : 전수 33개 항목 표본 45개 항목 ※ OMR 카드작성 1매 (5인가구원 기준) 15-20분 소요	조사기간의 조정 10일에서 ~ 13일로	
6) 조사항목 과다 (표본조사구)	인구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활동사항까지 추가함으로서 조사응답에 거부반응	조사항목 조정 경제활동상태관련 항목 제외	
7) OMR 카드 작성일원화	조사원이 OMR 카드작성으로 조사원업무량과다	OMR 카드작성 전문이기 요원 증원	
8)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거부	- 사생활에 관한 조사항목이 많아서 응답 거부 - 전수 항목: (8)직장, 학교주소 (16)연건평 (17)대지면적	조사항목 조정검토	

區 分	內 容	向 後 對 策	備 考
9) 調査員任命 10)기 타	-표본항목 : (19)생존자녀수 (20)사망 " (21)총출생자녀수 (24)한달평균 소득규모 · 조사원의 정예화가 되지 못하고 조사원의 자질부족으로 조사부실 우려 · 조사표의 개선 전수조사표가 세로로 되어 조사에 불편함 · 조사원 명패 · 조사원용 가방	· 실제조사시 조사원의망자 일제등록후 적격자선발후 채용 · 가로로 서식 변경 · 모자착용 · 가방모형을 개선하고 색깔은 청색이나 초록색	

7. 경기도

가. 主要推進事項

(1) 調査區 地域 選定 背景

재 특성 파악 용이 지역 선정

송탄시(증앙동)

- 다양한 특성 포함
- 군사 요충지
- 현지 조사상 어려움 다발 우려 지역(외국인 거주지역)

부천시(역곡 3동)

- 서울 인접동으로서
- 복합형성 지역 - 단독주택, 연립주택, APT상가, 유흥업소,
농가 및 특수 사회시설 등이 현존

(2) 상황실 설치 운영

○ 기간 : '90. 3. 29 ~ 4. 14 (17일간)

○ 편성 및 임무

구 분	도 본 청	시 (부천, 송탄)	동 [부천 역곡 3동 송탄 중앙동
책임관	통계 담당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동 장
부책임관	인구통계계장	통계계장	사 무 장
실무추진	인구통계실무자	통계실무자	통계담당자
현지 조사활동			지 도 원 조 사 원
임 무	· 실시계획설립 · 교육실시 · 지침제시 및 해석 · 실사지도 · 종합상황유지	과 동	· 조사원의 모집과 관리 · 조사원 개인별 조사진도 파악 · 실사지도 · 실사

(3) 홍 보

- 도정뉴스 자료 게재 : 1회 82천부 ('90. 3. 23)
- 일 간 지 개 제 : 1회 2개 지 (경기일보, 경인매일신문)
- VTR Tape 재 작 :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송탄시 - 10회)
- 시장 서한 발송 (송탄시 - 8,300 가구)
- 반 회보 게재 배부 : (송탄시 - 3천 가구)
- 기 타 : 입간판, 프랭카드, 현수막 설치, 차량이동방송, 마을 앰프 방송, APT 구내방송 등 지역홍보매체 최대 활용

(4) 조사원 및 지도원 채용

총 채용 인원 : 102명

- 송탄시 (중앙동) : 31명 (2)
- 부천시 (역곡 3동) : 71명 (5)

※ () 내는 지도원 수

- 채 용 기 간 : '90. 3. 28 ~ 4. 10 (14일간)

조 사 원 채 용 분 석

○ 성별·연령별

연령별 성별	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비 고
계	102	2	16	64	17	3	
남	9	-	3	2	2	2	
여	31	2	13	62	15	1	

○ 학력별

계	고 졸	대 재	대 졸	비 고
102	89	5	8	

○ 직업별

계	통반장	대학생	주 부	부녀회장	가사종사자	기 타
102	17	5	67	5	2	6

조사원 채용상의 특징

○ 지역별 조사원의 능력 측정 및 재 특성 파악을 위하여

- 송탄시 (중앙동) - 전원 주부만을 채용 - 도심 밀집지역과 APT 지역은 주부 조사원 채용이 효율적이었으나, 산간·농촌 지역 등에서는 원거리상 남자조사원 채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부천시 (역곡 3동) - 각 계층에서 선발채용 - 대학생조사원의 경우 적응력 부족으로 일부 증도 포기자 발생

○ 조사원 유고시 결원 보충을 위하여 예비 조사원을 시별로 10명씩 사전확보

(5) 조사원과의 간담회 개최

○ 조사원의 노고 격려

○ 향후 『총조사』 실시시 업무 협조 당부

○ 일 시 : '90. 4. 10 14:00 ~ 17:00

○ 장 소 : 2 시 2 개동 회의실 (송탄시 중앙동, 부천시 역곡 3동)

○ 주 관 : 시장

○ 참 석 : 109명 (조사원 102명, 지도원 7명)

○ 내 용

· 노고치하 및 격려

· 애로 및 문제점 등 청치

· 향후 실시할 『총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설문지 작성 등

(6) 자체 평가회 개최

- 실제조사 경험 취득 기회 부여 및 사례 교환 -

○ 기 간 : '90. 4. 13 ~ 14. (2일간)

○ 장 소 : 부천시(역곡 3동), 송탄시(중앙동)

○ 대 상 : 44명(시·군·구·출장소 통계계장)

○ 주 재 : [부천시 ; 통계 담당관
 [송탄시 : 인구통계계장

○ 내 용

·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최종 시험 조사 현장 참관

· 시·군별 자체 준비 상황 보고

나. 조사 실시 결과

송 탄 시

○ 조사구, 가구, 인구, 거처수

區 分	調査區	家 口		人 口		居 處 數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56	3,371	3,354	13,091	12,523	3,412	2,416
全 數	50	2,974	2,974	-	11,158	2,171	2,174
標 本	6	397	380	-	1,365	241	242

※ 감소사유 (인구)

- 사회시설 조사구 제외
- 부채자 조사에서 제외
- 외 국 인 제외

부 천 시

○ 조사구, 가구, 인구, 거처수

區 分	調査區	家 口		人 口		居 處 數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劃	實 績
計	137	8,157	7,878	26,432	27,117	4,583	4,478
全 數	125	7,430	7,160	-	24,641	4,209	4,109
標 本	12	725	718	-	2,476	374	369

※ 증가사유 (인구)

- 조사구내 신설 건물에 입주

8. 강원도

가. 實施 結果

合 計				韓			
總家口	總人口			人口			一 般
	男	女		男	女		家 口
5,056	18,869	10,002	8,867	18,864	10,000	8,864	4,954

國 人							外 國 人			
家 口			集 團 家 口				家口			
人口			家口	人口						
	男	女			人口	男		女	人口	男
16,918	8,604	8,314	100	1,946	1,396	550	2	5	2	3

나. 力點 推進事項

(1) 優秀 調査員 確保

본 조사의 정확성은 조사원의 조사표 작성에 있음을 증시 조사
요령의 숙지, 이해도, 활동성, 조사표 내용검토 능력을 고려
관내 대학교 통계학과 학생을 임명

○ 추진상 문제점 : 예러발생, 시간제약, 기대치에 어긋남.

○ 개 선 점 : 고졸 이상의 통, 리, 반장 또는 여성으로 선정

(2) 調査의 正確性 維持

○ 지도원의 현지조사 순회지도 및 조사불능가구의 직접조사

○ 조사원과 지도원 합동검토 불능으로 내용확인 부실

○ 지도원의 내용검토 확인의 한계 : 업무량, 시간, 능력

○ 개 선 점 : 퇴직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가족 등 고급인력
으로 지도원 선정

다. 問題點 및 對策

題 目	內 容	問 題 點	對 策
1. 調查員指導員 教育	○ 講義에 의한 注入式教育	○ 調查員의 能力 여부에 따라 教育의 完全 熟知 不可能 ○ 講義式教育과 本 調査의 乖離發生	○ 視聽覺教育으로서 轉換 → VTR 製作 活用 ○ 教育用 VTR 테이프를 충 분히 製作해 一線 洞邑面 까지 配付함으로서 教育 의 일관성과 教育效果 제고
2. 弘 報	○ 프랑카드, 입 간판, 현수막 반상회보, 마을 앰프활용의 가 시적홍보	○ 形式的 弘報에 그치고 있음	○ 總調査에 대한 全國民의 關心을 提高시키고 雰圍 氣를 高潮시키기 위해서 는 - 經濟企劃院에서 TV 電 波妹體를 利用해서 黃 金時間代에 集中弘報를 해야하며 (본조사 기간전) - 地方에서 多樣的 弘報 活動을 할 수 있도록 豫算上的 支援 措置
3. 準備調査	○ 要圖作成主體 變更 ○ 調査票와 家口 名簿 作成시 該當事項이 없 을시 斜線은 左上에서 右下 로 긋게 되어 있음.	○ 調査員들이 管内 事情에 正統하지 못한 關係로 거 처 및 가구의 누 락 요인이 되고 있음 ○ 一般人들의 習慣 과 相異하여 내 검시 많은 시간 허비	○ 調査區 要圖作成 主體는 一線機關의 實務者가 하 는 것이 바람직함. ○ 該當事項이 없을시에는 ×表示하거나 右上에서 左下로 『/』表示

題 目	內 容	問 題 點	對 策
4. 本調查	○ 一般調查票(4) 나이項目 → 同一內容의 4가지 反復 質問 ○ 自計式調查에 대한 住民 消化 能力 不足	○ 時間虛費, 應答者의 不滿 招來 ○ 많은 調查 項目과 項目間의 내용 類似, 調查票의 複雜性으로 대부분이 비협조적임 · 誤記, 重複, 漏落(內容不一致): 59% · 未記載(白紙提出): 37% · 完璧記載(內容一致): 4%	○ 세는 나이와 떠난 質問 → 만나이, 出生年度는 換算記錄 ○ 自計式 調查項目의 內容 記載가 容易하도록 長期의 眼目에서의 研究檢討
5. 內 檢	○ 洞內檢期間의 延長	○ 주어진 內檢期間 동안(3일)總內檢量의 50% 內檢 消化	○ 完璧한 內檢을 위해서는 洞內檢期間을 充分히 주어야 함.
6. 統計人力의 專門化	○ 洞邑面의 一般職 公務員이 統計 및 餘他 業務 同時 遂行	○ 統計에 대한 關心 不足과 業務量 過重으로 效率的 統計業務 遂行에 어려움	○ 統計專門 人力 또는 專擔要員 配置
7. 自體 問題 (調查員 任用)	○ 正確을 기하기 위해 大學生들로 任用	○ 一般人에 비하여 地域實定 把握이 어두웠고 在學中인 學生들이기에 實際 調查時間이 적었음	○ 管内地域 事情에 正統한 中流知識水準의 統,班長이 바람직

9. 충청북도

가. 力點推進事項

(1) 調査員 選拔基準 및 優先順位原則設定

○ 基 準

- 지역내 거주하는 신망이 두터운 자
- 기본적인 소양 인격 보유자
- 홍보 대화 설득 능력과 활동성 있는 자
-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 치밀하고 성실성이 있는 자

○ 優先 原則

- 통장, 새마을 지도자
- 공무원 가족 (전·현직 공무원)
- 학생, 일반주부

(2) 調査員 教育과 能力測定

○ 教 育

- 집합 교육 (작성)과 현지확인 (조사구)
- 지도원의 동시 순회 지도교육
- 기타 미흡한 점 - 도공무원 상주 지도

○ 教育效果의 測定

- 조사표에 의거 자기 가구 조사표 작성 실습 평가
(실무중심 시험 평가)
- 조사구내 2가구 조사작성 평가 (상류층, 영세층)
- 평가후 동장 책임하 선발

나. 最終試驗調查 實施 結果

(1) 충주시 교현 1동

○ 지역특성

- 관내 전지역이 주택가와 상가로 형성
- APT 및 연립주택 집단밀집
(단독 62%, APT 및 연립 33%, 기타 5%)
- 빈부의 격차가 심한 지역
- 개발지역으로 주거지역 확장변화가 높은 지역

○ 가 구 : 5,349 가구 (충주시의 18.6%)

○ 인 구 : 22,005 명 (" 17.6%)

○ 면 적 : 1.58 ㎢ (" 1.7%)

○ 공무원수 : 15 명 (주민 1,467 명당 1인)

○ 통 반 : 35 통 168 반 (새마을지도자 70 명)

다. 問題 點

홍 보

- 지역적 조사로 TV 방송 등 홍보 불가능으로 주민의 인식부족
- 조사항목별 주요사항이 미홍보되므로서 답변 기피
경제활동, 주택(재산), 소득사항 등

조사구 설정

60가구 기준 조사구 설정으로 행정의 통경계를 무시할 경우 조사 대상가구 누락 내지 시간 낭비 초래

조사원선발

- 공모시
 - 수당 비현실화 및 단기간 고용으로 우수 조사원 채용 불가능
 - 통반장은 개인사업 등 참여거부 또는 참여자는 자질 부족
- 추천시
 - 우수통반장, 가정주부 등 소극적 참여(태도)로 조사에 비능률 초래

조사원교육

- 통반장 등 40대이후 조사원 조사항목 이해부족
- 동별 집합교육장소의 협소로 조사표 작성요령 중심 교육 불가능

준 비 조 사

- 사전 조사구 경계 및 가구파악 등 미실시
-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불가능
기일, 자질 능력 부족

본 조 사

- 조사표 배부시 자계식 작성 극히 저조 (10% 미만)
- 자계식 작성에 대한 부실기재사항을 면접할 경우 작성자에 대한
인격 훼손 우려
- 자계식 작성시 가구원수 등 통계 혼란 초래
조사대상 착오 등 이해부족
- 조사항목 과다로 면접에 실증초래와 사생활 침해, 과세자료 등을
이유로 대답거피
- 통반장이 아닌 조사원이 조사방문시 사회불신풍조(장사, 새일즈맨
등)팽대로 인한 방문거절 - 비협조
- 조사시 응답자가 출생년도 미숙지로 조사원이 임의로 기재
(자녀, 부모 등)
- 조사표가 OMR과 이중으로 작성시 소요시간 장시간 소요 및 이기시
오기 초래

실 사 지 도

- 동직원의 업무과다로 조사원 및 지도원 현지 지도 불능
- 도, 시, 동직원 및 지도원이 현지 지도방문시 조사원의 얼굴 및 위치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지도 불가능

O.M.R 이 기

- 조사원의 작성조사표 및 자계식조사표 회수후 당일분을 일정장소(동사무소)에서 이기하여야 하나 조사완료시간이 일정치(야간조사) 않으므로 당일이기 불가능으로 추후 일정기간분을 자택 또는동사무소에서 이기
- 가구원수가 5인이상일 경우 앞장에 기재된 주소, 거처, 가구, 조사구 번호 등을 이중 기재로 시간 낭비

조사표내검

- 동 → 시 → 도 연속내검으로 OMR 조사표 『에지』가 손상 우려
- 도·시 내검시 조사표 과다로 내검시간의 부족, 내검요원의 확보가 지극히 어려움
장소, 운반, 내검요원 확보 (단기간 채용기피 등)
- 조사표 편철부분이 미천공으로 인하여 편철에 시간낭비 부실편철
- 조사표상 조사원 인장날인 거부

라. 對 策

홍 보

- 철저한 사전 홍보 강화

[전국적인 홍보수행
TV, 신문, 잡지, 홍보매체 등

-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적 중요사항을 TV, 신문 등 홍보
(스파트, 만화 등)

조사원선발

- 지역특성을 최대한 감안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가족 등
우선순위와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우수조사원 선발후 동읍면장 책
임하에 선발
- OMR 작성 능력테스트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 조사원은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여 요도와 가구명부 작성이 부족하므
로 지역담당 공무원(통리별)이 작성함이 좋음

조 사 표

- 2회에 걸쳐서 기록하는 조사표작성을 지양하고 OMR 조사표만으로
사용조사
- 자계식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타계식 조사로 병행 실시

내 검

- 도·시군 내검은 중복되는 작업이므로 실현가능한 동읍면 내검 1회
원칙으로 하는 반면 내검요원을 우수자로 선발 교육 강화
(장기간 채용)

마. 建議事項

- 홍보는 지역단위보다 중앙중심 전국단위 홍보 수행
TV, 신문, 대담방송 등
- 조사기간 및 수당의 현실화로 우수조사원 채용
현실임금과 격차
- 조사표상 출생년도 조사항목 축소
- 본조사 추진일정과 농업 총조사의 조사기간 중복으로 조사표 내검 및
재출일정 연장

10. 충청남도

가. 調査員의 適格者 嚴選 採用

(1) 性別 現況

區 分	計	男	女
採用人員	34	26	8
比 率	100%	76%	24%

(2) 學歷別 現況

區 分	計	高卒	專門大學	大在	大學	大學院在
採用人員	34	20	1	9	3	1
比 率	100%	59	3	26	9	3

(3) 職業別 現況

區 分	計	主婦	女大生	男大生	男子統班長	前職統班長
採用人員	34	1	1	8	12	12
比 率	100%	3	3	24	35	35

(4) 年齡別 現況

區 分	計	18 - 20 歲	21 - 30 歲	31 - 40 歲	41 - 50 歲	51 - 60 歲	60 歲以上
採用人員	34	4	8	1	-	9	2
比 率	100%	12	53	3	-	26	6

・ 김동식 (63세) 統長 (高卒)

・ 임기빈 (69세) 統長 (高卒)

나. 住民 弘報 強化

(1) 行政機關, 有關機關, 團體를 通한 弘報

- 반상회 홍보 : 3 월 반상회 (3월 26일)
- 유관기관 단체 협조 공문 발송
- 관내 유관 기관 단체장 간담회 개최 협조 요청
- 부녀회를 통한 관내 캠페인 전개
- 팜프렛 8,000 매 제작 배부

(2) 各種 弘報物에 依한 弘報

홍보물명

- 立 看 板 : 2개 (프랑카드 2개)
- 設置期間 : 3. 15 ~ 4. 10
- 場 所 : 은양 시청 현관
동 사무소 현관

(3) 마을엠프 및 移動車輛 엠프放送 弘報

- 동 사무소 엠프 방송
방송 기간 : 3. 15 ~ 4. 5
- 移動 車輛
방송 기간 : 3. 15 ~ 4. 5
차 량 : 시 공보실 차량
청소 차량 (녹음테이프)
- 아파트 구내 방송
동 직원 출장 방송

(4) 刊行物에 依한 弘報

팜프렛 8,000 매 제작 배부

다. 調查 期間中 調查員과 關係官의 每日 懇談會 開催

(1) 每日 懇談會 開催

- 期 間 : 3. 29 ~ 4. 9 매일 17:00
- 場 所 : 동 사무소 회의실
- 參席對象者 : 조사원 32명 지도원 2명
관계 공무원 2명
- 主 宰 : 동장 또는 사무장
- 內 容 : 조사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도출
대응 방안 지시 - 해결

(2) 調査上 隘路事項

- 遊興業所 從事者 把握이 어려움
호텔, 여관, 음식점 등 이동이 잦음
- 不在 家口가 많이 나와 類型 把握 對處
맞벌이 부부 · 出他 · 入院 · 哀慶事 出他 等
- 應答율 가장 잘하지 않은 項目
出生地 · 財産 關係 : 說得 誘導
- 調査에 非協助者가 많음
應答忌避, 싫어함, 必要없다는 姿勢 : 說得 理解

김장섭, 김성민, 김성민, 김성민

라. 實施 調査上 重點은 分野

(1) 遊興 接客 業所 從事者 調査

區 分	對 象 數		備 考
	業所數	人口數	
計	1,010	3,060	
호 텔	5	427	溫陽 10, 제일 89, 웨스턴 53, 그랜드 210, 호서 65
여관 · 여인숙	151	569	여관 × 5, 여인숙 × 2
다 방	142	426	× 3
유흥접객업소	38	190	× 5
식 당	497	994	× 2
理 · 美容業所	177	354	理容 60 × 2, 美容 117 × 2
其 他 (비 노 출)		100	

(2) 不在 家口 調査

계		맞 별 이		출 생		입 원		에 경 사		구 속	
家口	名	家口	名	家口	名	家口	名	家口	名	家口	名
448	1,786	327	1,301	69	288	31	127	15	64	6	6
比率	100%	73.0		15.4		7.0		3.3		1.3	

(3) 應答 忌避 調査 項目에 대한 對應 措置

- 재산 관계 항목 : 284 세대 ○ 출생관계 (출생지) : 263 세대
○ 세입 금액 항목 : 457 세대 ○ 혼인관계 (재·이혼) : 65 세대

마. 調査 結果 現況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60	3,262	12,480	5,893	6,587	

11. 전라북도

가. 重點推進事項

(1) 狀況室 設置運營

- 실 장 : 시 계획관
- 기 간 : 3 월 30 일 ~ 4 월 10 일까지
- 장 소 : 이리시 창인동 사무소 회의실
- 운 영 : 조사기간 중 매일 17:00 집결 복명회 개최

- 조사실적 파악 상황판 정리
- 당일 조사활동사항 문제점 예토사항 위주
- 매일 행동계획 지시

※ 도 통계담당관, 인구통계계장 참석

(2) 住民參與度 提高를 위한 弘報 主力

- 3 월 25 일 반상회 개최 강화 : 관주도로 실시
- 주민 동원 반상회 주관 : 시동직원 직접참여
- 봉만장 회의 소집 : 3 월 25 일 10:00 (동사무소)
- 반상회 홍보 :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 현수막, 입간판, 리본제작 : 시비 380 천원 별도 지원

(3) 調査員 活動 指導

조사기간 중 조사원과 직원 (시+동) 1명씩 조편성

조사원 활동 협조 → 통반장 동참 유도

(시기획관실 직원 7명+동직원 10명)

(4) 試驗調査 參觀

90 년 11 월 인구 주택 총조사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 대 상 : 각 시군구, 읍면동 통계담당자

○ 방 법 : 시군구과장 또는 통계계장 인솔 1일식 직접 참관

- 창인동 상황실에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 등 청취
- 문제점, 애로사항 위주로 간담회 개최
- A.P.T 밀집지역, 상가 등 현지견학

○ 시군별 참관일정

4 월 3 일 : 전주, 남원시, 남원군, 임실, 순창

4 월 4 일 : 진안, 무주, 장수, 완주

4 월 6 일 : 정주시, 정읍군, 고창, 부안

4 월 7 일 : 군산, 옥구, 익산, 김제시, 김제군

다. 調査過程에서 隘路 및 問題點에 따른 對策

(1) 住民들의 關心度 不足으로 因한 調査 遲延

○ 家계에 의한 직접 작성 가구수가 극히 적음

총가구수 : 1,809

자계식 직접작성 가구	: 633 가구	35%
완전 타계식 조사가구	: 452 "	25 "
자계 타계 조사가구	: 724 "	40 "

○ 家계 직접 작성 가구도 전항목 완전작성 가구 극히 적음

(응답가능자 거의 매일 출타)

전체의 80% 509 가구

○ 家계 직접 작성 가구도 잘못 응답된 가구수도 상당히 있음

전체의 20% 124 가구

○ 전가족 출타로 용지의 배부는 물론 실조사가 극히 어려운 가구

· 유형의 분류

가족내의 직장출근 (모든직업 포함)	: 150 가구
가족 영세민으로 맞벌이 가구	: 110 "
실거주가족이 없는 가구 (취학학생만 거주)	: 390 "

○ 조세상 부담감으로 조사를 기피하는 가구 : 318호 100%

전체의 10% 180 가구

*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8호의 가구는
완전하게 조사를 하였다. (218호는 100% 완료)

(2) 調査員の 選抜上の 잘못

○ 시험조사이니 만큼 채용 대상자를 골고루 채용 장단점을 파악못해
본 점

특히 통반장과 부녀회장이나 부녀자들을 활용못해 본 점

· 종전의 경험상 젊은 청장년들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만 생각

총 18 명 (대졸 4, 대제 12, 고졸 2)

· 학생들은 일과시간외는 활동하자 않을 뿐 아니라 책임감 부족

(3) 조사시간과 OMR 조사표 이기시간 등이 너무 짧아 소홀할 우려가 있음.

· 조사기간 짧은 이유 (10일간 120가구)

1가구조사시간 : 완전타계식 (조사원 40분간소요)

(자계식도 일반조사원의 직접확인으로 거의 동일시간 소요)

1조사원 1일 타계식 7가구 조사

(대 책 : 현120가구당 10일을 15 ~ 17일로 연장)

· 전문이기요원 OMR 조사표 이기시간부족

1 매 (가구당)이기시간 최소 ~ 10분 소요

1일 42 매 정도 이기할 수 있으므로 2,182매를 이기하는 데는 52명이
소요됨

(대 책 : 현 500가구당 1명 4일을 150가구당 1명 4일로 책정 인원
증원 지원)

12. 전라남도

가. 重點推進事項

(1) 試驗調查 事務所 設置 運營

- 장 소 : 목포시 동명동 관내 (노인정)
- 규 모 : 면적 40평 (책상 등 비품완비)
- 기 간 : '90. 3. 25 ~ 4. 25 (1개월간)
- 활 용 : 교육, 조사원 출근, 이기, 내검 등 작업장소,
조사용품 보관 관리

(2) 調査員 採用

- 당초 11월 총조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통계 담당자 29명을 조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시험조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전원 일반인으로 채용

○ 조사원 채용 상황

· 거주지역별 및 성별

계			조 사 지 역 내			타 지 역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0	17	33	21	2	19	29	15	14

· 연령별

구분별 성별	18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59세	계
계	8	11	21	2	8	50
남	4	2	3	-	8	17
여	4	9	18	2	-	33

· 직격 대상자별

구 분	계	남	여
계	50	17	33
1)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가족	9	1	8
2) 퇴직공무원	3	2	1
3) 가정주부 또는 가사종사여성	17	-	17
4) 학생	9	6	3
5) 통반장	12	8	4

(3) 試驗調查 正確度 確因

- 일 시 : '90. 4. 14 (1일간)
- 방 문 자 : 도직원 6명
- 확인항목 : 가구 및 인구수
- 확인결과

조사구 별	조사원 조사		확인인구수		비 고
	가구수	인구수	재외자포함	누락	
계 (7개구)	431	1,668	3	4	· 누락, 중복 가구는 없음.
18	60	224	-	3	
26	44	166	-	-	
41	60	243	2	-	
55	69	244	1	1	
56	63	236	-	-	
67	68	279	-	-	
68	67	276	-	-	

나. 試驗調查 結果

(1) 集計內容

○ 가구 및 인구

- 가구수 : 5,344 가구
- 인 구 : 20,805 (남 10,133, 여 10,672)

○ 거 처 수 - 3,242 개 처

- 단독주택 : 2,653 "
- 아 파 트 : 423 "
- 연립주택 : 29 "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137 "

(2) 問題點 및 對策

구 분	현 황 및 문 제 점	대 책
○ 조사, 이기, 내검원 채용	· 타지역 거주 조사원은 조사구 경계확인이 어렵고 주민과의 면식이 없어 대화를 꺼림 · 통반장은 본조사의 수행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음. · 학생 등 청년층은 성실성이 미흡함	· 3·40대 여성들이 적격하므로 조사 30일전에 동에서 관내 여성으로 가급적전원 공모채용 · 이기, 내검원은 조사원 중에서 선발 계속채용
○ 조사업무추진 장소 확보	· 동사무소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 별도 장소를 사무소로 활용 · 약 1개월간 조사원, 지도원, 이기내검원이 머물면서 작업할 장소가 절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품도 확보되어야 함.	· 인구 주택 총조사 사무소 설치 (동음면 회의실 또는 별도장소 확보)

구 분	현 황 및 문 제 점	대 책
○ 교육	· 지침서 숙지 시간 부족 ┌ 공무원교육 : 3. 26 ├ 조사원교육 : 3. 28 └ 조사 실시 : 3. 29 ~	· 각 교육 5일전 실시 · 조사표 기재예시를 작성배부
○ 조사구 요도 작성	· 용지의 방안선이 짙어 요도 작성시 명확하지 못함 · 조사원이 작성함으로서 조잡하고 조사구 구분이 어려움	· 요도작성용지개선 (방안선을 의미하게) · 공무원이 작성
○ 지도원 선발	· 지도원 3명이 조사원 50명을 지도하기 어려우며 지도력이 미흡	· 조사원 7명당 지도원 1명정도가 적함 · 지도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수당과목 변경 (108 → 106)
○ 조사원 수당 지급	· 국비 전도자금으로 적기에 (매일 또는 종료시) 지급이 어려움 ┌ 시부 : 1일후 지급가능 └ 군부 : 3일후 지급가능 ※ 시직원이 3일본 1,290천원을 입채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시군·읍면동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으로 시군 규모에 편성)
○ 조사표 기재	· 조사내용을 과세자료, 주민등록과 연관하여 기재하려는 경향이 많음 · 글씨 쓰는것을 부담스럽어 생 각하고 있으며 착오기재 응답 회피 등 사례가 있음.	· 사전홍보 철저 · 면접조사 방법으로 추진

구 분	현 황 및 문 제 점	대 책
○ 표본 조사표 개선	· 조사표 관리소홀 : 재교부12% · 조사표 작성상황 — 완전한 응답 15% — 질문 보완작성 35% — 면접 조사작성 50% · 조사표 1매당 5명까지 기재할 수 있으므로 6인이상 가구에서는 누락 가능성이 많음 · 성명란을 앞쪽에서 3매를 올려 내었으나 나이란의 검토 확인을 위해 수차례 첫페이지를 들추어야 하는 불편이 있음 (6, 11, 12, 13, 14 항목 조사시)	· 교육시 또는 현지 확인시 6인이상 가구 특별한 주의요망 · 성명란에 " (만 세) " 를 추가 인쇄하여 4 - 4 항목 조사후 만나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 가구표시 스티커 개선	· 가구당 1매씩 스티커를 부착토록 되어 있어 한집대문에 여러 개의 스티커 부착으로 미관상 좋지 않음	· 1거처당 1매만 부착토록 스티커 개선
○ OMR 이기작성	· 매우 어렵고 착오발생요인이 많음 · 행정구역 부호가 행정동명으로 되어 있어 법정동명으로 조사되었을 때 분류가 어려웠음 " 예시 " - 동명동 = 동명, 광, 호남동 일부, 산정동, 내삼	· 이기작업은 이기요원에 전담 · 행정구역 요람을 참고하여 이기작업 (87년내무부발간)

13. 경상북도

가. 調査員 및 指導員 選拔

(1) 調査員 및 指導員 現況

구 분	계	조 사 원	지 도 원
계	78	73	5
남	31	26	5
여	47	47	-

(2) 年 齡 別

계	18 - 25세	26 - 30세	31 - 40세	41 - 50세
78	14	3	29	32

※ 40세이상 : 59%

(3) 學 歷 別

계	대 졸	대 재	대 퇴	전문대졸	고 졸
78	6	3	1	1	67

(4) 職 業 別

계	통 반 장	학 생	가정주부	기 타
78	42	3	22	11

나. 力點 推進 狀況

(1) 弘報活動

가. 시.동사무소 입간판 설치 : 2개

나. 현수막 제작 설치 : 2개

다. 3월 반상회 특보 배부 : 8,300매

라. KBS 포항 방송국 라디오 대담 방송

○ 일 시 : '90. 4. 3 14:00

○ 대담자 : 포항시 기획실장

포항 방송국 보도부장

마. TV, 라디오 방송 : 5회

바. 통반장 회의 : 3회

사. 동 앰프 방송 실시

○ 기 간 : '90. 3. 27 - 4. 10 (15일간)

○ 방송회수 : 1일 2회(아침, 저녁)

(2) 敎 育

가. 일 시 : '90. 3. 27 - 3. 28 (2일간)

나. 장 소 : 포항시 죽도 2동 사무소 회의실

다. 대상자 : 공무원, 조사원, 지도원

라. 교 관 : [공무원 : 중앙 교관
조사원, 지도원 : 시 교관

마. 내 용 : '90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시험조사 지침서에 의거

강의 및 실습 (조사표 및 OMR조사표작성)

다. 指導 督勵 遂行 事項

(1) 道 (遂行事項)

- 현지도도 및 조사원과 대담 격려
- 현지조사상 예토사항 청취
- 각종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모안

(2) 市 (遂行事項)

- 조희시 시장 훈시 ('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성 강조 지시)
- 죽도 2동 담당 국, 과, 계장 현지도도 조사원 격려
- 통계담당직원이 동에 상주 현지조사상 문제점 해결 및 지도

(3) 洞 (遂行事項)

- 조사원 10명당 지도담당 공무원 1명씩 배치 문제점 해결 및 지도
- 조사원 및 지도원 활동사항 지원
- 현지조사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라. 業務推進上 問題點 및 改善方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각종 유인물 및 조사표류가 조사기간 압박 수렁	○ 조사기간 7일전에 도착 조사원 및 담당공무원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도공무원 업무 중첩	○ 본조사시 업무 관련부서와 협의 전담조치
○ 요도 및 가구명부를 조사원이 작성하므로 누락될 우려가 큼	○ 요도 및 가구명부를 조사원이 준 비조사 기간에 작성 담당지역 공 무원에게 누락여부 확인후 실시 조사 실시
○ 지도원이 증점적으로 지도에 임하여야 하므로 민간인 임명 시 역량부족	○ 지도원 통, 반장 임명
○ 각종 서식 및 조사표 작성에 예시와 상세한 설명을 요함 (조사원 역량부족)	○ 교육 철저
○ 동 내검기간 연장	○ 동 내검시 조사표와 O.M.R 카드 를 정확히 대조하여야 하므로 기일 연장 조치 (10일 정도)

마. '90年 人口 住宅 總調查 最終試驗調查 結果

(1) 人口 및 家口數

구 분	인 구 수			가 구 수
	계	남 자	여 자	
89. 11. 1 상주인구조사	31,103	15,521	15,582	8,186
90. 4. 1 최종시험조사	28,941	14,338	14,603	7,899
증 감	-2,162	-1,183	-979	-267

※ 89. 10. 31 주민등록인구 29,717명
90. 3. 31 " 29,511명

○ 감소 사유

- 기존 주택의 대형상가 건축으로 철거
- 주택 철거 대상 공가 발생
- 조사대상 제외
 - 의무군, 전경
 - 특별 조사구(관광호텔)
 - 외국인
- 서비스 종사자 홍보부족 기피

(2) 居處의 種類

가. 住宅數 : 4,879

- 단독주택 : 2,225
- 아파트 : 1,241
- 연립주택 : 1,060
- 다세대주택 : 52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수 : 301

나. 住宅以外의 居處數 : 17

다. 빈집 : 38

바. 最終試驗調查上 問題點 및 改善方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사생활 관련 조사항목 질문시 응답 기피(직업, 학력, 출생지, 경제활동 등) ○ 학생(남학생)조사원 가구 방문시 신분 오해로 인한 조사원 사기 저하 ○ 조사항목이 많은데 비해 조사기간이 짧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어려움 ○ 조사원들이 조사기간중에 매일 공무원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름 날인함에 있어 불편(원거리 조사원, 주부조사원) ○ 조사원 교육후 증도 포기자 발생시 대체 인력 불가	○ 증앙 및 지방에서 대대적인 홍보 전개 ○ 조사원 가구 방문시 질문 요령 교육 철저 ○ 조사기간 연장 또는 조사원과 이기요원 분리 ○ 지도공무원의 조사구 현지 확인으로 갈등 ○ 예비조사원(이기요원) 약간명을 별도선정,교육시 참여 대기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조사원이 조사가구를 2-3회이상 방문하여 응답자 부재로 면접 불능 (맞벌이 주부 등) ○ 실시조사보다 공학판독감지(O.M.R)카드 작성이 어려움으로 조사원 불편 · 전수조사(O.M.R):20-25분 정도 · 표본조사("):30-35분 정도 ○ 조사기간중 가구원 전원 출타시 조사방법 강구	○ 근무지 직장예 통보 협조의뢰 ○ O.M.R이기 전문요원 별도확보 토록 요망 ○ 전문요원 O.M.R 이기시 부실 항목 발견시 익일 조사원에게 재조사 실시 ○ 조사방안 시달요망

14. 경상남도

가. 重點推進事項

(1) 調査員 選拔

구 분	계	성 별		신 분 별				
		남	여	통반장	공무원 가족	아파트 관리인	부녀회원	기타
계	94	38 (40%)	56 (60%)	60 (64%)	5 (5%)	3 (3%)	16 (17%)	10 (11%)
적격자	87	32	55	54	5	3	10	9
부적격자	7	6	1	6	-	-	-	1

- 선발하기 쉬운 통·반장이 대부분(64%)이며,
- 부적격자중 대부분이 통·반장임
- 공무원가족, 부녀회원이 책임감있고 성실한 편임.
- 이·통·반장에 대한 선택적 선발을 기하고, 공무원가족 부녀회원을 대다수 선발함이 바람직함

(2) 調査員 敎育

구분	소요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전 수	230분(3시간50분)	· 조사표 설명 · 조사지침서 설명 · 실 습	교관에 의한 설명
표 본	330분(5시간30분)		

- 교육시간 : 적정 48%, 길다 35%, 짧다 12%, 기타 5%
- 교육교재개생 : VTR교육 병행 바람직함

(3) 要圖 作成

작업인원	소요기간	작업내용
공무원 13명	3.29 ~ 3.30 (2일간) (실소요 : 24시간)	· 주요지형지물, 건물 · 통경개선, 가구표시 등

○ 지침서

- 공무원 : 개략작성(주요지형건물, 통경개선)
- 조사원 : 현지조사 완전작성(가구표시 등)

○ 시행 : 공무원 전부작성(조사원작성 능력부족)

○ 지침수정필요 : 공무원 완전작성, 조사원 현지보완

(4) 調査票 配付

<일자별 배부실적>

일자	계	3.31	4. 1	4. 2	4. 3	4. 4
가구수	9,865	4 ,439	3 ,453	1 ,381	395	197
% (누계)		45	35 (80)	14 (94)	4 (98)	2 (100)

○ 요도작성 지연으로 당초 준비조사기간 경과

○ 배부개시 3일동안(준비조사기간) 94% 배부

<방문 회수별 배부실적>

방문회수	계	1 회	2 회	3 회	4 회
가 구 수	9,865	6,609	2,171	789	296
% (누계)		67	22 (89)	8 (97)	3 (100)

○ 1 ~ 2회방문으로 89%, 3회방문으로 97% 배부

○ 잔여 3%는 부재가구용 봉투이용 및 관리인, 주가구에게
의뢰하는 방법 등을 강구

(5) 調査票 回收

<일자별 회수실적>

일 자	계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가구수	9,865	631	888	1,677	1,973	1,381	1,085	888	789	395	98
% (누계)		7	9 (16)	17 (33)	20 (53)	14 (67)	11 (78)	99 (87)	8 (95)	4 (99)	1 (100)

- 회수개시 4일동안 53%, 8일동안 95% 회수가능
- 가구와 조사표 회수약속 가능작기 : 조사표 배부후 3일
- 조사기간내(10일까지) 완전회수 가능

<방문 회수별 회수실적>

방문회수	계	1 회	2 회	3 회	4 회이상
가 구 수	9,865	2,861	3,255	2,466	1,283
% (누계)		29	33 (62)	25 (87)	13 (100)

- 2 회방문으로 62% 회수 가능
- 비협조가구 및 부재가구 : 3 ~ 4회 방문요함
- 가구협조 당부 홍보 강화

(6) 弘 報

홍보매체	반상회	홍보물	앰프방송 (동아파트)	신문보도	리 본
실 적	283개반	현수막4개 입간판4개	1일 2 ~ 3회	2회	400매 (조사원, 공무원)

- 단순 평면적 홍보로 주민 참여 미흡
- 전생활공간 (가정, 직장, 학교)에 입체적 홍보가 요망됨
 - TV, 라디오 전국방송, 지방대담방송, 신문보도
 - 가두캠페인, 각종 수행물배포, 학생리본
 - 각종 기관단체 임직원 홍보협조, 홍보물 설치 등

(7) 專擔 狀況室 設置 運營

기 간	장 소	상시근무자	비 치 사 항	역 할
3.29 ~ 4.25	동사무소 회 의 실	· 지도원, 실 무 공무원 · 이기, 내검요원	· 전화기 2대 · 기본도 · 상황판 등	· 조사원출근부 · 상황파악대처 · 이기내검작업

- 조사원 출퇴근, 상담 및 업무연락 등의 편의 제공
- 현지 발생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능
- 이기, 내검 등 실무작업장으로 활용

(8) 市部 統計係長 參與討論會 開催

인 원	기 간	교 육	토론회개최
28명	3.31 ~ 4. 3 (4일간)	3.31 10:00 ~ 12:00	4. 3 14:00 ~ 16:00

- 주요문제점 및 건의사항
 - 요도 작성개선 : 공무원 작성불가피
 - 지도원 담당 조사원 과다 : 지도원 확대 지정
 - 조사원 선발 : 여자 우선

나. 建議事項

(1) OMR 調査票 移記 作業 改善

○ 현황 및 문제점

· 지침상 이기 항목

구 분	개	조사원	이기요원
전수조사표	33항목	30	3
표본 "	45 "	39	6

· OMR 조사표 관리상(손상우려) 조사원에게 배부 곤란

· 조사원 이기 착오 크게 우려

○ 건의

· 지침수정 : 전부 이기 요원 및 공무원 이기

(2) 調査票 項目修正

○ 현황 및 문제점

· 표본조사표 19~21항목의 생존, 사망, 출생자녀수

- 사망자녀수의 물음은 대답기피 현상이 큼

- 출생 및 생존자녀수 조사만으로 사망자녀수 파악가능

(출생자녀수 - 생존자녀수 = 사망자녀수)

○ 건의

· 사망자녀수 항목 삭제

(3) 要圖의 事前作成

○ 현황 및 문제점

- 요도를 준비조사 임박 배부 : 준비조사 차질
- 조사원 교육시 요도 미배부 : 요도작성 보완 차질우려

○ 건의

- 요도 조기 배부 : 읍·면·동(준비조사이전 10~15일정도)
- 요도작성 : 공무원
- 조사원 교육시 배부 : 요도보완작성요령 설명

15. 제주도

가. 重點推進事項

(1) 優秀調査員 選拔 採用

○ 채용현황 : 23명(남자 22, 여자 1)

· 현지 관내실정에 밝고 평상시 가구주와 친근감이 있는 자

선발 채용

- 통장 17명, 학생 3명, 가정주부 1명, 유경험자 2명

- 연령별 20대 4명, 30대 6명, 40대 12명, 50대 1명

(2) 調査員 및 指導員 敎育

○ 단계별 교육 실시

단계별	일 정	장 소	참 석 범 위	강 사
1 단계 (중앙교육)	'90. 3.27	도청회의실	· 도시군통계담당 공무원 · 동장, 사무장 동실무자	경제기획원
2 단계 (도 단 위)	'90. 3.28	시청회의실	· 시통계담당공무원 · 동장, 사무장 동실무자	제 주 도
3 단계 (시 단 위)	'90. 3.29	동사무실	· 동장, 사무장 동실무자 · 지도원 및 조사원	제 주 시
4 단계 (동 단 위)	'90. 3.30	동사무소	· 지도원 및 조사원	일도 1 동

(3) 住民啓導 및 弘報

- 시험조사 대상지역이 한정된 지역임을 감안, 전단, 홍보물, 반상회, 기타 집회를 통한 증점홍보
 - 통장 대책회의 개최, 사전계도
 - 3월 반상회를 통한 홍보 : 특별전단 제작 배포
 - 마을앰프 방송 및 아파트 구내방송 : 1일 2회 실시
 - 이동 순회 차량이용, 가두방송 실시 : 차량 1대
 - 프랭카드 현수막, 입간판 설치

나. 實施結果 問題點 및 對策

(1) 조사원의 조사요령 미숙으로 조사의 부정확성 초래

○ 문제점

현행과 같이 조사원 대하여 교육 1회로써는 현지조사에 임하였을 때 조사내용을 완전히 숙지않는 상태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지도원 및 공무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었음.

○ 개선대책

준비조사기간중 현지 실습교육은 물론 본 조사기간중에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의문사항을 서로 교환하고 조사가 잘못되는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

(2) 調査員 要圖作成 細部指針이 없어 要圖作成 未治

○ 문제점

조사지침서에는 조사구 요도작성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도
기관과 실시기관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였음

○ 개선대책

조사원 교육 조사지침서에 조사구 요도작성 지침을 삽입하여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조사요령 교육시 병행교육 실시 요망

(3) 準備 調査期間이 短期間으로 準備事項 疏忽

○ 문제점

준비 조사기간 3일 동안에 조사경계 확인, 가구명부 작성, 조사
구 요도작성, 조사표 배부하는데 기간이 부족함으로 탁상에서
작성할 우려가 있음.

○ 개선대책

- 현행 준비 조사기간을 예산이 허락 범위내서 5일간으로 연장
요망
- 불가시 내검일정을 조정 5일로 연장,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요망

(4) 家口 訪問回收 頻煩으로 調査 拒否感 發生

○ 문제점

조사구 요도작성을 위한 가구방문, 가구명부 작성을 위한 가구방문, 조사표 배부 및 회수를 위한 가구방문 빈번으로 조사에 거부 및 비협조사례 발생

○ 개선대책

조사구 요도작성과 가구명부 작성은 준비기간내에 가구방문시 한번에 작성하고 본 조사시에 조사표 배부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한 가구는 직접면담(타계식 방법)에 의하여 조사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계식에 의해 조사 실시

(4) 調査指針書上 調査項目과 關聯된 事項란의 內容説明이 없으므로 關聯事項 把握 困難

○ 문제점

조사표 내검 요령서에서는 조사항목과 관계사항란의 내용설명이 되어 있지만 조사지침서에는 조사표상 항목간의 관련된 사항 설명 내용이 없어 현장에서 조사표를 확인할 때 조사표상의 항목간의 불일치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치 못하므로써 재방문 조사하는 등 내검과정에서 전화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

" 例 " 모든 가구의 주거에 관한 사항, 조사항목 4번의 사용방수란과 주택에 관한 사항 조사항목 18번의 총방수란 관련된 내용 설명이 지침서에 없음

○ 개선대책

조사지침서에 조사표 항목란의 관련된 사항 내용설명을 추가하여 조사원 교육시 주지 요망

(6) 調査方法 改善할 事項

○ 문제점

조사표 배부후 가구주에 의한 자계식 방법에 의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현지 주민 의식수준으로는 기재누락, 오기 등 부실기재로 조사표 작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심지어 조사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여러차례 조사가구를 방문하여야 함

○ 개선대책

조사표 배부 방문시 응답자가 있는 가구는 직접 타계식 방법에 의해 조사하고 부재시만 자계식 방법을 이용 조사 실시
즉, 자계식과 타계식 병행 실시 요망

7. 調査票 改善할 事項

○ 문제점 (1)

전수 조사표상 5번 출생지 조사항목의 질문내용중 『다른 구시군 일 경우 출생당시 행정구역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에 있어서 응답3란의 다른 구시군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자계식일 경우 대부분 행정구역 변경전의 시도, 구시군 명칭으로 오기

○ 개선대책

조사항목 5번 질문내용중 『다른 구시군일 경우, 출생당시 행정구역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를 『다른 구시군일 경우 출생당시의 " 현행 " 행정구역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로 알기 쉽게 표기 변경 요망

○ 문제점 (2)

전수 조사표상 9번 출발, 도착시각 조사항목의 질문내용중 응답란의 도착시각은 집에 퇴근하여 돌아온 시각으로 착오 기재한 사례가 많음

○ 개선대책

응답란 『도착시각』란을 『직장 또는 학교에 도착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표 표기 변경 요망

○ 문제점 (3)

표본조사상 15번의 산업 조사항목의 응답내용중 『주된 사업내용』과 17번 직업조사항목의 응답내용중 『맡은 일의 종류』를 혼동하여 작성하거나 동일하게 표기한 사례가 있음

○ 개선대책

객관적으로 알기쉽게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란에 여러 가지를 예시하던가 응답내용란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표기 요망

3-21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최종시험조사

현지 조사표 내검 요령서

1990. 4.

홍, 조, 하, 나, 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최종시험조사

현지 조사표 내검 요령서

1990.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 단계별 내검과정

가. 제 1 단계 : 일반조사표의 내용검토

- 1) 조사표 내검도중 기재누락이나 중복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기재되지 않아도 될 항목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정정하도록 한다.
- 3)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항목에 기재누락, 중복기재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책임자는 현지방문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일반조사표 내용이 수정완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일반조사표의 기재내용상의 정정은 반드시 적색볼펜을 사용하되 다 음요령으로 정정한다.

가) 글자정정

삭제할 글자에 복선 (=)을 긋고 상단에 기입한다.(성명, 산업, 직업, 주소등 한글 기재내용)

나) 숫자표시 정정

착오 기입된 번호에는 해당란에 복선 (=)을 긋고 정확한 번호에 ○표시를 한다.

(성별과 같이 해당내용에 표시(○)해야 할 항목)

다) 부호정정

전문이기 요원에 의해 분류된 부호가 잘못되 있을 경우 해당부호에 복선 (=)을 긋고 그 상단에 정확한 부호를 기입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만 1년전 거주지, 만 5년전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라)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가구의 OMB조사표의 내용도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OMR 조사표의 수정요령은 조사지침서의 OMB 조사표 작성요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완료되면 일반조사표 표지에 검사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나. 제 2 단계 : 이기의 정확한 검토

1) 일반조사표의 내용이 OMR 조사표에 정확히 이기되 있지 않을 경우 일반조사표의 기재내용대로 OMR 조사표 내용을 정정한다.

2) OMR 조사표의 Mark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Error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Mark 표시 요령에 의해 수정·보완한다.

3) OMR 조사표의 내용정정은 반드시 컴퓨터용 지우개에 의하여 깨끗이 지우고, 지우개가루가 OMR 조사표에 묻어 있지 않도록 한다.

다. 제 3 단계 : OMR 조사표 내용검토

○ OMR 조사표의 분류번호 및 분류부호 단위가 십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상위단위에는 반드시 “0”이 Mark 되 있어야 한다.

라. 제 4 단계 : OMR 조사표의 훼손상태

- 다음과 같이 훼손된 OMR 조사표가 발견되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OMR 조사표에 훼손된 OMR 조사표 내용전체를 정확하게 재이기 한다. 재이기후 책임자는 훼손된 OMR 조사표를 회수하여 조사표제출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OMB 조사표가 습기에 젖어 있다.

나) 조사표의 4 각이 손상이 되어있거나, 주름이 접혀있다.

다) 조사표에 구멍뚫림 (지철기사용) 이 있다.

라) 클립이나 지철기가 사용되었다.

마) 조사표에 셀룰로이드 테이프, 라벨, 풀 등이 붙어있다.

바) 먼지, 기름, 물방울 등의 오염물이 붙어있다.

마. 제 5 단계

-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완료되면 일반조사표 표지에 내용검사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바. 기 타

- 일반조사표 내용의 중복, 누락, 오기된 상태는 수정·보완후 내검 상황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 일반조사표 내용검사

가. 편철 확인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명 및 조사구번호와 실제 조사표의 행정구역명 및 조사구번호가 일치되게 편철되었나를 검토한다.

나. 조사표 매수 확인

- 1) 가구명부상의 조사표 매수,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수 등이 조사

표 내용과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정정한다.

2) 조사표 표지의 조사표 매수, 가구수와 실제 조사표 매수 및 가구 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일반가구에 동거가구원 또는 하숙인등이 6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별도의 가구로 분리 작성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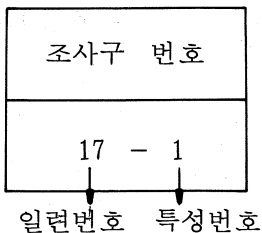
다. 란외 기재사항

1) 가구 주소

통반 번지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었나를 검토하고 미 기재된 경우 가구명부 등을 참고로하여 기입해 넣는다.

2) 조사구 번호

조사구 번호는 조사구 일련번호와 특성번호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사표 표지 및 가구명부를 참조로 하여 기입해 넣는다.



3) 거처번호

가) 조사표는 거처 및 가구일련번호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한개의 거처내에 여러가구가 있을 경우 거처번호는 같다.

나) 하나의 거처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주가구는 반드시 동거가구보다 앞에 철해야하고 가구일련번호도 맨 앞번호가 부여되

어 있어야 한다.

다) 동거가구인 경우 가구명부상에는 거처 번호난이 사선 「 \ 」이지
만 조사표에는 반드시 거처 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4) 가구번호

가) 가구번호도 일련번호로 되어있어야 한다.

나) 누락, 중복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수정한다.

다) 가구명부의 마지막 가구번호와 조사표의 마지막 가구번호가 일치
해야 한다.(다만 중간에 누락·추가·전입·전출등의 사유로 결번
이 있을 수 있다)

5) 조사표 매수 (조사표 총매수중 일련번호)

가) 조사표 매수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구마다 몇 매중
몇매로 기입되어야 한다.

나)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매중 매 표시가 정확하게 기입되
었는지 검토한다.

특히 집단가구인 경우 정확하게 검토하여 누락, 훼손 등이 있나
를 확인한다.

6) 총가구원수

가) 총가구원수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총조사표매수와 총가구원수를 비교하여 다음 기준에 맞지않은 경
우는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가구명부를 참고하여 확인수정한다.

총조사표매수	총가구원수
1	1~ 5
2	6~ 10
3	11~ 15
4	16~ 20
⋮	⋮
80	396~ 400

라. 인구에 관한 사항

1) ① 성 명

가) 조사표상에 대상자의 성명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4.1 이후 출생자는 제외됨으로 삭제하고 행번호를 정정한다.

특히 0 세인 경우는 삭제 여부를 생년월일과 비교 검토한다.

2) ② 가구주와의 관계

가) “가구주”가 가구원 일련번호 01 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가구주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예 : 가구주, 처 (배우자), 장남, 장남의 장남 등

다) 일반가구내에서는 동거인이란 표시가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기사, 정원사, 영업사용인 등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구주와의 관계가 애매한 것은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한다.

3) ③ 성 별

남, 여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표시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누락

된 경우 성명과 가구주와의 관계란 등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불가능시는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한다.

예 : 가구주 (남자) 의 처제이면 ② 여자로 표시

4) ④ 나 이

가) 세는나이, 출생년도, 띠중 1개 이상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개 항목의 기재 내용이 상호 불일치된 내용일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한다.

나) 생일과 음·양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90.4.1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으로 삭제한다.

라) 만나이는 조사표의 만나이 환산표에 의하여 정확히 환산되어 있나를 확인한다.

5) ⑤ 출생지

가) 모든 사람이 ①, ②, ③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시 되어있어야 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③에 표시된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별 또는 외국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구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예 : 울산시는 시도명에 경남, 구시군명에 울산시의 「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이북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6) ⑥ 교육정도

가) 만 5세 이상자는 반드시 ①-⑦중 하나에 ○표시 되어있고 졸업, 재학, 중퇴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안다냈음에 ○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졸업, 재학, 중퇴에 표시가 없어야 한다. 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한다.

나) 만 5세 미만자 (1985.4.1 이후 출생자)는 사선 「 \ 」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만나이 항목과는 다음 표를 참조하여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처리한다.

연령과 학력과의 비교표

학 력 별	졸 업 연 령	재 학 연 령	중 퇴 연 령
1. 국민학교	만 11 세이상	만 5 세이상 - 만 12 세미만	재학연령 참조
2. 중 학 교	만 14 "	만 11 " - 만 15 "	
3. 고등학교	만 17 "	만 14 " - 만 18 "	
4. 전문대	만 19 "	만 17 " - 만 20 "	
5. 대학교	만 21 "	만 17 " - 만 24 "	

7) ⑦ 통근통학여부

가) 만 12세 이상자는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기재 누락이 되었을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나) ⑥ 교육정도란에서 ② 재학, ⑭ 경제활동상태란에서 취업자로 표기된 사람 (① ~ ⑤)은 ① 한자로 표기하되 취업자 중 ⑮ 산업, ⑰ 직업란에 논밭에서 일한다. 나의 집에서 일한다 등으로 기재된 농업 종사자, 가내 기업경영자 및 가족 종사자 등은 ② 안한다로 처리한다.

다) ② 안한다에 표시된 사람은 ⑧, ⑨, ⑩ 단에 사선 「 \ 」 표시 되어

야 한다.

라) 만 12 세 미만자는 ⑦ ~ ⑩ 란에 사전「\」표시 되어야 한다.

8) ⑧ 직장 또는 학교 (원) 주소

가) ⑦ 통근·통학여부에 ① 한다면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② 다른 동읍면일 경우 반드시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동읍면 이름 대신 학교나 직장 이름이 기재 되었거나 동읍면 이름이 기재 누락되었을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하고 정확한 동명을 알 수 있는 경우 기입해 넣는다.

다) ⑦ 통근·통학여부란에 ② 안한다로 되어 있는 경우 이란은 사전「\」표시 되어야 한다.

9) ⑨ 출발도착시간

가) ⑦ 란에 ① 한다면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나)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10) ⑩ 이용교통수단

가) ⑦ 통근·통학여부란에 ① 한다면 기재된 경우 반드시 ① - ⑩ 사이에 ○표시 되어야 한다.(2 개이상 ○ 표시 가능)

나) 기재 누락되었을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11) ⑪ 혼인상태

가) 만 15 세 이상자는 반드시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야 하며 15 세 미만자는 사전「\」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연령, 출생아수 등과 비교 검토하여 불합리한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한다.

(예 : ㉑ 미혼으로 ㉒란 또는 ㉓ - ㉔ 란 기재인 경우 불합리,

가구주와 관계에서 가구주의 처, 배우자, 부모 등 기혼자임

이 밝혀진 경우로서 ㉑ 미혼인 경우 불합리 등)

다) 교육정도가 국제, 중재, 고재이면서 혼인상태가 ㉒, ㉓, ㉔ 인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2) ㉒ 1년전 거주지

가) 만 1 세 이상자는 반드시 ㉒, ㉓, ㉔ 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만 1 세 미만자 (1989. 4. 1 이후 출생자) 는 반드시 사선「 \ 」표
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㉒에 표시된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별 또는 외국명이 반드시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 등은 구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 울산시는 시도명에 경남, 구시군명에 울산시「 구명 」이 기재되
어 있어야 한다.

13) ㉓ 5년전 거주지

가) 만 5 세 이상자는 반드시 ㉒, ㉓, ㉔ 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만 5 세 미만자 (1985. 4.1 이후 출생자) 는 반드시 사선「 \ 」표
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㉓에 표시된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별 또는 외국명이 반드시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 등은 구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 울산시는 시도명에 경남, 구시군명에 울산시「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4) ⑭ 경제활동상태

가) 만 15 세이상자는 모두 ⑪-⑩ 항목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있어야 하며 만 15 세 미만자는 ⑭ 경제활동상태란에서 ⑳ 총출생자녀수란까지 모두 사전「\」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⑭ 란에서 ⑪ 에서 ⑤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⑮ 산업과 ⑰ 직업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⑤-⑩ 에 해당되면 ⑮ 산업 - ⑰ 직업란에 사전「\」표시 되어야 한다.

다) 단, 군인인 경우에는 ⑭란 ⑪에 ○표시하고 ⑮란에 “군인”이라 표시되며 ⑮, ⑰ 직업란은 사전「\」표시 되어있어야 한다.

라) 기재요령과 맞지 않은 경우 바르게 정정하고 기재 누락인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마) ⑥교육정도에서 ②재학중인 자는 ⑭란에서 “⑦학교(원)에 다녔다”에 해당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틈틈히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등을 참고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15) ⑮ 산업

가) ⑮ 란에서 ⑪-⑤에 표시된 경우에만 기입한다.

나) 취업자가 경영하는 사업내용 또는 직장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기 위해서 묻는 항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주된 사업내용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즉 상품을 만드는 곳인지, 파는 곳인지, 주된 취급상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입되어야 한다.

(예 : 포복소매상, 화장품 소매상, 한국음식식당, 책상을 만든다등)

라) 직장이름은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 회사, 공장이름이 쓰여 있어야 한다.(현대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성사 등)

마) 영외거주 군인, 방위소집자,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주된 사업내용란에 군인, 방위소집자, 방위산업체 등으로만 기입하고 ⑯종사상지위 ⑰직업란은 사전「\」표시 해도 무방하다.

16) ⑯ 종사상의 지위

가) ⑯산업의 주된 사업내용이 기재된 사람은 반드시 ①-④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시 되어야 한다.

나) 한가구내에 ② 고용원 없는 사업주 없이 ③ 무급가족 종사자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므로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다)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영업사용인, 머슴, 점원 등이 있으면서 가구주 등이 취업자인 경우 이란에서는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로 표기되어야 함으로 불합리한 경우는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라) ⑰란에서 부서 직책이 있는 경우 ④ 임금, 봉급 근로자 이므로 상호 비교하면 불일치된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마) 기재누락된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처리 한다.

17) ⑰ 직업

가) 부서 직책은 ⑯란에서 ④ 임금 봉급근로자인 경우 기재되며 미

상 또는 모름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나) ⑮, ⑯란에 기재된 사람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소분류까지 분류가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예 : 양품점에서 물건을 판다. 경리사무를 본다. 논에서 벼를 베었다. 일을 분담해 주고 제품을 검사한다. 회사경영을 총괄한다 등)

다) ⑯란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로 기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리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라) ⑭, ⑮, ⑯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기재 누락된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처리 한다.

마) 직업과 연령을 비교 검토하여 다음 직업 중분류별 연령수준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직업 중분류별 연령수준표

중분류 번 호	중 분 류 명	연 령 수 준
01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19 이상
02/03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기술공	"
04	항공기 및 선박 고급승무원	24 이상
05	생명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19 이상
08	통계학자, 수학자, 체계분석가 및 관련기술공	"
09	경제학자	24 이상
11	회 계 사	19 이상

중분류 번 호	중 분 류 명	연 령 수 준
12	법무 종사자	"
13	교 원	"
15	저작자, 언론인 및 관련작가	"
20	입법공무원과 정부 관리직공무원	29 이상
21	관 리 자	24 이상
30	사무원 감독자	19 이상
31	정부 행정공무원	"
33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종사자	"
34	계산기 조작원	"
35	운수 및 통신사업감독자	"
37	우편물 취급 사무원	"
38	전화 및 전신기 조작원	"
40	도소매 관리자	"
44	보험, 부동산, 증권과 기업서비스 판매원 및 경매원	"
50	요식숙박업관리자	"
58	보안업무관리자	"
60	농장관리자 및 감독원	"
70	생산감독	"

18) ⑱ 혼인연령

가) ⑪혼인상태란에서 ②-④ 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⑪혼인상태란에서 ①인 경우 사전「\」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결혼 당시의 나이가 만 15 세 미만인 경우, 총출생아수 등을 참

고로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다) 기재 누락인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 처리한다.

19) ⑲ 생존자녀수, ⑳ 사망자녀수, ㉑ 총 출생자녀수

가) ⑱란에 기재자 중 여자 (만 15 세이상 기혼여자) 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때 출생아가 없을 경우 각 항목별로 0
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사전「\」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총 출생자녀수는 부인이 낳은 총 출생자녀수로서 현재 같이 살

고있는 생존자녀수와 외지에 나가 살고있는 생존자녀수, 그리고

사망한 자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총 출생자녀수,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남녀 구분 합계가 일치되

어 있어야 한다.

라) 혼인연령 등과 비교하여 결혼기간이 오래됐는데도 총출생아수가

없거나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의 합계가 총 출생자녀수와 불일

치된 경우 책임자에게 문의한다.

마) 모의 연령 (만 15 세이상 기혼여자만 해당) 과 출생아수를 비교

다음과 같지 않을 경우 (출생아수가 쌍둥이가 아닌 경우 일단 불합리

한 것으로 본다)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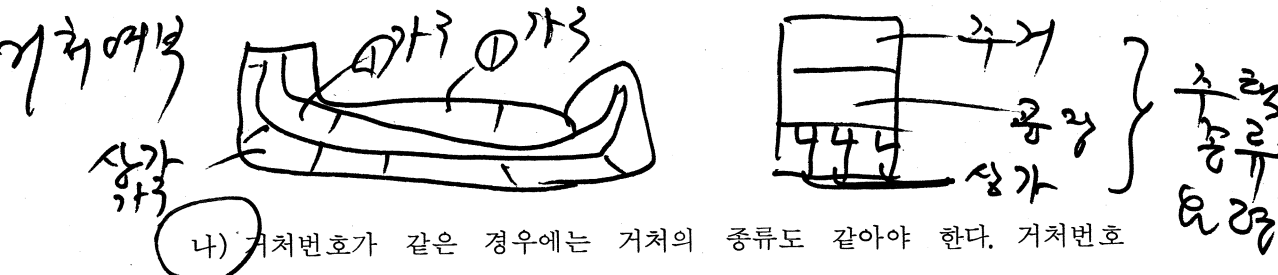
모 의 연 령	출 생 아 수
15 ~ 16 세	1 명 이하
17 ~ 18 세	2 "
19 ~ 20 세	3 "
21 ~ 22 세	4 "
23 ~ 24 세	5 "
25 ~ 26 세	6 명 이하
27 ~ 28 세	7 "
29 ~ 30 세	8 "
31 ~ 32 세	9 "

마. 주거에 관한 사항

- 이란은 모든 가구가 조사대상이다.
- 모든 가구 에서 ①란 ②란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②란에서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질문항목 ③~②④란까지 사전「, 」이다.
- ② 가구 구분에서 ①, ②에 해당되면 ③~①③, ②③, ②④ 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가구당 조사표 매수가 2 매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장부터는 ①란에서 ②④까지의 전란을 모두 사전 「\」 표시된다.

1) ① 거처의 종류

가) ①란 ~ ①① 란중 어느 한란에 반드시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거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거처의 종류도 같아야 한다. 거처번호가 같은데 거처의 종류와 주거, 동거가구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2) ② 가구의 구분

가) ① ~ ③항중 하나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① 주거가와 ② 동거가구에 해당되면 ③~⑬, ⑳~㉔란까지 모두 조사되어 있어야 한다.

다) ③란 집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는 ③란이하 ㉔란까지 모두 사전 「\」이다.

3) ③ 주택의 점유형태

가) ① 주거전용 ② 영업겸용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은 ① 자기집 ~ ⑤ 무상중 하나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하고 ① 자기집 또는 ⑤ 무상에 해당되면 ㉓ 임차료에 「\」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 ② 전세에 ○표시 되어 있으면 ㉓란의 전세 및 보증금란에 전세 금액을 표시하고, 월세란에는 000 표시한다.

라) ④ 월세 (사글세)에 ○표시 되어 있으면 ㉓란의 월세에 월세 금액을 표시하고, 전세 및 보증금란에는 000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 ③ 보증부월세에 ○표시 되어 있으면 ㉓란의 전세 및 보증금란에 보증금을 표시하고, 월세란에는 월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④ 사용방수

가) ①란에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⑥ ~ ⑩에 ○ 표시
되어 있고, ②의 ①, ②에 표시된 가구는 반드시 사용방수가 있어야
한다.

나) 같은 거처내의 모든 가구의 사용방수 합계는 주택의 주가구의
총방수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다) 기재 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⑤ 식수의 종류

가) ④란에 기재된 가구는 반드시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야 한다.

나) ⑥ 기타인 경우에는 일반조사표에 식수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 기재 누락인 경우에는 주거에 관한 사항란의 상수도 시설을 참
고로 기입하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⑥ 취사연료

가) ①란의 ① ~ ⑩, ②란의 ①, ②에 표시된 가구는 반드시 ① ~
⑥ 란중 하나에만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재 누락인 경우에는 ⑦ 난방시설란을 참고로 하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7) ⑦ 난방시설

가) ① ~ ⑦란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⑦ 기타에 ○표시된 경우에는 시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8) ⑧ 문화시설 및 가재

가) ① ~ ⑨란중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① ~ ⑨ 란의 모든 항에 ○ 표시될 수가 있다.

나) 조사표란의 사항의 주소란에 전화번호 기입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다) ① ~ ⑨란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가구는 사전 「\」 표시된다.

9) ⑨ 전용시설

가) 각 전용시설 (부엌시설, 화장실시설, 출입구시설) 별로 해당내용 하나에만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재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0) ⑩ ~ ⑬ 시설형태

가) 각 시설형태별로 해당내용 하나에만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재누락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바. 주택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① 의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되면서 ③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즉 주택에 살고 있는 주가구의 조사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⑭ ~ ⑳ 까지 사전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기타에 ○ 표시된 경우는 기타 사유가 기입된 경우 별지에 적어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⑭ 외벽재료, ⑮ 지붕재료

가) 주택에 관한 사항의 기재 대상 가구는 ① ~ ⑥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 표시된다.

나) 외벽재료와 지붕재료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경우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1) 외벽재료가 적벽돌이면서 지붕재료가 짚이나 갈대인 경우
- (2) 외벽재료가 철근콘크리트이면서 지붕재료가 함석, 슬레이트, 짚, 갈대인 경우
- (3) 외벽재료가 나무이면서 지붕재료가 슬라브인 경우
- (4) 외벽재료가 흙, 흙벽돌이면서 지붕재료가 슬라브인 경우

다)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이면서 지붕재료가 짚, 함석, 슬레이트인 경우와 외벽재료가 나무 또는 흙인 경우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지붕재로는 슬라브, 외벽은 벽돌 또는 철근 콘크리트인가를 검토한다.)

2) ⑯ 연건평

다음과 같이 관련항목에 불합리한 점이 있나 검토하고 발견될 시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100 평 이상인 경우
- 연건평을 거주가구수로 나누어 가구당 평균 건평수가 2평미만인 경우
- 50 ~ 70 평으로서 총방수가 1개인 경우
- 70 ~ 99 평으로서 총방수가 2개이하인 경우
- 연건평이 총방수의 수치보다 작을 경우

3) ⑰ 대지면적

다음과 같이 관련항목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나 검토하고 발견될

시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가) 단독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연건
평보다 적은 경우

나) 아파트로서 대지면적이 연건평보다 크거나, 총방수보다 작은 경우

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을 적되 관리자에게 물어 일괄 기입토록
했으나 미상인 경우도 간혹 있음 (예 : 사원아파트, 군인아파트등)

라) 대지면적이 150 명 이상인 경우는 총방수, 거주가구수와 비교하
여 기입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⑱ 총방수와 ⑲ 거주 가구수

가) 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거주 가구수와 사용방수의 합계를 상호
비교 검토하고 착오가 있을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나) 한 거처내에 10 개이상 동거가구가 있는 경우 주거에 관한 사
항 ①란의 거처의 종류를 검토를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다) 주거에 관한 사항①란의 거처 종류에서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인
경우 동일 주택에 3 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책임자에게 보
고한다.

5) ⑳ 건축년도

①-⑩ 중 어느하나에 반드시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6) ㉑ 편의시설수

가) 부엌

①-④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화장실

①-④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출입구

①-④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7) ㉒ 거주가능 가구수

가) ①-⑥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가구를 포함한 동거가구수를 합계한 가구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다) 불합리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8) ㉓ 임차료

가) ① 거처의 종류 및 ② 가구구분의 ①, ②에 기재되어 있고,

③ 점유형태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사글세)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③ 점유형태에서 ② 전세에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 및 보증금란에 전세금액을 표시하고, 월세란에는 000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③ 점유형태에서 ④ 월세 (사글세)에 ○표시되어 있으면 월세란에 월세금액을 표시하고, 전세 및 보증금란에는 000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 ③ 점유형태에서 ③ 보증부월세에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 및 보증금란에 보증금을 표시하고, 월세란에는 월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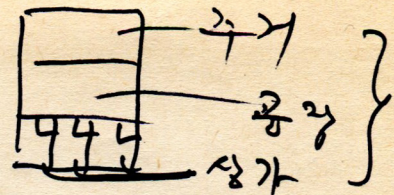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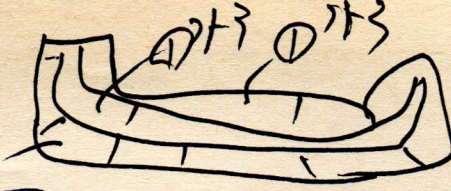
9) ㉔ 한달평균소득

가) ①-⑨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재누락된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거처번호

상가
가구



주거
공공
상가
가구

나) 거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거처의 종류도 같아야 한다. 거처번호가 같은데 거처의 종류와 주거구, 동거가구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2) ② 가구의 구분

가) ① ~ ③항중 하나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① 주거구와 ② 동거가구에 해당되면 ③~⑬, ⑲~⑳란까지 모두 조사되어 있어야 한다.

다) ③란 집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는 ③란이하 ⑳란까지 모두 사선「\」이다.

3) ③ 주택의 점유형태

가) ① 주거전용 ② 영업겸용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은 ① 자기집 ~ ⑤ 무상중 하나에 ○표시 되어 있어야 하고 ① 자기집 또는 ⑤ 무상에 해당되면 ⑳ 임차료에 「\」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 ② 전세에 ○표시 되어 있으면 ⑳란의 전세 및 보증금란에 전세 금액을 표시하고, 월세란에는 000 표시한다.

라) ④ 월세 (사글세)에 ○표시 되어 있으면 ⑳란의 월세에 월세 금액을 표시하고, 전세 및 보증금란에는 000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 ③ 보증부월세에 ○표시 되어 있으면 ⑳란의 전세 및 보증금란에 보증금을 표시하고, 월세란에는 월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④ 사용방수

3-54

1990年 人口 住宅 總調查
最終試驗調查結果表

1990. 5.

37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90年 人口 住宅 總調查
最 終 試 驗 調 查 結 果 表

1990. 5.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次 例

I . 最終試驗調查 結果表數 比較..... 3

II . 最終試驗調查 結果表名 目錄..... 4

III . 最終試驗調查 結果表 樣式..... 8

I. 最終試驗調查 結果表數 比較

結 果 表 名	最終試驗調查 結 果 表 數	金泉示範調查 結 果 表 數	金泉示範調查 對備 增減 結果表數
計	98	50	+ 48
가. 人口에 關한 結果表	5	5	0
나. 家口에 關한 結果表	19	7	+ 12
다. 住宅에 關한 結果表	14	10	+ 4
라. 出産力에 關한 結果表	7	4	+ 3
마. 人口 移動에 關한 結果表	30 *	14	+ 16
바. 經濟活動에 關한 結果表	8	8	0
사. 所得에 關한 結果表	15	2	+ 13

※ 1. Ⅱ. 最終試驗調查의 結果表名에 밑줄이 그어진 結果表(48個 結果表)는 새로이
作成된 結果表이며, 나머지 50個 結果表는 金泉示範調查時 이미 製表된
結果表임

2. 外國人은 이번 調查對象에서 除外되었으므로 外國人과 關聯된 結果表는 除外
되었음.

Ⅱ. 最終試驗調查 結果表名 目錄

가. 인구에 관한 결과표 : 5개 표

- 제 1표. 행정구역별 가구 및 인구
- 제 2표. 행정구역, 연령(각세, 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 제 3표. 행정구역, 연령,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 (만 15세 이상)
- 제 4표. 행정구역, 연령, 성 및 교육정도별 인구 (만 5세 이상)
- 제 5표. 행정구역, 가구주와의 관계,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 (만 15세 이상)

나. 가구에 관한 결과표 : 18개 표

- 제 1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연령, 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 (일반가구)
- 제 2표. 행정구역, 가구의 크기, 인구, 핵가족수별 가구(일반가구)
- 제 3표. 행정구역,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일반가구)
- 제 4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연령별 가구 (일반가구)
- 제 5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 (일반가구)
- 제 6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교육정도별 가구 (일반가구)
- 제 7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직업(대분류)별 가구 (일반가구)
- 제 8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전세금별 가구(일반가구, 주거전용)
- 제 9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월세금별 가구(일반가구, 주거전용)
- 제 10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월세금 및 보증금별 가구(일반가구, 주거전용)
- 제 11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전세금별 가구(일반가구, 영업겸용)
- 제 12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월세금별 가구(일반가구, 영업겸용)
- 제 13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월세금 및 보증금별 가구(일반가구, 영업겸용)
- 제 14표. 행정구역,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 제 15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가구원수 및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 제 16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식수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 제 17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취사연료 및 난방시설별 가구(일반가구)
- 제 18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 제 19표.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보유가구(일반가구)

다. 주택에 관한 결과표 : 14 개표

- 제 1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거처, 가구, 핵가족 수 및 가구원
 제 2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건축재료(외벽재료, 지붕재료) 및 건축연도별 주택
 제 3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외벽재료 및 지붕재료별 주택
 제 4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주택
 제 5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거주가구, 가구원수 및 총방수별 주택
 제 6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
 제 7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인 수별 주택
 제 8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전용시설 및 시설형태별 주택
 제 9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난방시설별 주택
 제 10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대지면적별 주택
 제 11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전용시설 및 편의시설별 주택
 제 12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편의시설별 주택
 제 13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능가구수별 주택
 제 14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거주가능가구수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

라. 출산력에 관한 결과표 : 7 개표

- 제 1표. 행정구역, 연령 및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별 부인
 제 2표. 행정구역, 연령 및 기혼여성의 생존아수별 부인
 제 3표. 행정구역, 모의연령, 교육정도 및 출생아수별 부인
 제 4표. 행정구역, 연령 및 혼인연령별 기혼여자
 제 5표. 행정구역, 연령 및 혼인연령별 기혼남자
 제 6표. 행정구역, 모의연령 및 혼인연령별 출생아
 제 7표. 행정구역, 모의연령 및 혼인상태별 적생아

마. 인구이동에 관한 결과표 : 30 개표

- 제 1표. 현거주지, 출생지, 성 및 연령별 이동인구
 제 2표.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성 및 연령별 이동인구 (만1세 이상)
 제 3표.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성 및 연령별 이동인구 (만5세 이상)
 제 4표.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 이상)
 제 5표.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 이상)

제 6표.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 이상)

제 7표.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현거주자,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 이상)

제 8표. 교육정도, 현거주지 및 1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5세 이상)

제 9표. 교육정도, 현거주지 및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5세 이상)

제10표. 연령, 혼인상태,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 이상)

제11표. 연령, 혼인상태,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 이상)

제12표. 대도시 이용교통수단 및 성별 통근·통학인구 (만12세 이상)

제13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제14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제15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제16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제17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제18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전라북도)

제19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충청북도)

제20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강원도)

제21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제주도)

제22표. 행정구역 및 출발·도착 시간대별 통근·통학 인구 (만12세 이상)

제23표.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별 통근인구 및 이용교통수단 (만15세 이상)

제24표.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별 통근인구 및 이용교통수단 (만15세 이상)

제25표. 현거주지, 이용교통수단별 이용교통소요시간 (만12세 이상)

제26표. 가구주의 현거주지, 소득계층 및 이용교통수단별 이동인구 (만12세 이상)

제27표. 현거주지, 이용교통수단, 성 및 연령별 인구 (만12세 이상)

제28표. 대도시, 성별 상주(야간)인구 및 주간인구

제29표. 행정구역, 가구의 규모 및 성별 통근·통학 인구 (만12세 이상)

제30표. 행정구역, 점유형태 및 가구주의 이용교통수단별 이동인구 (만12세 이상)

바. 경제활동에 관한 결과표 : 8개 표

- 제 1표. 행정구역,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제 2표. 행정구역,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및 성별 취업자
- 제 3표. 행정구역, 성,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 제 4표. 행정구역, 성, 산업(대분류) 및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 제 5표. 행정구역, 성, 직업(대분류) 및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 제 6표. 행정구역, 산업(소분류), 직업(소분류), 교육정도 및 성별 취업자
- 제 7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가구원수 및 경제활동인구수별 가구(일반가구)
- 제 8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사. 소득에 관한 결과표 : 15개 표

- 제 1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령, 종사상의 지위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2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교육정도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3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가구원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4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사용방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5표. 행정구역, 주택의 점유형태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6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7표. 행정구역, 세대구성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8표. 행정구역, 문화시설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9표. 행정구역, 시설형태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10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11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12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경제활동인구, 가구원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 제 13표. 가구주의 출생지, 현거주지 및 소득계층별 이동가구(일반가구)
- 제 14표. 가구주의 1년전 거주지, 현거주지 및 소득계층별 이동가구(일반가구)
- 제 15표. 가구주의 5년전 거주지, 현거주지 및 소득계층별 이동가구(일반가구)

Ⅲ. 最終試驗調查 結果表 樣式

가. 인구에 관한 결과표

제1표. 행정구역별 가구 및 인구

행정 구역	총 인 구		한 국 인								기 타			
			인 구		일 반 가 구			집 단 가 구			가 구	일 반 가 구		
	가 구 원				가 구 원		가 구 원		가 구 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 국 (1470개조사구)	서울시 (180개조사구)												충청남도	
	창천동 (61개 ")												은양1동 (58개조사구)	
	잠실7동 (55개 ")													
	영등포3동(64개 ")												전라북도	
	부산시 (157개조사구)												창원동 (30개조사구)	
	수영동 (97개 ")												전라남도	
	연산6동 (60개 ")												동명동 (90개조사구)	
	대구시												경상북도	
	신암3동 (91개조사구)												죽도2동(138개조사구)	
	인천시												경상남도 (171개조사구)	
	주안7동 (88개조사구)												태화동 (78개 ")	
	광주시												신정2동 (93개 ")	
	학운동 (35개조사구)												제주도	
	대전시												일도1동 (42개조사구)	
	신암동 (27개조사구)													
	경기도 (186개조사구)													
	증양동 (91개 ")													
	역곡3동 (130개 ")													
	강원도													
	효자2동 (88개조사구)													
충청북도														
교현1동 (89개조사구)														

제 2표. 행정구역, 연령(각 세, 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행정구역 및 연령(만나이)	인 구		구 성 비		성 비
	남	여	남	여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0 - 4					
0					
:					
4					
5 - 9					
5					
:					
9					
10 - 14					
10					
:					
14					
15 - 19					
15					
:					
19					
.					
.					
.					
80 - 84					
80					
:					
84					
85 이상					
미 상					

제 3표. 행정구역, 연령, 성 및 혼인 상태별 인구 (만15세 이상)

행정구역 및 연령(만나이)	계					남자			여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상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5 - 19											
15											
:											
19											
20 - 24											
20											
:											
24											
25 - 29											
25											
:											
29											
...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이상											
미 상											

제4표. 행정구역, 연령, 성 및 교육정도별 인구 (만5세 이상)

행정구역 및 연령(만나이)	계	제학						졸업	중퇴	불취학	미상
		국	중	고	전	대	대학원				
전 국											
5 - 9											
5											
:											
9											
10 - 14											
10											
:											
14											
15 - 19											
15											
:											
19											
.											
.											
.											
55 - 59											
55											
:											
59											
60 이상											
미 상											
남 자											
.											
.											
여 자											
.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5표. 행정구역, 가구주와의 관계,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만15세 이상)

행정구역, 성 및 가구주와의 관계	인 구	만 15세 미만 인구	혼 인 상 태 (만15세 이상)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 상
전 국 자 남 여 자 가 구 주 남 여 자 배 우 자 남 여 자 자 녀 자 자 녀의 배우자 남 여 자 손자녀, 증손자 남 여 자 가구주, 배우자의 부 모 남 여 자 가구주, 배우자의 조 부 모 남 여 자 가구주, 배우자의 증 조 부 모 남 여 자 가구주, 배우자의 형 제 자매 남 여 자 가구주, 배우자의 형 제자매 배우자 남 여 자 기 타 친척 기 타 동거인 가사종가사 집단가구상 비상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나. 가구에 관한 결과표

제1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연령, 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 (일반가구)

행정구역, 성 별 가구주의연령	가구원수	계	혼 인 상 태				
			미 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 상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5 미만							
15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이상							
남 자							
15 미만							
15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이상							
여 자							
15 미만							
15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이상							

제 2표. 행정구역, 가구의 크기, 인구, 핵가족별 가구 (일반가구)

행정구역 및 가구의 크기	가구	인 구		핵가족 수	가구당 핵가족수			
		남	여		0	1	2	3 이상
전 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가구 11인 이상가구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3표. 행정구역,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행 정 구 역 및 세 대 구 성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1	2	3	4	5	6	7	8	9	10	11인 이상
전 세대 가구 1 세대 가구 부 부 기 타 2 세대 가구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양친 부부+편부모 부부+자녀+ 부부의 형제 또는 자매 기 타 3 세대 가구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기 타 4 세대 가구 5 세대 가구 이상 단 독 가 구 비 혈 연 가 구 기 타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4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연령별 가구(일반가구)

행 정 구 역 및 세 대 구 성	계	가 구 주 의 연 령					
		15세 미만	15 19	20 24		75세 이상	미 상
전 국 1 세대 가구 부 부 기 타 2 세대 가구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양친 부부+편부모 부부+자녀+ 부부의형제 또는 자매 기 타 3 세대 가구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기 타 4 세대 가구 5 세대 가구 이상 단 독 가 구 비혈연 가구 기 타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5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일반가구)

행 정 구 역		혼 인 상 태				미 상
가 구 주 의 세 대 구 성		미 혼	유 배 우	사 별	이 혼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	세대 가구 부 부 기 타					
2	세대 가구 부 부+자녀 편 부모+자녀 부 부+양친 부 부+편 부모 부 부+자녀+ 부 부의 형제 또는 자매 기 타					
3	세대 가구 부 부+자녀+양친 부 부+자녀+편 부모 기 타					
4	세대 가구					
5	세대 가구 이상					
단 독	가 구					
비 혈 연	가 구					
기	타					

제 6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교육정도별 가구(일반가)

행정구역 및 가구주의 세대구성	계	교육정도					불취학	비상
		국민 학교	중·고 등 학 교	전문대	대학 (교)	대학 원		
전 1 세대 가구 부 부 기 타 2 세대 가구 부 부+자녀 편부모+자녀 부 부+양친 부 부+편부모 부 부+자녀+ 부 부의 형제 또는 자매 기 타 3 세대 가구 부 부+자녀+양친 부 부+자녀+편부모 기 타 4 세대 가구 5 세대 가구 이상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기 타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7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세대구성 및 직업(대분류)별 가구(일반가구)

행 정 구 역 및 가구주의 세대구성	계	가 구 주 의 직 업 (대분류)							
		1	2	3	4	5	6	7/8/9	0 분류불능자
전 국 (표본지역): 144개조사구									
1 세대 가구 부 기 타	서울시 (16개조사구)							충청남도	
2 세대 가구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양친 부부+편부모 부부+자녀+ 부부의 형제 또는 자매 기 타	창천동 (5개 ") 잠실7동 (5개 ") 영등포3동 (6개 ")							온양1동 (6개조사구)	
3 세대 가구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기 타	부산시 (15개조사구) 수영동 (9개 ") 연산6동 (6개 ")							전라북도 창인동 (4개조사구)	
4 세대 가구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기 타	대구시 신암3동 (9개조사구)							전라남도 동명동 (10개조사구)	
5 세대 가구 이상	인천시 주안7동 (8개조사구)							경상북도 죽도2동 (14개조사구)	
	광주시 학운동 (3개조사구)							경상남도 (17개조사구)	
	대전시 신암동 (3개조사구)							태화동 (8개 ") 신정2동 (9개 ")	
	경기도 (18개조사구) 중앙동 (6개 ") 역곡3동 (12개 ")								
	강원도 효자2동 (8개조사구)								
	충청북도 교현1동 (9개조사구)							제주도 일도1동 (4개조사구)	

제8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전세금별 가구(일반가구, 주거전용)

행정 구역 및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계	전 세 금 (만원)												가구당 평균 전세금 (만원)
		50만 미만	50 100	100 150	150 300	300 500	500 700	7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3000	3000 5000		
		100 미만	100 150	150 300	300 500	500 700	7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억		
전	국(표본지역)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주	택													
.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주택														
.														
주택이외의 주택														
.														

제9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월세별 가구(일반가구, 주거전용)

행 정 구 역 및 거 처 의 종 류 및 사 용 방 수	계	월 세 금 (만원)													가 구 당 평 균 월 세 금 (만원)
		3만 미만	3	5	10	15	30	50	70	100	150	200	300	500	
			5	10	15	3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전	국(표본지역)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주 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외주택															
·															
·															
주택이외의 주택															
·															

제10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월세금 및 보증금별 가구 (일반가구, 주거전용)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월세금	계	보 증 금 (만원)											
		50만 미만	50 100	100 150	150 300	300 500	500 700	7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억
전 1 개 3만 미만 3-5만 미만 5-10만" ... 500-1000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2 개													
3 개													
6 개 이 상													
주 택													
...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													

제11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전세금별 가구(일반가구, 영업겸용)

행정 구역 및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계	전 세 금												가구당 평균 전세금 (만원)
		50만 미만	50	100	150	3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100	150	3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1억		
전	국(표본지역)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주	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원세별 가구(일반가구, 영업점용)

행정 구역 및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계	월 세 금 (만원)														가구당 평균 월세금 (만원)
		3만 미 만	3	5	10	15	30	50	70	100	150	200	300	500		
		5	10	15	3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전	국(표본지역)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주	택	
	·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주택	
	·	
	주택이외의 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3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월세및 보증금별 가구 (일반가구, 영업겸용)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월세금	계	보증금 (만원)											
		50 미만	50	100	150	3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100	150	300	500	700	1000	1500	2000	3000	5000	1억	
전	국(표본지역)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	개												
	3만 미만												
	3-5만 미만												
	5-10만												
	...												
	500-1000												
2	개												
	...												
3	개												
	...												
	...												
6 개 이 상													
	...												
주	택												
	...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												
	...												

제14표. 행정구역,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행정 구역 및 점유 형태	계	거 처 의 종 류									
		주 택					주택이외의 거 처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연 립 주 택	다 세 대 주 택	주 거 용 내 의 주 택	숙 박 업 소	숙 사, 특 수 사 회	임 시 막 사	오 피 스 텔	기 타
전 국 가 세 보 증 부 월 세 (사 글 세) 무 상 주거전용 : 영업겸용 : : : :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5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가구원수 및 사용방수별 가구 (일반가구)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	계	사 용 방 수							
		1	2	3	4	5	6	7	8 이상
전 국 1 인 2 3 4 5 6 7인 이상 주 택 1 인 : 7인 이상 단독 주택 1 인 : 7인 이상 아 파 트 1 인 : 7인 이상 연립 주택 1 인 : 7인 이상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주택 1 인 : 7인 이상 주택이외의 거 처 1 인 : 7인 이상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6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사용식수별 가구 및 가구원 (일반가구)

행정구역 및 거처의 종류	계		사 용 식 수											
	가 구	가 구 원	상 수 도		간이수도		자가수도		수동점부		우물		기타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	...	...	...	...	...	...	...
전 국 주 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합계 건물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7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취사연료 및 난방시설 별 가구(일반가구)

행 정 구 역 및 거 처 의 종 류	취 사 연 료		난 방 연 료	
	연 유 가 전 임 산 기 탄 류 스 기 연 료 타		연 유 가 전 임 산 기 탄 류 스 기 연 료 타	
전 국 주 택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 처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8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및 연령	계	거 처 의 종 류									
		주 택					주택이외의 거처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연 립 주 택	다 세 대 주 택	건 물 내 의 주 택	숙 박 업 소	기 숙 사, 복 합 주 택	임 시 마 사	호 파 스 텔	기 타
전	국	15 미만	15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이상
남	자	15 미만	15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이상
여	자	15 미만	15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 49	50 - 54	55 - 59	60 이상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9표. 행정구역별 문화시설 보유가구 (일반가구)

행정 구역	문 화 시 설								
	T V	냉 장 고	세 탁 기	전 화	전 축	브 이 티 알	에 어 콘	개 인 용 컴 퓨 터	자 가 용 승 용 차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다. 주택에 관한 결과표

제 1 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거처, 가구, 핵가족수 및 가구원

행정구역, 거처, 가구, 핵가족수 가구원	계	거 처 의 종 류									
		주 택					주택이외의 거처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연 립 주 택	4 세 미 주 거	주 거 내 의 주 택	숙 박 업 소	기 숙 사, 수 회 사	임 시 막 사	오 피 스 텔	기 타
전 국 거 가 핵 가 구	국 거 구 가 족 원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2 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건축재료(외벽재료, 지붕재료) 및 건축연도별 주택

행정구역, 외벽재료, 지붕재료	계	건축연도					
		'50년 이전	50-59	60-69	70-79	80-85	86이상
전 국 (외벽재료) 나 부 적벽돌, 돌 시멘트제품 철근콘크리트 흙, 흙벽돌 기 타 (지붕재료) 기 와 슬레이트 스라브("기 와) 함 석 짚, 갈대 기 타 단 독 주 택 (외벽재료) : (지붕재료) : 아 파 트 : 연 립 주 택 : 다 세 대 주 택 비 거 주 용 건 물 내 의 주 택 :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3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외벽재료 및 지붕재료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외벽재료	계	지붕재료					
		기와	슬레이트	스라브 ("기와")	한석	짚, 갈대	기타
전국 나 무 적벽돌, 돌 시멘트제품 철근콘크리트 흙, 흙벽돌 기 타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단독주택 나 무							
: 기 타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주택 :							

제 4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주택

행정 구역 및 주택의 종류	계		점 유 형 태									
			자 가		전 세		보증약원세		월 세		무 상	
	주거	영업겸용	주거	영업겸용	주거	영업겸용	주거	영업겸용	주거	영업겸용	주거	영업겸용
전 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물내의 주택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 5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거주가구·가구원수 및 총방수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거주 가구	가구 원수	계	주 택 당 총 방 수							
			1	2	3	4	5	6	7	8 이상
전 국 1 가구 : 5 " 6 가구 이상										
주 택 1 가구 : 6가구 이상 단독 주택 1 가구 : 6 가구 이상 아 파 트 1 가구 : 6가구 이상 연립 주택 1 가구 : 6가구 이상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주택 1 가구 : 6가구 이상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6표. 행정구역, 주택의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

행 정 구 역, 주 택 의 종 류, 연 건 평	계	주 택 당 거 주 가 구 수					
		1	2	3	4	5	6가구 이상
전 국 7평 미만 7 - 9 미 만 10 - 19 " 20 - 29 " 30 - 39 " 40 - 49 " 50 - 59 " 60 - 69 " 70 - 99 " 100평 이상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7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인수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연건평	계	거주인수							
		1- 3인	4	5	6	7	8	9	10인이상
진국									
7평 미만									
7 - 9 평									
10 - 19 "									
20 - 29 "									
30 - 39 "									
40 - 49 "									
50 - 59 "									
60 - 69 "									
70 - 99 "									
100평 이상									
단독 주택									
7평 미만									
:									
100평 이상									
아파트									
7평 미만									
:									
100평 이상									
연립 주택									
7평 미만									
:									
100평 이상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7평 미만									
:									
100평 이상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8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전용시설 및 시설형태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전용시설	시 설 형 태										
	계	부 업 시 설			화 장 실 시 설		목 욥 시 설			상 수 도 사 설	
		계 래 식	입 식	없 음	계 래 식	수 세 식	온 수	비 온 수	없 음	있 음	없 음
전 국											
부 업 시 설 전 용 공 용, 없음											
화 장 실 시 설 전 용 공 용, 없음											
출 입 구 시 설 전 용 공 용, 없음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한.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한.

제 9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난방시설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건축연도	계	난 방 시 설					
		계 래식 아궁이	연탄 아궁이	연탄 보일러	단독 기름 보일러	단독 가스 보일러	중앙 난방 보일러 기 타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50년이전							
50 - 59							
60 - 69							
70 - 79							
80 - 85							
86년이후							
단독 주택							
50년이전							
:							
86년이후							
아파트							
50년이전							
:							
86년이후							
연립 주택							
50년이전							
:							
86년이후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주택							
50년이전							
:							
86년이후							

제10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대지면적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연건평	계	대 지 면 적											
		10평 미만	10	15	20	30	40	50	70	100	150	200	250평 이상
전													
국													
7평 미만													
7 - 9													
10 - 19 "													
20 - 29 "													
30 - 39 "													
40 - 49 "													
50 - 59 "													
60 - 69 "													
70 - 99 "													
100평 이상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1. 제11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전용시설 및 편익시설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전용시설	주택수	거주 가구수	부엌 시설				화장실 시설				출입구 시설			
			1	2	3	4 개 이상	1	2	3	4 개 이상	1	2	3	4 개 이상
전 국 부엌시설 전용, 없음 공용, 없음 화장실시설 전용, 없음 공용, 없음 출입구시설 전용, 없음 공용, 없음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비건물내외 주요주택 : 주요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제12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편의시설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연건평	주택수	거주 가구수	부엌시설				화장실시설				출입구시설			
			1	2	3	4개 이상	1	2	3	4개 이상	1	2	3	4개 이상
전국 7평 미만 7 - 9 "만 10 - 19 " 20 - 29 " 30 - 39 " 40 - 49 " 50 - 59 " 60 - 69 " 70 - 99 " 100평 이상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13. 제13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능가구수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전용시설	계	주택당 거주 가능 가구수					
		1	2	3	4	5	6 가구 이 상
전 국 부속시설 전용, 없음 공용, 없음 화장실시설 전용, 없음 공용, 없음 출입구시설 전용, 없음 공용, 없음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4. 제14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거주가능가구수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거주가능가구수	계	주택당 거주 가구수					
		1가구	2	3	4	5	6 가구 이 상
전 국 1 가구 2 가구 ⋮ ⋮ ⋮ 6 가구 이상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라. 출산력에 관한결과표 <표본지역에 한함>

1. 제1표 행정구역, 연령 및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별 부인

행정구역, 연령	15세 이상 여자	총 출생 아	15세 이상 기혼 부인	총 출 생 아 수 별 부 인 수										10인 이상	미상
				0	1	2	3	4	5	6	7	8	9		
전 국															
15 - 19															
1 5															
:															
1 9															
20 - 24															
2 0															
:															
2 4															
25 - 29															
2 5															
:															
2 9															
:															
50 - 54															
5 0															
:															
5 4															
55 - 59															
5 5															
:															
5 9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세 이상															
미 상															

출산력에 관한 결과표(총7개표)의 행정구역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표본지역)

출산력에 관한 결과표(총7개표)의 행정구역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표본지역)

2. 제2표 행정구역, 연령 및 기혼여성의 생존아수별 부인

행정구역, 연령	15세 이상 여자	총 생존 아	15세 이상 기혼 부인	총 생존 아 수 별 부 인 수										10인 이상	미상
				0	1	2	3	4	5	6	7	8	9		
전국															
15 - 19															
15															
:															
19															
20 - 24															
20															
:															
24															
25 - 29															
25															
:															
29															
:															
:															
50 - 54															
50															
:															
54															
55 - 59															
55															
:															
59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세 이상															
미상															

3. 제3표 행정구역, 모의 연령, 교육정도 및 출생아수별 부인

행정구역, 모의연령 및 교육정도	15세 이상 여자	총 출생아	15세 이상 기혼 부인	총 출생아 수 별 부인 수											10인 이상	미상
				0	1	2	3	4	5	6	7	8	9			
전국																
15 - 19																
20 - 24																
:																
70 - 74																
75세 이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불취학																
미상																

4. 제4표 행정구역, 연령 및 혼인연령별 기혼여자

행정구역, 연령	15세 이상 여자	15세 이상 기혼 부인	혼 인 연 령			
			15세 미만	15 - 34	35세 이상	미 상
전 국						
15 - 19						
1 5						
:						
1 9						
20 - 24						
2 0						
:						
2 4						
25 - 29						
2 5						
:						
2 9						
:						
:						
50 - 54						
5 0						
:						
5 4						
55 - 59						
5 5						
:						
5 9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세 이상						
미 상						

5. 제5표 행정구역, 연령 및 혼인연령별 기혼남자

행정구역, 연령	15세 이상 남자	15세 이상 기혼 남자	혼 인 연 령			
			15세 미만	15 - 34	35세 이상	미 상
전 국						
15 - 19						
1 5						
:						
1 9						
20 - 24						
2 0						
:						
2 4						
25 - 29						
2 5						
:						
2 9						
:						
:						
50 - 54						
5 0						
:						
5 4						
55 - 59						
5 5						
:						
5 9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세 이상						
미 상						

6. 제6표 행정구역, 모의 연령 및 혼인연령별 출생아

행정구역, 모의 연령	15세 이상 여자	15세 이상 기혼 부인	총 출생 아	혼 인 연 령			
				15세 미만	15 - 34	35세 이상	미 상
전 국							
15 - 19							
1 5							
:							
1 9							
20 - 24							
2 0							
:							
2 4							
25 - 29							
2 5							
:							
2 9							
:							
:							
50 - 54							
5 0							
:							
5 4							
55 - 59							
5 5							
:							
5 9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세 이상							
미 상							

7. 제7표 행정구역, 모의 연령 및 혼인상태별 적생아

행정 구역, 모의 연령	15세 이상 여자	15세이상기혼부인			유배우			사별			이혼		
		적생아			적생아			적생아			적생아		
		0 4	5 9	10 14	0 4	5 9	10 14	0 4	5 9	10 14	0 4	5 9	10 14
전국													
15-19													
15													
:													
19													
20-24													
20													
:													
24													
25-29													
25													
:													
29													
:													
:													
50-54													
50													
:													
54													
55세 이상													

마. 인구 이동에 관한 결과표

1. 제1표 현거주지, 출생지, 성 및 연령별 이동인구

출생지(계)	
성, 연령, 현재거주지	계 서부 대안 광대 경강 충충 전전 경경 계이 외미 울산 구천 주천 기원 북남 북남 북남 북도 북국 상
전국	
0 - 4	
5 - 9	
:	
:	
65 - 69	
70 이상	
남자	
:	
:	
여자	
:	
:	
:	
경남	
제주도	

2. 제2표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성 및 연령별 이동인구 (만1 세 이상)

현 거 주 지 빛 영	1 년 전 거 주 지					
	남	여	다른 시도		같은 시도	
			남	여	남	여
전 국 (통계 지역)						
1 - 4						
5 - 9						
:						
:						
65 - 69						
70 이상						
	서 울					
	부 산					
	:					
	:					
	:					
	경 남					
	제주도					

3. 제3표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성 및 연령별 이동인구 (만 5세 이상)

성·연령 현거주지	5 년 전 거 주 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외국	미상
전국 (표본지역)																	
5 - 9	현재 살고 있는 구, 시, 군								다른 구, 시, 군								
65 - 69	서 부				제 주				서 부				제 주 외				
70 이상	울 산								울 산								
남 자	서 울																
...	부 산																
...	...																
...	경 남																
여 자	제주도																
...																	
...																	

4. 제4표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만15세 이상)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 성	1 년 전 거 주 지					
	남	여	다른 시도		같은 시도	
			남	여	남	여
전 국 (現 지역)						
I.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1..						
2..						
3..						
:						
:						
9.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업 분류						
0 등 산업						
II. 비경제활동 인 구						
남 자						
:						
:						
:						
여 자						
:						
:						
:						

5, 제5표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만15세 이상)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 성	5 년 전 거 주 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외국	미상
전국 (통계지역) I.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 2. 3. : :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제주도						서울 부산 제이외구도 북구										
II. 비경제활동인구																	
남자	서울 부산 : : 경남 제주도																
여자																	

6. 제6표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현거주지, 1년전 거주지 및
성별이동인구(만15세 이상)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성	1년전거주지					
	남	여	다른 시도		같은 시도	
			남	여	남	여
전국 (합계)						
I.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0/1						
7/8/9						
II. 비경제활동인구						
남자						
:						
:						
여자						
:						
:						

7. 제7표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
(만15세이상)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직업(내분류)성		5년 전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외국	미상
전국 (현거주지) I.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 2. 3. : :	국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다른 구,시,군						
		서울					제주도					서울					제이외 주도북극	
II. 비경제활동인구 남자 : : : 여자 : : :	자	서울																
		부산																
		: : : 경남																
		제주도																

8. 제 6 표 교육 정도, 현거주지, 1년전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만5세이상)

현거주지, 교육 정도	1 년 전 거 주 지					
	남	여	다른 시도		같은 시도	
			남	여	남	여
전국 (본지역)						
국민학교						
중퇴졸업						
중 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불취학						
남 자						
여 자						

9. 제9표 교육정도,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 및 성별 이동인구(만5세이상)

현 거주지, 교육 정도 전 (보통) 국민학교 졸업 중 학교 :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 대학원 불취학 : 15세 미만 남 : 자 여 : 자	5 년 전 거 주 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외국 미상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							서울 부산 ...						
	제주도							제주도						
	...													

10. 제10표 연령, 혼인상태, 현거주지, 1년전거주지및성이동인구(만15세이상)

현거주지, 미혼상태 연령	1년전거주지					
	남	여	다른 시도		같은 시도	
			남	여	남	여
전국 (표본지역) 미혼						
15 - 19						
20 - 24						
25 - 29						
30 이상						
유배우						
15 - 19						
20 - 24						
25 - 29						
30 - 34						
35 - 39						
40 - 44						
45 이상						
사별						
이혼						
미상						
			서울			
			부산			
			...			
			경남			
			제주도			

II. 제 II 표 연령, 혼인상태, 현거주지, 5년전 거주지별 생년월일동인구(만15세이상)

현거주지, 혼인상태 연령		5년전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외국	미상	
전 (외국거주) 미혼	국																		
	15 - 19																		
	20 - 24																		
	25 - 29																		
	30 이상																		
유배우	매우	우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다른 구,시,군								
			서부				제주도				서부				제외				
			울산				...				울산				...				
사별 이혼 미혼 남자 여자	별혼 상자 자	자	서울 부산 : : : 경남 제주도																

제12표 대도시 이용교통수단 및 성별 통근·통학 인구 (만12세 이상)

[illegible]

13. 제13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현거주지 및 성	계	통 근 · 통 학 지																	
		서울 특별시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 구	동대문 구	성북 구	도봉 구	은평 구	서대문 구	마포 구	강서 구	구로 구	영등포 구	동작 구	관악 구	강남 구	강동 구
계	경기도	인천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양주군	남양주군	시흥군	고양군	광주군	김포군	기타군	기 타 도
서울 남자 여자 서대문 송파 영등포 인천시 남자 남자 경기도 남자 남자 송탄 부천																			

14. 제 14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계	부산직할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출장소	기타군	김해군	양산군	삼천포시	충무시	진해시	창원시	진주시	남구	중구	울산시	마산시	경상남도	자자	남여	계	
부산시 남 자																													
남 자																													
동래 남 자																													
경상남도 울산 남 자																													
중 " 구																													
남 " 구																													

15. 제5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만12세 이상)
(대구직할시 및 경상북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계	대구직할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계 남자 여자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달서군	군위군	의성군	경상군	칠곡군	기타군	기 타 시 도
대구시 남자 여자														
경북 포항시 남자 여자														

16. 제16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광주직할시, 전남)

[illegible]

17. 제17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계	대 전 시	동 구	대 덕 구	서 구	유 성 구 중 구
계 남 여	충 청 남 도	천 안 시	온 양 시	천 원 군	기 타 군	기 시 타 도
대전시 동구 신안동 남 자 여 자						
충남 온양시 온양1동 남 자 여 자						

18. 제18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만12세 이상)
(전라북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계	전 북	이 리 시	군 산 시	남 원 시	전 주 시	정 주 시	김 제 시	합 열 군	기 타 군	기 타 시 도
전북 이리시 창인동 남 자											

19. 제19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충청북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기 타	시 도
	계	충 북	충 주 시	청 주 시	괴 산 군	음 성 군	단 양 군	기 타 군	
충북, 충주시 교현1동 남여 자									

30. 제30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 (만12세 이상)
(강원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기 타 도
	계	강 원 도	춘 천 시	화 천 군	양 주 군	가 평 군	홍 천 군	기 타 군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남 자 여 자								

거. 제거표 현거주지, 목적지별 통근·통학, 성별 인구(만12세 이상)
(제 주 도)

현거주지 및 성	통 근 · 통 학 지					
	계	제 주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남 제 주 군	북 제 주 군
제주시 일도1동 남 자 여 자						

22. 제22표 행정구역 및 출발·도착 시간대별 통근·통학인구 (만12세 이상)

현거주지,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계	이 용 교 통 수 단										2개이상 복합수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시 내 버 스	좌 석 버 스	시 외 버 스	통 근 통 학 버 스	전 철, 지 하 철 기 타	택 시	승 용 차	자 전 거	도 보	기 타 교 통 수 단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출 발 시 각													
5시 이전													
5-6시 이전													
6-7시 이전													
7-9시 까지													
30분 간격													
9-10시 이전													
10-11시 이전													
11-12시 이전													
12 이후													
도 착 시 각													
5시 이전													
5-6시 이전													
6-7시 이전													
7-9시 까지													
30분 간격													
9-10시 이전													
10-11시 이전													
11-12시 이전													
12 이후													

13. 제2표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별 통근인구 및 이용교통수단(만15세이상)

현거주지 작업 (대분류)	인구	통근인구	이용교통수단										2개 이상의 복합 수단
			① 시 내 버 스	② 좌 석 버 스	③ 시 외 버 스	④ 통 근 학 버 스	⑤ 전 철, 지하 철 기 타	⑥ 택 시	⑦ 승 용 차	⑧ 자 전 거	⑨ 도 로 보 행	⑩ 기 타 교통 수단	
전국 (통계지역) I.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0/1 : : 7/8/9 II. 비경제활동인구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24. 제4표 현거주지, 경제활동상태, 산업(대분류)별 통근인구 및 이용교통수단(만15세이상)

현거주지 산 업 (대분류)	인구	통근 인구	이 용 교 통 수 단										2개 이상의 복합 수 단
			① 시 내 버 스	② 좌 석 버 스	③ 시 외 버 스	④ 통 근 학 버 스	⑤ 전 철, 지하 철 기타	⑥ 택 시	⑦ 승 용 차	⑧ 자 전 거	⑨ 도 보	⑩ 기타 교통 수단	
전 국 (해상지역) I.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1. 농 업 2. 3. : 9. D. 분류불능 산업 II. 비경제활동인구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가. 제1표 현거주지, 이용교통수단별 이동교통소요시간 (만12세이상)

현거주지, 이용교통수단	계	이 동 교 통 소 요 시 간						
		0	10	30	1시간	1:30	2:00	2:30
		9	29	59	1:29	1:59	2:29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1. 시내버스								
2. 좌석버스								
3. 시외버스								
4. 통근(통학)								
5. 전철, 지하철								
6. 택시								
7. 승용차								
8. 자전거								
9. 도보								
10. 기타								
2개 이상의 복합수단								

가. 제4표 가구주의 현거주지, 소득계층 및 이용교통수단별 이동인구(만12세 이상)

가구주의 현거주지 소득 계층	자가 승용 차	가 구	인 구	통근 통학	이 용 교 통 수 단											
					계	① 시 내 버 스	② 좌 석 버 스	③ 시 외 버 스	④ 통 근 통 학 버 스	⑤ 전 철, 지 하 철 기 타	⑥ 택 시	⑦ 승 용 차	⑧ 자 전 거 기	⑨ 도 로 보 행	⑩ 기 타 통 단	2개 이상의 복합수단
전 (광역시) 20 만 미만	유무			통근 통학	행정구역 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20 - 30 만 "	유무			통근 통학												
30 - 40 만 "	유무			통근 통학												
40 - 70 만 "	유무			통근 통학												
70 - 100 만 "	유무			통근 통학												
100 - 150 만 "	유무			통근 통학												
150 - 200 만 "	유무			통근 통학												
200 - 300 만 "	유무			통근 통학												
300 만 이상	유무			통근 통학												

ㄱ. 제1표 현거주지, 이용교통수단, 성 및 연령별 인구 (만12세 이상)

현거주지 연령	이 용 교 통 수 단										2개 이상의 복합 수단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시 내 버 스	좌 석 버 스	시 외 버 스	통 근 학 버 스	전 철, 지 하 철 기 타	택 시	승 용 차	자 전 거 차	도 로 기 타 보 수 단		기 타 보 수 단
전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만 12세 미만												
12 - 14												
15 - 19												
20 - 24												
25 - 29												
...												
...												
65 - 69												
70 이상												
남자												
...												
...												
여자												
...												
...												

26. 제2표 대도시, 성별, 상주(야간)인구 및 주간인구

대도시, 성	상주(야간)인구				유 입 인 구			유 출 인 구			주간 인구	주간인구 지 수
	계	지역내이동인구			계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전 국 남 자 여 자 서울 시 : 부산 시 : 대구 시 : 인천 시 : 광주 시 : 대전 시 :												

주: (1)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2)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 / 상주(야간)인구 × 100

(3) 지역내 이동인구는 대도시별로 산출되며,
도착지가 있는 통근통학인구이다

시내에 거주지,

4. 제1표 행정구역, 가구규모 및 성별 통근·통학인구 (만12세 이상)

행정구역 및 가구의 크기	가 구	인 구		통근 인구		통학 인구	
		남	여	남	여	남	여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분류에 의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가구							
11인 가구 이상							

30. 제30 표 행정구역, 점유형태 및 가구주의 이용교통수단별 이동인구 (만12세 이상)

행정구역별 주택의 점유형태	이 용 교 통 수 단										2개 이상의 복합 수
	계	① 시 내 버 스	② 좌 석 버 스	③ 시 외 버 스	④ 통 근 학 버 스	⑤ 전 철, 지하 철 기타	⑥ 택 시	⑦ 승 용 차	⑧ 자 전 거	⑨ 도 로 보 행	
전 국	행정구역 분류는 인구에 관한 결과표 중 제1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주 거 전 용											
자기 집 전 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 세) 무 상											
영 업 전 용											
자기 집 전 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 세) 무 상											

바. 경제활동에 관한 결과표 < 표본지역에 한함 >

1. 제1표 행정구역,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행정 구역, 성, 령 연	15 세 이 상 인 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 구
		취 업 자		
		주로 일한자	틈틈이 일한자	
전 국		경제활동에 관한 결과표(총8개표)의 행정구역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표본지역)		
15 - 19				
20 - 24				
:				
:				
65 - 69				
70이상				
남 자				
:				
:				
여 자				
:				
:				

2. 제2표 행정구역,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및 성별 취업자

행정구역,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취업자					
	남	여	주로 일한자		틈틈이 일한자	
			남	여	남	여
전국 산업 1 2 : 9 0 직업 0/1 2 : 7/8/9 × 분류 불능자						

3. 제3표 행정구역, 성,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행정구역, 성, 연령	계	종사상의지위				
		고용주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봉급 근로자	미상
전국						
15 - 19						
20 - 24						
:						
:						
65 - 69						
70이상						
남자						
:						
:						
여자						
:						
:						

4. 제4표 행정구역, 성, 산업(대분류)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행정구역, 성, 산업(대분류)	계	종 사 상 의 지 위				
		고 용 주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봉급 근로자	미 상
전 국						
1.						
2.						
:						
:						
9.						
0.						
남 자						
:						
:						
여 자						
:						
:						

5. 제5표 행정구역, 성, 직업(대분류) 및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행정구역, 성, 직업(대분류)	계	종 사 상 의 지 위				
		고 용 주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봉급 근로자	미 상
전 국						
0/1						
...						
...						
7/8/9						
×. 분류 불능자						
남 자						
...						
...						
여 자						
...						
...						

6. 제6표 행정구역, 산업(소분류), 직업(소분류) 및 교육정도별 **성별** 취업자

행정구역, 산업(소분류) 직업(소분류)	계		국민학교		중, 고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미 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 국														
산 업														
1.														
1..														
: 1..														
:														
:														
0.														
1..														
1..														
직 업														
0/1														
: 1..														
: 1..														
:														
6														
1..														
1..														
7/8/9														
1..														
1..														
X.분류 불능자														

7. 제7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가구원수 및 경제활동인구수별 가구(일반가구)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가구원수	계	경제활동인구						
		0	1	2	3	4	5	6인 이상
전국								
1인가구								
...								
...								
10인가구								
11인 이상가구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8. 제8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행정 구역, 성, 가구주의 상태 및 직업 (대분류)	계	가 구 원 수 별 가 구							
		0	1	2	3	4	5	6	7인 이상
전 (표본지역) 취업자 0/1 2 : 7/8/9 X 분류 불능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남 자 : : 여 자 : :									

사. 소득에 관한 결과표 < 표본지역에 한함 >

1. 제1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령, 종사상의 지위 및 소득 계층별 가구(일반가구)

행 정 구 역, 가 구 주 의 성 연 령 및 종 사 상 의 지 위	소 득 계 층 별 가 구									
	계	20만 미 만	20 30미 만	30 40미 만	40 70미 만	70 100미 만	100 150미 만	150 200미 만	200 300미 만	300만 이 상
전 국										
15세미 만										
15 - 24										
25 - 29										
...										
...										
55 - 59										
60 - 64										
65 - 69										
70이상										
고 용 주										
...										
자 영 주										
...										
무 급 가 족										
종 사 자										
...										
임 금, 봉 급										
근 로 자										
...										
미 상										
...										
남 자										
...										
...										
여 자										
...										
...										

소득에 관한 결과표(총15개표)의 행정구역분류는 가구에
관한 결과표중 제7표의 행정구역 분류에 의함.
(표본지역)

3. 제3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교육정도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행정 구역 소득 계층	가 구 주 의 교 육 정 도																	
	계	재 학					졸 업					중 외					불취학	미상
		국	중·고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국	중·고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국	중·고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전 국																		
20만미만																		
20-30 만 "																		
30-40 만 "																		
40-70 만 "																		
70-100만 "																		
100-150만 "																		
150-200만 "																		
200-300만 "																		
300만이상																		

3. 제3표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가구원수,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행정구역, 거처의종류 및 가구원수	한 달 평 균 소 득 계 층 별 가 구									
	계	20만 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 70미만	70 100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300미만	300만 이 상
전 국										
1인가구										
2인가구										
⋮										
6인가구										
7인이상가구										
주 택										
⋮										
단독주택										
⋮										
아 파 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주택이외의 거 처										

4. 제4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사용방수 및 소득계층별 가구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사용방수	한 달 평 균 소 득 계 층 별 가 구									
	계	20만 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 70미만	70 100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300미만	300만 이상
전 국										
1개										
2개										
⋮										
5개										
6개 이상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ㄱ. 계표 행정구역, 주택의 점유형태 및 소득계층별 가구

행 정 구 역 소 득 계 층	계		주 택 의 점 유 형 태									
	주거 전용	영업 전용	자 가		전 세		보 증 부 월 세		월 세		무 상	
			주 거	영 업	주 거	영 업	주 거	영 업	주 거	영 업	주 거	영 업
전 국												
20만미 만												
20-30 만 "												
30-40 만 "												
40-70 만 "												
70-100 만 "												
100-150 만 "												
150-200 만 "												
200-300 만 "												
300만 이상												

6. 제 6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소득계층별 가구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및 연 건 평	한 달 평 균 소 득 계 층 별 가 구									
	계	20만 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 70미만	70 100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300미만	300만 이 상
전 국										
7평미만										
7 - 9평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89										
100평이상										
단독주택										
아 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7. 제 1표 행정구역, 세대구성 및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행정구역, 세대구성	한 달 평 균 소 득 계 층 별 가 구									
	계	20만 미 만	20 30 미 만	30 40 미 만	40 70 미 만	70 100 미 만	100 150 미 만	150 200 미 만	200 300 미 만	300만 이 상
전 국										
1세대 가구 부 부 기 타										
2세대 가구 부 부+자녀 편부모+ " 부 부+양친 " + 편부모 부 부+자녀+부 부의 형제 또는 자매 기 타										
3세대 가구 부 부+자녀+양친 " + 편부모 기 타										
4세대 가구										
5세대 이상가구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기 타										

8. 제8표 행정구역, 문화시설및소득계층별 가구 (일반가구)

행 정 구 역, 소 득 계 층	문 화 시 설									
	T V	냉 장 고	세 탁 기	전 화	전 축	브 이 티 알	에 어 콘	컴 퓨 터	자 승 용 차	미 상
전 국										
20 만 미 만										
20 - 30 만 "										
30 - 40 만 "										
40 - 70 만 "										
70 - 100 만 "										
100 - 150 만 "										
150 - 200 만 "										
200 - 300 만 "										
300 만 이상										

9 제 9 표 행정구역, 시설형태및소득계층별 가구

행정구역, 소득계층	계	시설 형태									
		부엌시설			화장실시설		목욕시설			상수도시설	
		재래식	입식	없음	재래식	수세식	온수	비온수	없음	있음	없음
전국											
20 만 미만											
20 - 30 만											
30 - 40 만											
40 - 70 만											
70 - 100 만											
100 - 150 만											
150 - 200 만											
200 - 300 만											
300 만 이상											

10. 제10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소득 계층별 가구

행정구역, 가구주의 성 연	한 달 평 균 소 득								
	계	20만 미 만	20 30미 만	30 40미 만	40 70미 만	70 100미 만	100 150미 만	150 200미 만	200 300미 만 이 상
전 국									
15세미 만									
15 - 19									
20 - 24									
:									
:									
65 - 69									
70 이상									
남 자									
:									
여 자									
:									

// 제//표 행정구역, 가구주의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소득계층별 가구(일반가구)

행정구역,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한달 평균 소득계층별 가구									
	계	20만 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 70미만	70 100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300미만	300만 이 상
전 국										
산 업										
1.										
2.										
:										
:										
:										
0										
직 업										
0/1										
:										
:										
:										
6										
7/8/9										
X.분류 불능자										

12. 제 12표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경제활동인구, 가구원수, 소득계층별 가구 (실제가구)

행정구역, 주택의 종류 경제활동인구	가구원수	한달 평균 소득계층별 가구									
		계	20만 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 70미만	70 100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300미만	300만 이상
전 국											
1인											
2인											
3인											
4인											
5인											
6개 이상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대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13. 제13표 가구주의 출생지, 현거주지 및 소득계층별 이동가구

가 구 주 의 출 생 지, 소 득 계 층	현 거 주 지				
	계		비 이동 가구		미 상
	서 읍	채 미 주 도 상	서 읍	채 주	
전 국					
20 만 미 만 "					
20 - 30 만 "					
30 - 40 만 "					
40 - 70 만 "					
70 - 100 만 "					
100 - 150 만 "					
150 - 200 만 "					
200 - 300 만 "					
300 만 이 상					

14. 제14표 가구주의 1년전 거주지, 현거주지 및 소득계층별 이동가구

가 구 주 의 1년전거주지, 소 득 계 층	현 거 주 지					
	계		비 이동 가구		이동 가구	미 상
	서 재 읍 도 상	비	서 재 읍 주	서 재 읍 주		
전 국						
20 만 미 만						
20 - 30 만 "						
30 - 40 만 "						
40 - 70 만 "						
70 - 100 만 "						
100 - 150 만 "						
150 - 200 만 "						
200 - 300 만 "						
300 만 이 상						

15. 제15표 가구주의 5년전 거주지, 현재거주지 및 소득계층별 이동가구

가 구 주 의 5년전거주지 소 득 계 층	현 거 주 지					미 상
	계		비 이동 가구		이동 가구	
	서 읍	채 비 주 도 상	서 읍	채 주	서 읍	
전 국						
20 만 미 만						
20 - 30 만 "						
30 - 40 만 "						
40 - 70 만 "						
70 - 100 만 "						
100 - 150 만 "						
150 - 200 만 "						
200 - 300 만 "						
300 만 이상						

38

함께 알아 본

1990年 人口住宅總調查

1990. 2.

經濟企劃院

目 次

1. 人口住宅總調查란?	3
2. 왜 必要한가?	5
3. 調査對象은?	9
4. 무엇을 調査하나?	11
5. 이번 總調査의 特徵은?	13
6. 調査方法은?	15
7. 調査資料의 公表는?	17
8. 어디에 活用되나?	18
9. 個人의 祕密은 保障되나?	22

1. 人口住宅總調查란?

— 總調查란?

- 나라의 各種 政策이나 長・短期計劃 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 ・ 一定 時點을 定하여
 - ・ 統一된 基準에 따라
 - ・ 調查對象의 總數와 그 個別的 特性을
 - ・ 일일이 調查하는
 - ・ 全國的 規模의 統計調查를 일컫는 말입니다.
- 따라서 人口住宅總調查는 나라 살림의 가장 基本이 되는 人口와 住宅에 關하여 必要한 資料를 얻기 위한 統計調查입니다.

— 이번에 實施되는 人口住宅總調查는 1985년에 이어 5年 만에 實施되는 것으로서

- 統計作成의 責任機關인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 오는 11月1日 0時를 基準으로 實施되는데
- 10月29日부터 3日동안의 準備調查를 거쳐
- 11月1日부터 10日동안 全國적으로 일제히 實施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 調査는

- 不過 열흘동안의 짧은 期間內에
- 全國의 모든 人口와 住宅을 對象으로 實施되는 방대한 調査이므로
- 實際調査는 地方機關인 各 市·道와 그 傘下機關에서 遂行하게 됩니다.

2. 왜 必要한가?

- 한 가정을 幸福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自己家族의 식구수와 性格을 잘 把握하여 合理的인 生活設計를 마련한 다음 이를 착실히 履行하는 努力이 必要하듯이, 政府에서도 國民의 安定된 삶과 幸福한 生活을 보장하기 위해 各種 政策이나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推進하는 데에는 國家의 構成員인 國民의 總數와 그 特性을 正確하게 把握한 資料가 꼭 必要합니다.
- 그런데 한 家庭의 식구수나 家族들의 性格은 바로 알 수 있지만 나라의 構成員인 國民의 總數와 그 特性을 正確하게 알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 한 나라의 總人口와 그 特性을 把握할 수 있는 方法을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住民登錄簿上의 人口를 그대로 集計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그러나 住民登錄簿의 人口는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制約點이 있어 人口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없습니다.
 - 住民登錄人口는 洞·邑·面의 實際居住人口를 正確하게 反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 주위에서는 農村地域 居住者가 住民登錄은 그대로 둔채 都市地域으로 옮겨가는 경우, 職場이나

學校關係로 住民登錄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發見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轉出入申告가 제때에 正確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轉出申告는 하였으나 轉入申告는 되지 않는 人口(約40万名 정도로 推計) 때문에 人口數에서 實際居住人口와 住民登錄上の 人口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住民登錄人口는 人口의 여러가지 特性을 正確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年齡의 경우를 보면 住民登錄簿에는 戶籍上の 年齡이 記入되고 있는데 實際出生보다 늦게 申告되었거나 陰曆으로 申告가 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集計하게 되면 實際上の 年齡別 人口와는 자연히 큰 差異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陰曆으로 申告된 경우에는 2~3年만에 한번씩 들어 있는 윤달이 區分되지 않고 있어 이해의 人口가 다른해의 人口에 비하여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 또한 學歷의 경우를 보더라도 住民登錄簿에는 처음 作成할 때의 學歷만이 記錄되고 있어 學生과 같이 學歷上の 變動이 있는 사람의 學歷이 틀려지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住民登錄簿에는 人口의 特性을 把握
할 수 있는 項目이 극히 制限되어 있어 여러가지
細密한 分析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常住人口調查資料를 活用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 그러나 常住人口調查는 各 市道가 主管이 되어 行政
目的上 必要로 하는 地域別 人口 및 家口數에 관한
資料만을 生産해 내고 있으며
- 또한 調查方法에 있어서도 一般 行政業務를 遂行하면
서 同時에 人口調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國家政策
이나 長·短期計劃의 基礎資料로서의 活用이나 細部分
析을 위한 研究資料로서의 使用이 어려운 實情입니
다.

— 이러한 次元에서

- 人口總調查는,
막대한 豫算과 調查人力을 動員하여 科學的인 調查方
法에 의해 地域別 人口와 家口數는 물론 그 個別的
特性까지도 면밀히 調查하여 常住人口調查나 住民登錄
資料만으로 把握하기 어려운 廣範圍한 內容을 正確하
게 蒐集하기 위한 것이며
- 住宅總調查는,
우리 生活의 根據가 되는 住宅의 現況, 즉 住宅의
總數와 種類 및 餘他 特性들을 正確히 파악하기 위

한 것입니다.

一 結局 人口住宅總調査는

政府가 國民의 福祉向上과 國力伸張을 위한 各種 政策을 樹立·執行하는데 必須基本資料인 國民의 總數와 그 個別 特性 그리고 이들의 將來 變化를 豫測하고 아울러 國民들의 住民生活 狀態를 正確하고 廣範圍하게 把握하기 위해 반드시 必要한 統計調査입니다.

3. 調査對象은?

— 人口總調査에서는,

- 調査基準日인 11月 1日 0時 現在
- 大韓民國의 行政權이 미치는 全 領域內에
- 常住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外國에서 就業하고 있거나 留學中에 있는 사람과
 - 우리나라에 居住하고 있는 外國人중 外交官 및 外國軍人과 그 家族들은 이 調査에서 除外됩니다.
- 당연한 얘기지만, 11月 1日 0時 現在 人口를 調査하므로
 - 11月 1日 0時 以後에 태어난 사람과
 - 11月 1日 0時 以前에 死亡한 사람은 包含시켜서는 안됩니다.

— 住宅總調査에서는,

- 사람들이 잠을 자고 食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지어 놓은 모든 建物を 調査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 調査對象이 되는 建物の 種類로는 單獨住宅, 아파트,

聯立住宅, 非居住用 建物内の 住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천막집이나 움집과 같은 住宅以外の 居處가 있습니다.

- 다만, 사람이 居住하고 있는 建物이라 할지라도
 - 軍隊의 兵營 막사나 矯導所, 警察署 등 施設内の 막사와
 - 駐韓 外國大使館 또는 外國軍隊의 兵營內에 있는 住宅은 除外됩니다.

4. 무엇을 調査하나?

— 이번 總調査에서는

- 人口에 대해 모두 23個의 細部事項을,
- 住居에 관해서는 25個의 事項을 調査합니다.

— 人口에 관한 23個의 調査項目은

- ① 姓名 ② 家口主와의 關係 ③ 性別
 - ④ 年齡 ⑤ 教育程度 ⑥ 婚姻狀態 ⑦ 出生地
 - ⑧ 1年前居住地 ⑨ 5年前居住地 ⑩ 通勤(學) 與否
 - ⑪ 職場 또는 學校住所 ⑫ 出發 到着 時刻
 - ⑬ 利用交通手段 ⑭ 經濟活動狀態 ⑮ 職業
 - ⑯ 從事上の 地位 ⑰ 産業 ⑱ 婚姻年齡 ⑲ 生存子女數
 - ⑳ 死亡子女數 ㉑ 總出生兒數 ㉒ 求職與否 ㉓ 就業與否
- 等이며

— 住居에 관한 25個 調査項目은

- ① 居處의 種類 ② 主家口 與否 ③ 住宅의 占有形態
- ④ 賃借料 ⑤ 使用房數 ⑥ 使用 食水 ⑦ 炊事燃料
- ⑧ 煖房燃料 ⑨ 文化施設 및 家財
- ⑩ 專用 便益施設 有無 ⑪ 月平均 生活費 規模
- ⑫ 月平均 所得 規模 ⑬ 所得의 種類 ⑭ 外壁材料

- ⑮ 지붕材料 ⑯ 延建坪 ⑰ 垜地面積 ⑱ 總房數
⑲ 居住家口數 ⑳ 建築時期 ㉑ 부엌施設 ㉒ 화장실施設
㉓ 沐浴施設 ㉔ 上水道施設 ㉕ 居住可能家口數 및
便益施設數

이런 總調査는 10年週期의 定規總調査인 점을 감안하여 過去의 總調査項目을 모두 受容하되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가장 重要한 問題인 階層內葛藤問題와 大都市交通問題 그리고 住居의 不安定問題等 統計的側面에서 積極支援하기 위한 調査項目을 選定한 것임.

- 所得階層項目으로 家口의 月平均所得規模을 把握하게 되고
- 大都市交通政策 및 研究資料는 물론 區域交通行政의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項目으로는 ①(通勤)시간 ②(通勤)地 ③出發到着時刻 ④利用交通手段의 4가지 項目이 있고
- 住居의 安定問題와 관련된 項目은 住居의 賃借類型과 賃借料 및 한 住宅에 여러 家口가 살 수 있도록 하는 多家口居住可能住宅項目이 選定된 것임.

이들 項目은

- 지금까지 住宅이 居住機能보다는 財産增值의 手段으로 認識되어 不動産投機 등 社會·經濟的 弊害가 많았으며
- 政府에서는 이러한 實情을 勘案하여 多家口居住住宅의 新築을 勵勵하고 있는 등
- 住宅政策을 居住機能 中心으로 轉換해 나가야 하는 必要가 基礎資料의 提供을 爲한 것임.

5. 이번 總調査의 特徵은?

— 調査結果를 보다 빨리 集計하기 爲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光感應判讀 技法을 導入한 점입니다.

○ 調査票內容을 打字式方法에 依해 컴퓨터에 入力해 왔으나

- 컴퓨터에 入力하는 時間만도 1年이 所要되었으며
- 打字過程에서 誤打 또는 打字 누락등의 事例가 發生되어 이를 고치는데도 많은 人力이 所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打字方式에 의한 入力過程 代身 調査票를 바로 컴퓨터에 入力하는 裝置인 光感應判讀機 2台를 導入하였습니다.

— 이번 總調査에서는 應答者가 스스로 調査票를 作成하는 自計式 調査方法을 採擇하였는데

○ 이는 女性の 經濟活動參加가 많아진데 따른 맞벌이 夫婦等 晝間에 집을 비우는 家口가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 家庭을 對象으로 한 各種犯罪發生으로 인해 門을 열어주지 않은 경향이 많아 調査員이 家口를 直接 訪問하여 調査하는 面接調査만으로는 正確한 調査를 할 수 없다는 點 등을 考慮하여 變更한 것입니다.

- 셋째로는 통근(학)여부와 통근(학)주소, 통근(학)을爲한 出發時刻과 到着時刻 그리고 利用 交通手段을 全數 調査하여 大都市 交通政策 및 研究資料는 물론 廣域交通行政의 基礎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로는 한 住宅에 여러 家口가 居住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多家口居住 可能住宅과 住宅의 賃借類型 및 賃借料를 調査하는 바, 이는
 - 지금까지 住宅은 居住機能보다는 財産增殖의 手段으로 認識되어 不動産投機 등 社會・經濟的 弊害가 많았으며
 - 政府에서는 이러한 점을 勘案하여 多家口居住 住宅의 新築을 勸獎하고 있는 등
 - 住宅政策을 居住機能 中心으로 轉換하고 있어 이에 必要한 基礎資料의 提供을 위한 것입니다.

6. 調査方法은?

- 이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人口와 住宅을 11月 1日부터 11月 10日까지의 짧은 期間안에 빠짐없이 調査해야 하므로 무려 11만4천명이나 되는 調査員을 動員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들 調査員의 業務를 고루 配分하고 擔當區域을 明確하게 해주기 위하여
 - 各 洞·邑·面別로 作成된 精密한 地圖를 토대로 全國을 約 20萬個의 調査區로 分割하였으며,
 - 이들 調査區의 90%에 該當하는 調査區(全數項目 調査區)에 居住하는 家口에 대해서는 33個의 調査項目을 質問하게 되며, 나머지 10%에 該當하는 調査區에 居住하는 家口에 대해서는 ⁴⁵48個의 調査項目을 質問하게 됩니다.
 - 全數項目 調査區를 擔當하는 調査員은 2個 調査區(120家口)를 擔當하며, 標本項目 調査區를 擔當하는 調査員은 1個 調査區(60家口)를 擔當합니다.
- 그리고 調査를 보다 正確하게 하기 위하여
 - 10月 29日부터 10月 31日까지 자기가 맡아서 調査해야할 調査區內의 家口數와 住宅數를 미리 把握하고 調査票를 各 家口에 配付하는데 이 期間을 準備調査期間이라 하며 이와같은 準備調査가 完了되면

- 11月 1일부터 11月 10일까지 10日間 實際調査를 實施하게 되는데
- 이 期間에는 자기가 맡은 調査區內의 家口를 일일이 訪問하여 調査票를 回收하고 調査票內容을 檢討하여, 記入 누락과 錯誤記入等이 發見되면 이를 項目에 대한 補完을 爲해 面接調査를 하여 調査票를 完成하게 됩니다.
- 調査가 모두 完了되면 完成된 調査票를 洞·邑·面에 提出하게 되고
 - 洞·邑·面에서는 이를 聚合 整理하여 區·市·郡과 市·道를 거쳐 經濟企劃院에 提出하게 됩니다.
 - 經濟企劃院에서는 全國에서 蒐集된 調査票를 즉시 電子計算機에 의하여 集計하게 됩니다.

7. 調査資料의 公表는?

- 이번 總 調査는 1人當 48個項目, 總 9億 3千萬 個의 項目이 되어 政府는 光感應判讀機 以外에도 最新型 콤팩터까지 導入하여 資料處理時間을 最大限 短縮할 計劃입니다.
- 本 調査資料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迅速히 提供하기 위하여 最終報告書 發刊에 앞서 暫定報告書와 速報報告書を 發刊할 豫定인 바,
 - 暫定報告書는 地域別 人口數 및 家口數, 性別人口와 地域別 住宅數등 基本資料만을 收錄하여 '91年 3月 까지,
 - 그리고 速報報告書는 全體 調査票의 2%程度를 標本으로 抽出하여 地域別 男女別·年齡別人口와 通勤學, 人口移動 및 住居實態등 主要項目에 관한 資料를 收錄 '91年 4月까지 發刊할 豫定입니다.
- 全數 調査項目을 集計한 報告書는 '91年 12月에 發刊할 豫定이며 標本調査項目에 대한 最終報告書는 '92年 6월까지 人口移動·出産力分野, 92年 12月까지 經濟活動分野로 區分하여 發刊할 豫定입니다.

8. 어디에 活用되나?

— 人口 住宅 總調査 資料는,

- 政府가 國家 및 地域社會의 經濟·社會·保健·教育·人力開發·住宅 등 各 分野에 있어서의 政策立案과 綜合計劃樹立 및 이의 評價를 위해 活用할 뿐 아니라
- 企業의 販賣計劃, 工場立地選定 등에도 利用되며,
- 學術研究와 國際間의 比較資料로서도 貴重하게 利用되고 있습니다.
- 또한 1990年을 살고 있는 우리國民의 總數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歷史的 기록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優先 人口총조사의 年齡別 資料는 將來의 人口를 豫測하고 人口計劃을 樹立하는데 貴중한 資料로 利用되고 있습니다.

- 지난 62年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成功的 遂行과 더불어 家族計劃事業을 大大的으로 推進한 結果 人口增加率은 1%以下 水準으로 낮아졌으며,
- 지난 85年の 人口센서스結果를 土臺로 推計한 바에 의하면, 10年 後인 2000年에 人口增加率은 0.75%

水準에 到達하게 되고, 人口는 約 4千7百萬으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人口問題는 總 規模나 增加率의 問題에서 人口資質과 健康 그리고 老齡人口의 問題로 轉換되어야 할 實情에 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 나라의 人口規模와 特性의 變化는 長期間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므로 人口總調査를 통해 正確한 人口를 把握하여 事前에 緻密한 對應策을 樹立하고 持續的인 努力을 기울여 實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人口總調査에서 나타나게 되는 學齡別 人口數는 教育投資計劃에 緊要하게 活用됩니다.
- 人口總調査의 年齡別 人口를 土臺로 하면 國民學校 入學年齡인 6歲 人口와 中學校 入學年齡인 12歲 人口 등 各級學校의 入學年齡 人口가 現在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豫測할 수 있습니다.
- 現在 우리나라는 아직도 學級當 學生數가 大都市의 경우 53名 水準으로 過密現象을 보이고 있는 바 學級當 學生數를 줄이는데 所要하는 豫算과 各級 學校 教員을 養成하는 教育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地域別 學齡人口의 變化를 正確히 豫測할 必要가 있습니다.

— 最近 交通問題 特히 大都市 交通問題는 住宅問題와 함께 가장 時急히 解決해야 할 重点課題인데 이번 人口總調查에서는 交通對策을 爲한 基礎資料를 生産하게 됩니다.

○ 交通問題의 解決은 엄청난 豫算과 資金이 投入되는 만큼 이러한 예산과 資金의 浪費없이 效率的인 政策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우선 通勤·通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時間帶에 어떤 交通手段을 利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出發地와 到着地는 어디이며 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분야의 資料가 부분적으로 把握되는데 그쳤으나 이번 總調查에서는 이 분야의 資料를 全數調查할 豫定으로 있어 交通對策 樹立에 緊要하게 活用될 것입니다.

— 人口資料는 食糧需給計劃에도 緊要하게 活用됩니다.

○ 사람이 生存하는데 있어서 必須的으로 所要되는 食糧의 需要와 供給을 豫測하고 이에 관한 適切한 對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도 農水產 統計資料와 함께 人口資料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人口가 곧 食糧消費의 主體가 되기 때문입니다.

- 人口總調查에서 얻어지는 各種 資料는 食糧의 所要量을 把握하고 農村人口의 減少趨勢와 家族構成狀態를 알려주고 있어 農業政策은 물론 食糧需給對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緊要한 資料로 쓰여 집니다.
- 人口住宅總調查 資料는 住宅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基本的인 資料로 活用됩니다.
- 이번 總調查에서 住宅의 種類別, 延建坪 및 便益施設을 調查함과 同時에 하나의 單獨住宅에서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建築되어진 多家口居住住宅을 把握하여 住宅政策을 樹立하는데 基礎的인 資料로 活用될 것입니다.

9. 個人的 秘密은 保障되나?

- 이 총조사에서 調査하는 모든 事項은 오직 나라살림 設計에 必要한 統計資料로만 使用되며 個人이나 個人이 從事하는 事業體 등에 關한 어떤 事項도 그 秘密이 반드시 保障되도록 法으로 엄격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 우선.
 - 調査員을 選拔할 때는 洞·邑·面 事務所에서 管內에 居住하고 있는 분 중에서 身分이 確實하고 德望이 있는 분을 選任하도록 하고 있으며,
 - 調査員 教育時에는 調査하는 過程에서 알게 되는 個人的 秘密을 保障하기 爲해 이에 關한 宣誓를 書面과 口頭로 하게 한 연후에 비로소 家庭을 訪問하도록 措置하고 있습니다.
- 또한 調査員의 身分을 確實히 하여 應答하시는 분이 安心하고 對答해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家庭 訪問時 調査員은 반드시 그 身分을 證明하는 마크를 가슴에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洞·邑·面에서 個人的 調査內容을 토대로 한 稅金의 賦課 等 어떠한 行政處分도 할 수 없도록
 - 調査票 原本을 經濟企劃院에 送付하되

- 調査票를 복사하는 등의 方法으로 個人에 關한 記錄을 一切 保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調査對象者의 이름은 아예 컴퓨터에 入力시키지 않고 調査項目은 모두 숫자 또는 符號化하여 入力함으로써 資料가 일단 컴퓨터에 入力되면 特定 個人에 關한 記錄은 알 수 없게 됩니다.
- 調査票 原本은 컴퓨터에 資料가 入力된 後에는 모두 廢棄하게 되며 어떤 特定個人과 關聯된 모든 資料는 以後 完全히 消滅되어 버리게 됩니다.
- 끝으로 만약 調査員 또는 關係公務員이 個人에 關한 調査事項을 漏泄하였을 경우에는 統計法에 의해 1年 以下の 懲役に 該當되는 처벌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